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김세현

목 차

Ⅰ. 결산 개요 ····· 1

1. 세입·세출 결산 ····· 1

2. 총수입·총지출 결산 ····· 3

(1) 일반회계 ····· 3

가. 총수입 ····· 3

나. 총지출 ····· 4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

가. 총수입 ····· 10

나. 총지출 ····· 11

3. 예비비 지출 ····· 15

4. 재무결산 ····· 16

가. 재정상태 분석 ····· 16

나. 재정운영 분석 ····· 18

다. 순자산변동 분석 ····· 19

5. 성인지 결산 ····· 21

6.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 22

7. 지방교부세 결산 ····· 23

Ⅱ. 검토의견 ····· 25

【총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분석】 ····· 25

1. 개념의 구분 ····· 25

2. 2025회계연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내역 ····· 28

3. 2025회계연도 이용·전용내역 분석 ····· 49

(1) 이·전용 현황 ····· 49

(2) 연례적 이·전용 실시 ····· 50

(3) 연초 이·전용등 실시 ····· 52

(4) 재이·전용등의 사례 ····· 54

4. 2025회계연도 불용·이용내역 분석 ····· 58

(1) 불용・이월 현황 ····· 58

(2) 불용률이 과다한 사업현황 ····· 59

(3) 이월률이 과다한 사업현황 ····· 60

【세 입】 ····· 62

【운영지원과】 ····· 62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62

가. 개 요 ····· 62

나.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 63

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 관리 필요 ····· 66

【세　　출】 ····· 69

【기획조정실】 ····· 69

1. 기획조정실 (7011-254) ····· 69

가. 개　요 ····· 69

나. 장애인 의무고용관련 법정부담금 지출 축소노력 및 이·전용 최소화 필요 ····· 71

【의정관실】 ····· 75

2. 국경일 등 정부행사(2131-300) ····· 75

가. 개　요 ····· 75

나. 정부의전행사 집행부진 및 추경 편성 시 재원 조정 검토 미흡 76

3. 정부포상(2131-301) ····· 81

가. 개　요 ····· 81

나. 국민추천포상 행사·홍보 용역비의 반복적 세목조정 개선 필요 82

【참여혁신조직실】 ····· 87

4. 정부조직진단관리(1931-300) ····· 87

가. 개　요 ····· 87

나. 미공개 조직진단 결과서에 대한 공개 및 정보 접근성 제고 필요 ····· 88

5.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1932-501) ····· 94

가. 개　요 ····· 94

나. 온AI 구축 계약에 대한 전액 선금 지급의 부적정성 ····· 95

6.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1933-307) ····· 101
가. 개 요 ····· 101
나. 공공서비스디자인 용역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미흡 ····· 102

【인공지능정부실】 ····· 109

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2031-505) ····· 109
가. 개 요 ····· 109
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관리 필요 ····· 111
8.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2036-500, 정보화) ····· 116
가. 개 요 ····· 116
나. 화재 피해 복구 예비비의 사업계획 및 집행관리 개선 필요 ·· 118
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 ····· 124
9.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2040-501, 정보화) ····· 128
가. 개 요 ····· 128
나. 사업 추진일정 및 추진방식 개선 필요 ····· 130
10.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2046-502, 정보화) ····· 134
가. 개 요 ····· 134
나. 사업 추진일정 및 추진방식 개선 필요 ····· 137

【자치혁신실】 ····· 145

11. 국민통합위원회 운영(1145-300) ····· 145
가. 개 요 ····· 145
나. 정책연구용역 사업관리 미흡 및 집행부진 ····· 147

다. 정책연구용역 계약기간 및 과업조건의 정합성 미흡 ····· 153
(1) 「헌법적 실용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 방안」 연구용역 ····· 154
(2) 「해외 세대·젠더 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연구용역 ····· 156
(3) 결어 ····· 157

12.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1131-319) ····· 159

가. 개 요 ····· 159
나. 주민참여제도를 고려한 '주민청구' 서비스 확대 필요 ····· 163
다. 주민생각 서비스의 주민 참여 확대 필요 ····· 168

13.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1132-300) ····· 176

가. 개 요 ····· 176
나. 공직선거 예비비 편성 및 재배정의 적정성 제고 필요 ····· 178
다.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제고 필요 ····· 183

14.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1131-300) ····· 190

가. 개 요 ····· 190
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의 반복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192

15.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1431-301) ····· 201

가. 개 요 ····· 201
나. 예측 가능한 의무지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제고 필요 203

16.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1237-300) ····· 209

가. 개 요 ····· 209
나. 내역사업 'K-주소 해외진출 추진' : 예산 편성 취지 준수 필요 ····· 211
다. 내역사업 '주소정보산업 지원' : 위탁기간을 벗어난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서의 정확성 확보 필요 ····· 217

17.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1231-302) 및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 223
가. 개 요 …… 223
나. 기본사회 관련 조직 신설 및 신규사업 추진 시 이전용 없는 예산의 우회적 사용 지양 필요 …… 225
18. 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 …… 235
가. 개 요 …… 235
나. 예산편성시 사업방식 및 소요예산액 사전 검토 강화 필요 …… 237
다. 예산집행시 경쟁계약 원칙 준수 필요 …… 241
라. 사회연대경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고려한 마을기업 홈페이지 운영 필요 …… 243
19.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3131-301) …… 246
가. 개 요 …… 246
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47
20.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1131-304) 및 자원봉사활성화지원(1141-302) …… 250
가. 개 요 …… 250
나. 보험제도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252
다. 제주계정과 통합운영 필요 …… 256
21.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 259
가. 개 요 …… 259
나. 편성 내역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 261
22.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1232-300) …… 265
가. 개 요 …… 265
나.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필요 …… 266

【지방재정경제실】 ····· 275

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 ····· 275

가. 개 요 ····· 275

나. 지역유형별 국비지원금 배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방안 수립 필요 ····· 278

24. 지방세정보화 추진 (1333-500) ····· 282

가. 개 요 ····· 282

나.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금액의 장기보유 지양 필요 ····· 284

25.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 288

가. 개 요 ····· 288

나. 예산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289

26. 민생회복소비쿠폰(1350-301) ····· 298

가. 개 요 ····· 298

나. 사업계획의 불충분한 검토로 인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300

다.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반복 발생 문제 ····· 305

라.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연구용역 예산 편성 필요 ····· 309

마.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한 환류체계 마련 필요 ····· 313

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정산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노력 필요 ····· 319

2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131-303) ····· 331

가. 개 요 ····· 331

나. 단계적 종료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종료 필요 ····· 332
다. 사업종료에 따른 연구비 불용 부적정 ····· 336

【정부청사관리본부】 ····· 338

28. 인건비(청사)(7002-104) ····· 338
가. 개 요 ····· 338
나.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 공무원 정원 및 예산 현실화 필요 339

【과거사업무관련지원단】 ····· 345

29.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2431-303) ····· 345
가. 개 요 ····· 345
나.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346

30. 제주4·3 피해보상(보상금 등)(2431-306) ····· 351
가. 개 요 ····· 351
나. 보상금 지급속도 제고 및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연례적인 집행부진
방지 필요 ····· 352

31.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2432-300) ····· 357
가. 개 요 ····· 357
나.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을 통한 성과 기반 업무 수행 필요 ····· 358

32.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2435-300) ····· 362
가. 개 요 ····· 362
나. 보상금 집행부진 개선을 통한 과도한 이·전용 방지 필요 ····· 364
다.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사업 차질 방지 노력 필요 ····· 367

【안전예방정책실】 ····· 370

33. 재난안전사업평가(2631-304) ····· 370

가. 개 요 ····· 370

나. 연구용역 과제 수행 계획 내실화를 통한 이월 방지 필요 ····· 372

34. 국민안전의식선진화(2632-301) ····· 376

가. 개 요 ····· 376

나. 사업 결과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 377

35. 승강기안전관리개선(2632-306) ····· 382

가. 개 요 ····· 382

나. 사업 추진 일정의 조속한 확정을 통한 집행 개선 필요 ····· 384

【자연재난실】 ····· 388

36. 지진대비인프라 구축(2731-307) ····· 388

가. 개 요 ····· 388

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390

37.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2733-310) ····· 396

가. 개 요 ····· 396

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397

【재난복구지원국】 ····· 401

38. 재난대책비(보조)(2734-300) ····· 401

가. 개 요 ····· 401
나. 대규모 이·전용 등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 방식 재검토 필요 ····· 403
다. 재난 피해 복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407

【비상대비정책국】 ····· 412

39.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2634-304) ····· 412
가. 개 요 ····· 412
나. 연례적 실집행부진 개선을 위한 사업 구조 재설계 필요 ····· 413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 418

40.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2635-302) ····· 418
가. 개 요 ····· 418
나.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통한 신속한 복구 필요 ····· 419

Ⅰ.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기금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은 없음.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1,630억 7,700만원이나 1,646억 2,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298억 4,600만원이 수납(수납률 78.9%)되었고 347억 7,3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1,433억 9,200만원이나 928억 4,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70억 6,500만원이 수납(수납률 83.0%)되었고 157억 7,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96억 8,500만원이나 717억 7,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27억 8,100만원이 수납(수납률 73.5%)되었고 189억 9,8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회계별·계정별 세입 결산(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143,392	92,841	77,065	15,775	2	8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685	71,779	52,781	18,998	-	73.5
지역자율계정	5,766	26,363	25,814	549	-	97.9
지역지원계정	13,919	45,391	26,942	18,449	-	59.4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25	25	-	-	1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	-
합 계	163,077	164,620	129,846	34,773	2	78.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85조 9,821억 8,300만원, 예산현액은 86조 2,431억 4,100만원이며, 이 중 86조 934억 4,5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305억 700만원이 이월, 1,191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음.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82조 5,548억 1,300만원, 예산현액은 82조 8,155억 4,400만원이며, 이 중 82조 6,776억 7,3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303억 4,400만원이 이월, 1,075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 지역균형발전1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조 4,273억 7,000만원, 예산현액은 3조 4,275억 9,700만원이며, 이 중 3조 4,157억 7,2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1억 6,200만원이 이월, 116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회계별·계정별 세출 결산(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82,554,813	82,815,544	82,677,673	30,344	107,526	99.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427,370	3,427,597	3,415,772	162	11,663	99.8
지역자율계정	252,898	252,898	252,898	-	-	100.0
지역지원계정	3,158,051	3,158,278	3,146,453	162	11,663	99.6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0,303	10,303	10,303	-	-	1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6,118	6,118	6,118	-	-	100.0
합 계	85,982,183	86,243,141	86,093,445	30,507	119,189	99.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총수입·총지출 결산

(1) 일반회계

가. 총수입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수입은 예산액이 1,433억 9,200만원이나 928억 4,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70억 6,500만원이 수납(수납률 83.0%)되었고 157억 7,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관/항/목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재산수입(11)	18,938	16,642	15,079	1,563	-	90.6
관유물대여료(51)	3,400	6,874	6,286	588	-	91.4
토지대여료(511)	424	117	116	1	-	99.1
건물대여료(512)	2,976	6,757	6,170	587	-	91.3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15,538	9,768	8,793	975	-	90.0
기타재산이자수입(546)	15,538	9,768	8,793	975	-	90.0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7)	15,538	9,768	8,793	975	-	90.0
경상이전수입(12)	115,079	65,282	51,480	13,800	2	78.9
벌금,몰수금및과태료(56)	-	1,570	341	1,229	-	21.7
몰수금및추징금(562)	-	48	-	48	-	0.0
징계부과금(564)	-	54	25	29	-	46.3
과징금(565)	-	1,468	316	1,152	-	21.5
변상금및위약금(57)	945	1,645	625	1,018	2	38.0
변상금(571)	-	8	-	8	-	0.0
위약금(572)	945	1,637	625	1,010	2	38.2
가산금(58)	-	5	1	4	-	20.0
가산금(581)	-	5	1	4	-	20.0
기타경상이전수입(59)	114,134	62,065	50,513	11,549	-	81.4
기타경상이전수입(596)	114,134	62,065	50,513	11,549	-	81.4
재화및용역판매수입(13)	1,297	1,530	1,119	412	-	73.1
면허료및수수료(65)	38	19	19	-	-	100.0
면허료및수수료(651)	38	19	19	-	-	100.0

(단위: 백만원, %)

관/항/목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잡수입(69)	1,259	1,511	1,100	412	-	72.8
기타잡수입(691)	1,259	1,511	1,100	412	-	72.8
수입대체경비수입(14)	8,078	9,386	9,386	-	-	100.0
잡수입(69)	8,078	9,386	9,386	-	-	100.0
기타잡수입(691)	8,078	9,386	9,386	-	-	100.0
관유물매각대(15)	-	1	1	-	-	100.0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73)	-	1	1	-	-	100.0
유동자산매각대(732)	-	1	1	-	-	100.0
합 계	143,392	92,841	77,065	15,775	2	83.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총지출

① 총 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은 예산액이 82조 5,548억 1,300만원, 예산현액은 82조 8,155억 4,400만원이며, 이 중 82조 6,776억 7,3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303억 4,400만원이 이월, 1,075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일반·지방행정	81,110,160	81,280,082	81,151,852	26,215	102,2015	99.8
일반행정	1,001,665	980,953	953,555	1,005	26,393	97.2
기록물관리	45,336	50,013	48,713	257	1,044	97.4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322,510	270,616	260,488	50	10,076	96.3
정부의전	18,656	18,753	17,731	10	1,012	94.6
청사관리	227,123	233,283	229,374	210	3,769	98.3
행정안전행정지원	388,040	408,288	397,349	445	10,493	97.3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정부자원관리	790,534	970,664	921,012	24,864	24,787	94.9
인사관리	167	167	160	-	7	95.6
전자정부	765,235	945,365	898,141	24,055	23,170	95.0
정부혁신조직	25,132	25,132	22,712	810	1,610	90.4
지방행정·재정지원	79,317,961	79,328,466	79,277,285	346	50,835	99.9
이북5도	2,291	2,291	2,150	-	141	93.9
지방교부세	67,038,505	67,038,505	67,038,505	-	-	100.0
지방자치분권	39,480	48,727	42,509	164	6,055	87.2
지방자치인재개발	14,370	15,627	15,309	-	319	98.0
지방재정경제	12,197,169	12,197,169	12,152,676	182	44,311	99.6
지역발전	26,146	26,146	26,136	-	10	99.9
공공질서및안전	1,444,653	1,535,461	1,525,821	4,129	5,511	99.4
경찰	68,252	68,252	66,686	-	1,552	97.7
과학수사	68,252	68,252	66,686	-	1,552	97.7
재난관리	1,376,401	1,467,223	1,459,135	4,129	3,959	99.4
안전관리	36,062	36,449	34,244	669	1,537	93.7
재난관리	1,100,184	1,187,438	1,186,654	78	706	99.9
재난안전기술개발	91,965	91,965	91,377	-	588	99.4
재난안전정보화	148,190	151,371	146,860	3,382	1,129	97.0
사회복지	-	-	-	-	-	-
취약계층지원	-	-	-	-	-	-
일자리지원	-	-	-	-	-	-
합 계	82,554,813	82,815,544	82,677,673	30,344	107,526	99.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이월·불용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월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사업은 예산현액 79억 400만원 중 33억 8,200만원(이월률 42.8%)을 이월하였고,

‘정책연구개발’ 사업은 예산현액 9억 3,000만원 중 3억 600만원(이월률 33.0%)을 이월하였으며,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사업은 예산현액 200억 3,400만원 중 7억 6,100만원(이월률 13.9%)을 이월하였고,

‘재난안전사업평가’ 사업은 예산현액 15억 3,200만원 중 1억 6,500만원(이월률 10.8%)을 이월하였으며,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8억 600만원 중 1억 3,900만원(이월률 7.7%)을 이월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사업 중 이월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이월률 (B/A)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7,904	7,904	4,512	3,382	10	42.8
정책연구개발	922	930	572	306	51	33.0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5,492	5,482	4,185	761	535	13.9
재난안전사업평가	1,466	1,532	1,272	165	94	10.8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1,682	1,806	1,586	139	81	7.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불용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사업은 예산현액 7,700만원 중 7,600만원(불용률 99.5%)을 불용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0억 8,900만원 중 10억 2,600만원(불용률 94.2%)을 불용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6억 6,400만원 중 5억 7,100만원(불용률 86.0%)을 불용하였고,

‘의정관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3,100만원 중 1,400만원(불용률 47.2%)을 불용하였으며,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75억 1,300만원 중 32억 900만원(불용률 42.7%)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불용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0	77	0	0	76	99.5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0	1,089	63	0	1,026	94.2
진실화해위원회기본경비	0	664	93	0	571	86.0
의정관실(총액)	29	31	16	0	14	47.2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7,513	7,513	4,304	0	3,209	42.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지막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불용액 합계(미집행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사업은 예산현액 7,700만원 중 7,600만원(미집행률 99.5%)을 미집행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0억 8,900만원 중 10억 2,600만원(미집행률 94.2%)을 미집행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6억 6,400만원 중 5억 7,100만원(미집행률 86.0%)을 미집행하였고,

‘의정관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3,100만원 중 1,400만원(미집행률 47.2%)을 미집행하였으며,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사업은 예산현액 79억 400만원 중 33억 9,200만원(미집행률 42.9%)을 미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미집행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C)	미집행액 (D=B+C)	미집행률 (D/A)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0	77	0	0	76	76	99.5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0	1,089	63	0	1,026	1,026	94.2
진실화해위원회기본경비	0	664	93	0	571	571	86.0
의정관실(총액)	29	31	16	0	14	14	47.2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7,904	7,904	4,512	3,382	10	3,392	42.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총수입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수입은 예산액이 196억 8,500만원이나 717억 7,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27억원 8,100만원이 수납(수납률 73.5%)되었고 189억 9,8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계정/목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지역자율계정	5,766	26,363	25,814	549	-	97.9
재산수입(11)	483	968	932	36	-	96.3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483	968	932	36	-	96.3
기타재산이자수입(546)	483	968	932	36	-	96.3
경상이전수입(12)	5,283	25,395	24,882	513	-	98.0
기타경상이전수입(59)	5,283	25,395	24,882	513	-	98.0
기타경상이전수입(596)	5,283	25,395	24,882	513	-	98.0
지역지원계정	13,919	45,391	26,942	18,449	-	59.4
재산수입(11)	1,010	3,349	2,705	644	-	80.8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1,010	3,349	2,705	644	-	80.8
기타재산이자수입(546)	1,010	3,349	2,705	644	-	80.8
경상이전수입(12)	12,909	42,042	24,237	17,805	-	57.6
벌금,몰수금및과태료(56)	-	240	-	240	-	0.0
과징금(565)	-	240	-	240	-	0.0
기타경상이전수입(59)	12,909	41,802	24,237	17,565	-	58.0
기타경상이전수입(596)	12,909	41,802	24,237	17,565	-	58.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25	25	-	-	100.0
재산수입(11)	-	5	5	-	-	100.0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	5	5	-	-	100.0
기타재산이자수입(546)	-	5	5	-	-	100.0
경상이전수입(12)	-	20	20	-	-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59)	-	20	20	-	-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596)	-	20	20	-	-	100.0
합 계	19,685	71,779	52,781	18,998	-	73.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총지출

① 총 괄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은 예산액이 3조 4,273억 7,000만원, 예산현액은 3조 4,275억 9,700만원이며, 이 중 3조 4,157억 7,2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7%)되었고 2억 2,700만원이 이월, 116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지방행정	2,392,218	2,392,401	2,391,352	162	887	99.9
정부자원관리	9,135	9,135	9,095	-	40	99.6
정부혁신조직	9,135	9,135	9,095	-	40	99.6
지방행정·재정지원	2,383,083	2,383,266	2,382,257	162	846	99.9
지방자치분권	25,759	25,842	25,253	77	512	97.7
지방재정경제	1,000,000	1,000,000	999,969	5	26	99.9
지역발전	1,357,324	1,357,424	1,357,035	80	309	99.9
공공질서및안전	1,010,613	1,010,613	1,002,913	-	7,700	99.2
재난관리	1,010,613	1,010,613	1,002,913	-	7,700	99.2
안전관리	1,005,013	1,005,013	997,313	-	7,700	99.2
재난안전기술개발	5,600	5,600	5,600	-	-	100.0
사회복지	24,539	24,583	21,507	-	3,076	87.5
취약계층지원	24,539	24,583	21,507	-	3,076	87.5
일자리지원	24,539	24,583	21,507	-	3,076	87.5
합 계	3,427,370	3,427,597	3,415,772	162	11,663	99.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이월·불용

2025회계연도 이월이 있었던 사업은 총 2개 세부사업임.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4억 2,800만원 중 8,000만원(이월률 1.5%)을 이월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33억 2,100만원 중 7,700만원(이월률 0.6%)을 이월하였음.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이월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이월률 (B/A)
지역발전활성화	5,328	5,428	5,040	80	308	1.5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3,321	13,321	13,175	77	69	0.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불용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방시대위원회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9억 1,900만원 중 4억 4,300만원(불용률 23.1%)을 불용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업은 예산현액 198억 9,700만원 중 30억 6,500만원(불용률 15.4%)을 불용하였으며,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4억 2,800만원 중 3억 800만원(불용률 7.1%)을 불용하였고,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은 예산현액 9,443억 3,200만원 중 77억 원(불용률 0.8%)을 불용하였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 사업은 예산현액 16억 7,500만원 중 1,000만원(불용률 0.6%)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이월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지방시대위원회운영	1,836	1,919	1,476	0	443	23.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853	19,897	16,832	0	3,065	15.4
지역발전활성화	5,328	5,428	5,040	80	308	7.1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944,332	944,332	936,632	0	7,700	0.8
마을기업육성사업	1,675	1,675	1,665	0	10	0.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지막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불용액 합계(미집행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방시대위원회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9억 1,900만원 중 4억 4,300만원(미집행률 23.1%)을 미집행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업은 예산현액 198억 9,700만원 중 30억 6,500만원(미집행률 15.4%)을 미집행하였으며,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4억 2,800만원 중 3억 9,600만원(미집행률 7.1%)을 미집행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33억 2,100만원 중 1억 4,600만원(미집행률 1.1%)을 미집행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은 예산현액 9,443억 3,200만원 중 7,700만원(미집행률 0.8%)을 미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미집행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C)	미집행액 (D=B+C)	미집행률 (D/A)
지방시대위원회운영	1,836	1,919	1,476	0	443	443	23.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853	19,897	16,832	0	3,065	3,065	15.4
지역발전활성화	5,328	5,428	5,040	80	308	396	7.1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3,321	13,321	13,175	77	69	146	1.1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944,332	944,332	936,632	0	7,700	7,700	0.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예비비 지출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배정사유	지출결정액	지출액	자금배정일	이월액	불용액
일반		정보자원관리 지원(정보화)	국정자원 화재('25.9.26.) 사고로 화재 복구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25.10.21.)	510	510	11.26.	-	-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정보화)	국정자원 화재('25.9.26.)로 인한 재해 복구비	4,265	4,265	11.20.	-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정보화)	국정자원 화재('25.9.26.)로 인한 재해 복구비	2,785	2,785	12.5.	-	-
		소 계		7,560	7,560		-	-
일반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1,492	1,490	04.08.	-	2
		대통령기록관리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3,165	2,938	04.08.	207	19
		소 계		4,656	4,428		207	21
일반		기관운영	제21대 대통령 임기 개시에 따라 국정기획·인수 역할의 운영체계인 「국정기획위원회」 운영경비 요청	6,563	6,037	6.11.	-	526
		소 계		6,563	6,037	6.11.	-	526
목적	법적의무지출	공직선거관리 및지방의회 역량강화	공직선거추진	7,796	7,796	4.8.	-	1,173
		소 계						
목적	재해대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 (정보화)	국가전산망 복구 지원	21,810	8,359	10.22.	5,485	7,966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배정사유	지출결정액	지출액	자금배정일	이월액	불용액
	책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 (정보화)	정보시스템 복구 및 이전 지원	10,231	6,448	20251117.	1,402	2,362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사업	국정자원 화재('25.9.) 복구를 위한 전산장비 구매	129,823	129,823	10.22.	-	-
		소 계		161,864	144,630		6,887	10,328
목적	재해대책	재난대책비 (보조)	8월 호우피해 복구지원	31,006	31,006	10.02	-	-
		재난대책비 (보조)	9월 호우피해 복구지원	8,300	8,300	11.25	-	-
		소 계		39,306	39,306			

자료: 행정안전부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2025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자산총액은 14조 1,344억 300만원으로, 전기 말 대비 2조 1,919억 2,800만원(18.4%)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금융자산이 큰폭으로 증가(2조 1,650억 7,200만원)하였기 때문임.

부채총액은 1조 219억 700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8,425억 1,500만원(469.7%)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차입부채가 8,412억 7,0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에 따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3조 1,124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3,494억 1,200만원(11.5%)이 감소하였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I. 자산(a)	14,134,403	11,942,475	2,191,928	18.4 %
· 금융자산	2,249,081	84,009	2,165,072	2,577.2 %
· 유·무형자산	11,859,288	11,817,655	41,633	0.4 %
· 기타자산	26,034	40,812	(14,778)	(36.2 %)
II. 부채(b)	1,021,907	179,392	842,515	469.7 %
· 차입부채	1,018,423	177,153	841,270	474.9 %
· 충당부채	-	-	-	-
· 기타부채	3,484	2,239	1,245	55.6 %
순자산(a-b)	13,112,496	11,763,084	1,349,412	11.5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2025(A) : 2025년 12월 31일자 잔액
2024(B) : 2024년 12월 31일자 잔액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 전체의 원가인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표로, 프로그램 순원가·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비교환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음.

재정운영 결과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계산한 후,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 계산식]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	비배분수익	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	비교환수익	국세, 부담금 등
	재정운영 결과	(프로그램 전체의 원가)**84조 7,116억 1,100만원**

2025년도 행정안전부의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84조 2,800억 5,800만원 및 관리운영비 4,685억 1,600만원, 비배분비용 341억 8,700만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711억 5,000만원을 차감한 84조 7,116억 1,100만원이며, 비교환수익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와 동일한 84조 2,800억 5,800만원임.

[2025년도 행정안전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Ⅰ. 프로그램순원가	84,280,058	69,857,299	14,422,759	20.6 %
Ⅱ. 관리운영비	468,516	440,163	28,353	6.4 %
Ⅲ. 비배분비용	34,187	3,798	30,389	800.1 %
Ⅳ. 비배분수익	71,150	72,924	(1,774)	(2.4 %)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84,711,611	70,228,336	14,483,275	20.6 %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84,711,611	70,228,336	14,483,275	20.6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2025(A)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4(B)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순자산변동 분석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이전 및 조정항목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기말순자산 계산식]

	기초순자산	전기 旣 보고된 순자산 금액에 오류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
-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
+	재원의조달	국세·부담금 등 비교환수익, 국고수입
+	재원의이전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 국고이전지출
+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이전 비해당 거래
	기말순자산	

행정안전부의 순자산은 2025년 말 기준 13조 1,124억 9,600만원이며, 2025년 기초순자산은 11조 7,630억 8,400만원, 재정운영결과는 84조 7,116억 1,1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86조 654억 800만원, 조정항목은 -43억 8,400만원임.

[2025년도 행정안전부 순자산변동표(일반회계+특별회계)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A)	2024(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Ⅰ. 기초순자산	11,763,084	12,002,232	(239,148)	(2.0 %)
Ⅱ. 재정운영결과	84,711,611	70,228,336	14,483,275	20.6 %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86,065,408	70,091,610	15,973,798	22.8 %
Ⅳ. 조정항목	(4,384)	(102,422)	98,038	95.7 %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13,112,496	11,763,084	1,349,412	11.5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2025(A)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4(B)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 성인지 결산

행정안전부 성인지사업은 여성 지방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 지원, 재난상황에 여성의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4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33억 2,400만원이고 집행액은 32억 6,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8.1%임.

[2025년도 행정안전부 성인지사업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명	2025년			2024년 지출액 (c)	전년대비 증감 (d=b-c)	전년대비 증감률 (d/c)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일반회계소계(A)		3,324	3,260	98.1	1,329	1,931	145.3
일반회계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546	546	100.0	557	△11	△2.0
	- 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2]	546	546	100.0	557	△11	△2.0
	(2)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2]	613	574	93.7	499	75	15.1
	(3)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	1,890	1,889	100.0	-	1,889	-
	(4)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2]	275	250	91.0	273	△23	△8.4
특별회계소계(B)		-	-	-	-	-	-
성별영향평가사업소계		-	-	-	-	-	-
직접목적사업소계		-	-	-	-	-	-
합계(A+B)		3,324	3,260	98.1	1,329	1,931	145.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주 1) 직접목적 사업
2) 성별영향평가 사업

6.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20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는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음.

7. 지방교부세 결산

지방교부세란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1]상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재정력 편차를 보전해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임. 같은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지방교부세의 구분]

(단위: 백만원, %)

구 분		목 적	재 원
보통교부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내국세 정률분[주]의 97%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지연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40%
	국가지방협력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지방 협력사업 촉진	내국세 정률분의 3% × 50%
	재난안전관리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10%
부동산교부세		지방세(종합토지세)를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한 후의 지방재원 감소 보전	종합부동산세의 100%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관리 강화 및 시설 확충 수요 대응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주) 내국세 정률분: 내국세에서 담배개별소비세 45% 및 종합부동산세·목적세를 제외한 것의 19.24%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5회계연도 지방교부세는 총 67조 385억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100%가 교부(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보통교부세(1631-300)		60,401,769	60,401,769	-	-	**100.0**
특별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1632-300)	658,551	658,551	-	-	**100.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32-301)	164,638	164,638	-	-	**10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644-300)	823,189	823,189	-	-	**100.0**
부동산교부세(1633-300)		4,004,709	4,004,709	-	-	**100.0**
소방안전교부세(1645-300)		985,649	985,649	-	-	**100.0**
합계		**67,038,505**	**67,038,505**	-	-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Ⅱ. 검토의견

【총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분석】

1. 개념의 구분

예산의 ‘이용(移用)’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및 장·관·항(분야·부문·프로그램)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2]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거나(승인 이용)[3]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자체 이용) 이용을 할 수 있음[4].

---

2)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2025년도 예산 총칙」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산의 ‘전용(專用)’은 행정과목 중 가장 상위 범주인 세항(단위사업) 또는 목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승인 전용), 기획예산처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음[5].

예산의 ‘내역변경’과 ‘세목조정’은 각각 행정과목 중 세세항(세부사업)과 세목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국가재정법」 등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각 부처의 재량하에 실시할 수 있으나, 일부 예산 유형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협의절차를 두고 있음[6].

---

4) 그 밖에 「국가재정법」 제47조제2항은 정부 조직변경 시에도 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실무상으로 예산을 이체(장·관·항, 목·세목 등을 그대로 유지한채 소관만 변경)만할뿐 이용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5)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6) **기획예산처,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2.**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일용임금 근로자를 상용임금(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일용임금(110-04목)에서 상용임금(110-03목)으로 세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56.

“주요사업비 내 유류비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타 비목으로 전용 시(세목조정 포함) 기획재정

이러한 예산의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이하 “이·전용등”)은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7]’의 예외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예산의 이·전용 등을 할 때에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사유·변동내역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함.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 2025회계연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내역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집행 결과, 총 90개 세부사업 869억 3,600만원 규모의 이·전용등이 실시되었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전체 예산은 29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30.7%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에서 이·전용등이 실시된 것임.

구체적으로 예산의 이용은 총 9개 세부사업 606억 800만원, 전용은 29개 세부사업 167억 800만원, 내역변경은 16개 세부사업 22억 6,200만원, 세목조정은 61개 세부사업 73억 5,800만원 규모임.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요약]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수	금액
이용	9	60,608
전용	29	16,708
내역변경	16	2,262
세목조정	61	7,358
합계	**115**	**86,936**

주 1) 증액 사업 기준으로 집계

2) 이·전용등이 중복 실시된 사업이 있어 세부사업수 합계는 단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예산의 이·전용등 전체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UN거버넌스센터지원(ODA)	210-15	세목조정	5	-	-	UN거버넌스센터지원(ODA)	210-14	9.10.	UN거버넌스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변경 계약 예산확보를 위한 세목조정
	210-01		3	-	-	UN거버넌스센터지원(ODA)	210-05	11.20.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예산확보를 위한 세목조정
	소계		8	-	-				
	합계		8	-	-				
기획조정실(총액)	210-05	전용	5	-	-	국가기록원 기본경비(총액)	250-02	10.22	연중 부서 신설('25.6.2., 정보보호팀, '25.10.15.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로 인한 추가 소요 발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3	-	-	청사 기본경비(총액)	250-02	10.22	
	소계		8	-					
	210-05	내역변경	3	-	-	사회재난실(총액)	210-05	10.22	연중 부서 신설('25.6.2., 정보보호팀, '25.10.15.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로 인한 추가 소요 발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3	-	-				
	합계		11	-	-				
기획조정실	210-14	세목변경	34	-	-	기획조정실	210-01	12.22.	현안 대응을 위한 일반용역비 부족분 마련
	220-01		22	-	4		220-02	12.18.	예산·법안 심사 국회대응 및 현안 대응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마련
	210-07		14	-	-		210-01	11.26.	연중 부서 신설('25.6.2., 정보보호팀, '25.10.15.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로 인한 추가 소요 발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210-02		4	-	-		210-01	11.26.	
	소계		74	-	4				
	220-01	전용	83	-	-	기획조정실	210-01	11.19.	원활한 현장업무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210-02		27	-	-	재난안전연구원 기본경비(총액)	210-01	1.24.	장애인 의무고용관련 법정부담금 재원 마련
	소계		110	-	-				
	210-02	이용	187	-		공무원통근 버스운행	210-07		
			100	-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10-02		
			167	-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10-15		
			68	-	-	기록관보존 시설관리	210-02	1.24.	장애인 의무고용관련 법정부담금 재원 마련
			20	-		대통령기록 관리	210-02		
			19	-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 (정보화)	210-02		
			14	-		국과수 기본경비(총액)	210-02		
	소계		575	-	-				
	합계		759	-	4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210-07	세목 조정	20	-	2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제고	210-01	2.3.	청년인턴 기본교육 교육장 및 버스 임차, 연구소모임 운영, 청년인턴 채용서류 접수사이트 임차
			3	-	1		210-01	2.10.	과장급 역량강화 교육 관련 이동수단 및 교육장소 임차
	소계		23	-	3				
	합계		23		3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210-14	세목 조정	7	-	-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210-07	2.17.	주한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 추진방법 변경(용역)으로 세목조정
	210-14		4		-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210-01	4.30.	재난안전 정책설명회 행사 인원 증가로 예산확보를 위한 세목조정
	260-01		5	-	-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210-14	5.13.	2024년 유엔공공행정포럼 개최 결과 보고서 검증 용역 비용 추가 소요로 세목조정
	220-01		2	-	-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220-02	9.12.	관외출장 업무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예산확보를 위한 세목조정
			10	-	-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210-01	12.17.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정책현장 설명회 예산확보를 위한 세목조정
	소계		28	-	-				
	합계		28	-	-				

인사기획관실	210-01	세목조정	3	-		인사기획관실	210-07	10.10.	직원 교육과정 및 공직박람회 운영을 위한 수용비 부족분 세목조정
	220-01		5.8	-	-	인사기획관실	220-03	11.18.	각종 인사현안 대응에 따른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세목조정
	210-01		3.5	-	-	인사기획관실	210-07	11.28.	위원회 개최 증가에 따라, 수당 지급위한 수용비 부족분 세목조정
	소계		12.3	-	-				
	합계		12.3	-	-				
대변인실 (총액)	210-05	내역변경	2	- -	- -	사회재난실(총액)	210-05	11.4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합계		2	-	-				
대변인실	220-01	전용	13	-	-	대변인실	210-01	11.21.	원활한 현장업무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합계		13	-	-				
국민안전방송 운영 및 재난정책홍보	210-01	세목조정	29	-	2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홍보	210-14	12.5.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재난 안전 콘텐츠 제작비용 확보를 위한 세목조정
	합계		29	-	2				
감사관실	220-01	전용	3	-	-	감사관실	210-02	12.26.	감사관실 현안 대응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재원 마련
			3				210-07		
	소계		6	-	-				
	210-01	세목조정	4	-	-	감사관실	210-07	9.3.	감사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조정
			3				210-08		
			0.3				210-02	10.13.	
			3.7				210-08		
	210-07		9	-	-		210-01	11.25.	감사관실 TF 설치·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
	소계		20	-	-				
	합계		26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2	전용	1,219	-	-	인건비(국과수)	110-01	8.25.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재원 마련
	220-01	전용	31	-	-	인건비(국과수)	110-01	12.24.	감정지원 국내여비 부족재원 마련
	210-01	세목조정	1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2	1.21.	2025 제주분원 물품 관리 용역 대금 부족
	210-01	세목조정	0.15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2	2.24.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인한 조정

	210-09	세목 조정	0.75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8	4.1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명칭 변경으로 인한 간판 수리비용 발생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부족 발생
	210-05	세목 조정	1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1	5.29.	감정량 증가에 따른 특근 및 석식 이용자 증가 추세로, 6월 상반기까지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여 부족분 보충
	210-01	세목 조정	0.5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2	5.30.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사용료 부족으로 조정(3분기 예산 배정 후 재조정 예정)
	220-01 220-02	세목 조정	8.1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20-03	7.31.	국외업무여비 및 국내여비 부족
	210-01 210-02	세목 조정	3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8	8.4.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부족
	210-05	세목 조정	4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6	9.9.	을지연습 등 특근매식비 부족
	210-11	세목 조정	2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9	10.13.	청사 시설관리 소모품 구매를 위한 재료비 확보
	210-01 210-05 210-09 210-11	세목 조정	16.9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8	10.24.	소모품 구입비, 특근매식비, 청사 수리 보수 등 관리비 및 재료비 부족
	210-07	세목 조정	1.4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2	10.27.	서울 시유지 임차료 및 제주 출입보안시스템 임차료 부족
	210-05	세목 조정	8.9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2	10.27.	본원 및 지방연구소 특근매식비 부족
	210-01 210-11	세목 조정	39.2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2	11.7.	자문수당, 소송변호사비, 노무사비 등 기관운영비 부족 및 제설용품, 미화용품 구입비 부족
	210-09	세목 조정	2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1	12.11.	국과수기본경비(총액)시설장비유지비 부족
	210-16	세목 조정	1.7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1	12.15.	제2회 신규채용 외부위원 수당 부족
	210-01	세목 조정	1.5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5	12.18.	일반수용비 부족
	210-09	세목 조정	0.3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8	12.18.	관용차량 소모품 구매
	210-09	세목 조정	1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8	12.22.	공용차량 엔진오일교환 등 관리비 부족
	210-16	세목 조정	1.3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01-01	12.22.	2025년 과학수사 적극행정 우수부서 시상금 부족
	210-01	세목 조정	1.2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8	12.30.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210-01	세목 조정	0.46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8	12.30.	간급소모품 구입
	210-06	세목 조정	0.58	-	-	국과수기본 경비(총액)	210-01	12.31.	일.숙직비 부족
	합계		1,324	-	-				
과학수사 감정지원	210-15	세목 조정	99	-	-	과학수사 감정지원	210-09	1.3.	디지털인증 유지보수비 조정
	210-14	세목 조정	30	-	-		210-09	1.15.	일반용역비 사업량 증가
	210-07	세목 조정	10	-	-		210-09	1.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임차료 대금 부족으로 인한 조정
	210-03	세목 조정	0.5	-	-		210-11	5.7.	피복비 증액
	210-03	세목 조정	0.08	-	-		210-11	5.28.	피복비 사업량 증가
	210-09 210-14	세목 조정	42.7	-	-		210-15	6.2.	시설물 유지관리와 감정 및 실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210-11	세목 조정	0.58	-	-		210-03	7.28.	피복비 재재배정
	210-14	세목 조정	3	-	-		210-09	10.17.	세출예산 세목조정
	210-09	세목 조정	40	-	-		210-11	10.31.	감정시설 및 기기 유지보수비 부족
	210-01	세목 조정	30	-	-		210-03	12.31.	특수건강검진비 부족
	210-01	세목 조정	15.5	-	-		210-02 210-03 210-09 210-15	12.31.	부검 촉탁비 부족
	210-01	세목 조정	1.43	-	-		210-15	12.31.	특수건강검진비 부족
	합계		273	-	-				
과학수사감정 장비현대화	210-15	세목 조정	1,1345	-	-	과학수사감정 장비현대화	210-09	1.3.	감정장비 유지보수 계약으로 조정
	210-09	세목 조정	50	-	-		210-15	7.15.	감정장비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의 부족
	210-09	세목 조정	7.7	-	-		210-15	11.13.	감정장비 수리비 부족
	합계		1,192.2	-	-				

대통령 기록관리	210-02	이용	20	-	-	행정안전행정지원-본부기본경비	210-02	2.1.	장애인 고용부담금 본부 일괄 납부
	소계		20	-	-				
	210-14	세목조정	95	-	-	대통령기록관리	210-09	5.20.	전시관 정비 비용 관련 세목조정(일상감사 의견 반영)
	210-01		71		-	대통령기록관리	210-02	11.13.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재원마련
	210-11		34	-	-				
	소계		200	-	-				
	합계		220	-	-				
인건비(대통령기록관)	110-01	내역변경	159	-	-	인건비(청사)	110-01	11.1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현원 직급 차이에 따른 보수 부족분 재원마련
	110-02		286	-	-				
	110-05		15	-	-				
	소계		460	-	-				
	합계		460						
대통령기록관 기본경비 (총액)	110-03	내역변경	0.6	-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총액)	110-03	11.21.	사회복무요원 상용임금 부족분 재원마련
	소계		0.6						
	합계		0.6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210-07	세목조정	16	-	-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210-01	6.19.	이북도민 체육대회 관련 시도 사무소별 임차료 지원 필요
	합계		16	-	-				
이북도민관련 단체및행사지원	210-14	세목조정	122	-	-	이북도민관련단체 및행사지원	210-01	6.19.	체육대회 관련 용역확대 추진 필요
	210-14	세목조정	6	-	-	이북도민관련단체 및행사지원	210-02		
	합계		128	-	-				
이북5도 기본경비(총액)	250-02	전용	5	-	-	이북5도기본경비(총액)	210-06	9.22.	직책수행경비 부족재원 마련 필요
			10	-	-	이북5도기본경비(총액)	210-16		
	소계		15	-	-				
	250-02	내역변경	16	-	-	청사기본경비(총액)	250-02	9.22.	직책수행경비 부족재원 마련 필요
	소계		16	-	-				
	합계		31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총액)	110-03	내역변경	3	-	-	이북5도기본경비(총액)	110-03	12.16.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상용임금 부족분 지원
	합계		3	-	-				
이북5도 기본경비	210-02	세목조정	30	-	-	이북5도기본경비	210-01	2.18.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재원 확보
	210-14	세목조정	14	-	-	이북5도기본경비	210-01	6.19.	이북도민 행사지원(무형유산심사, 미술대전 전시) 확대 필요
	210-09	세목조정	8	-	-	이북5도기본경비	210-01	7.4.	청사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보수 필요
			50	-	-	이북5도기본경비	210-07		
	210-07	세목조정	1	-	-	이북5도기본경비	210-01	7.4.	임차료 부족
	합계		103	-	-				
청사시설 유지보수	210-02	이용	840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310-01	10.24.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재원 마련
	소계		840	-	-				
	210-02	전용	564	-	708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260-01	10.24.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재원 마련
			82	-			420-02		
			151	-			420-03		
			41	-			420-04		
			22	-			430-01		
			1,620	-		청사시설관리및위탁	110-03		
			2,780	-			320-09		
	220-01		110	-	42	청사시설 유지보수	260-01	11.21.	청사본부 각종 지원근무 등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마련
	소계		5,370	-	750				
	210-14	세목조정	18	-	2	청사시설 유지보수	210-07	5.9.	방호직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부족재원 마련
	210-09		200	-	84		210-11	11.12.	노후청사 긴급 보수 및 자재구매 등 부족재원 마련
	220-01		8	-	-		220-02	11.18.	청사본부 각종 지원근무 등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마련
	소계		226	-	86				
	합계		6,436	-	836				

청사시설관리 및위탁	110-03	전용	1,300	-	619	청사시설관리 및위탁	320-09	12.23.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재원 마련
	합계		1,300	-	619				
스마트정부청사관리체계구축(정보화)	260-01	내역변경	121	-	-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260-01	5.26.	대전청사 민원인 출입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부족재원 마련 필요(기능개발)
	합계		121	-	-				
인건비(청사)	110-01	이용	1,730	-	133	청사시설관리및 위탁	110-03	11.20.	공무원 정현원 직급차이에 따른 보수 부족재원 확보
	소계		1,730	-	133				
	110-01	내역변경	800	-	-	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	110-01	11.12.	공무원 정현원 직급차이에 따른 보수 부족재원 확보
			20	-			110-05		
			95	-		인건비(이북)	110-01		
			5	-			110-02		
			180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인건비	110-01		
			10	-			110-05		
			159	-		인건비(대통령기록관)	110-01		
			286	-			110-02		
			15	-		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	110-05		
	소계		1,570	-	133				
	합계		3,300	-	133				
청사기본경비(총액)	320-09	전용	98	-	3	인건비(청사)	110-02	11.12.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부족재원 마련
	합계		98	-	3				
청사기본경비	220-01	세목조정	6	-	6	청사기본경비	220-02	11.18.	각종 지원근무 등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재원 마련
	합계		6	-	6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420-03	세목조정	22	-	212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420-05	4.18.	교통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추가 공사비 재원 마련
	합계		22	-	212				
중앙안전 상황실운영	210-15	세목조정	883	-	-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210-09	1.31.	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 소요 반영
	210-14		73	-	-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210-09	3.5.	영상회의 기능 개선 용역 소요 반영

	210-15		123	-	-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210-09	8.13.	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 소요 반영
	210-01		30	-	-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210-02	11.19.	사무·소모성 물품 구입 재원 마련
	소계		102	-	-				
	합계		272	-	-				
재난안전 상황실 기본경비	210-07	세목 조정	3	-	-	재난안전상황실 기본경비	210-02	11.20.	임차료 지급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3	-	-				
	합계		3	-	-				
기록관 보존시설관리	210-09	전용	10	-	-	기록물보존복원	210-15	4.7.	직제개편에 따른 기록관 보존시설관리 부족재원 마련
			28	-	-	기록관리정책및교육	210-01		
	소계		38	-	-				
	210-02	전용	18	-	-	기록물보존복원	210-15	11.4.	공공요금 부족재원 마련
			50	-	-		430-01		
			10	-	-	기록정보서비스	210-01		
			7	-	-		210-05		
			150	-	-	기록관보존시설관리	320-09		
	소계		235	-	-				
	합계		273	-	-				
국가기록물 정리	220-01	세목 조정	5	-	-	국가기록물정리	220-02	11.24.	기록관리부 미이관 비전자기록물 사실조사 관련 재원 확보
	소계		5	-	-				
	220-01	세목 조정	5	-	-	국가기록물정리	220-02	12.16.	기록서비스부 미이관 비전자기록물 사실조사 관련 재원 확보
	소계		5	-	-				
	합계		10	-	-				
기록관리 정책및교육	210-16	세목 조정	2	-	-	기록관리 정책및교육	210-07	4.10.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선발 시험 종사자 시험수당 확보
	소계		2	-	-				
	220-01	세목 조정	1	-	-	기록관리 정책및교육	220-02	12.19.	기록관리 평가 현장점검 관련 여비 부족
	소계		1	-	-				
	합계		3	-	-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기본경비(총액)	210-06	내역 변경	3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총액)	210-06	11.4.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250-02		1	-	-	대통령기록관기본경비(총액)	250-02	11.21.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합계		4	-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본경비	220-02	세목조정	8	-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	220-03	10.28.	국외출장 및 추가 국외출장 일정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부족재원 마련
	220-01		4	-	-		220-02	12.3.	직원출장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예산 부족재원 마련
	210-09		3	-	-		210-01	12.15.	교육원 시설관리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재원 마련
	합계		15	-	-				
재난안전 교육원운영	210-09	세목조정	30	-	-	재난안전교육원 운영	210-15	7.1.	교육원 여름철 장마 대비 보수공사 등에 따른 조정
	210-02		60	-	-		210-15	11.14.	공공요금 및 생활관 합숙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재원 마련
	210-02		8	-	-		210-15	11.25.	공공요금 및 생활관 합숙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재원 마련
	210-15		4	-	-		210-01	12.3.	대면교육 전환으로 인한 세탁·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계약 및 대금 지출에 필요한 용역비 부족재원 마련
	합계		102	-	-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 (정보화)	210-06	세목조정	59	-	0.7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정보화)	210-15	4.8.	상황실의 당직 임무 분리시행으로 별도 당직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210-01		99	-	12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정보화)	210-15	5.15.	통신사 입찰담합 손해액 환수소송 추진에 필요한 손해액 감정료 납부 재원 마련
	210-09		27	-	156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정보화)	210-15	12.5.	대구청사 화재안전점검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
	210-01		71	-	12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정보화)	210-15	12.12.	조달수수료, 소송비용 납부 재원 및 화재대응 비상근무로 인한 특근매식비 부족분 마련
	210-05		5						
	210-01		42	-	12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정보화)	210-15	12.15.	화재복구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분 마련
	210-01		438	-	12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정보화)	210-15	12.23.	조달수수료 납부 및 공공요금 예산 부족분 확보
	210-02		187	1,115	506				
	소계		928	1,115	710.7				
	430-01	전용	2,759	5,783	523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정보화)	210-15	7.15.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보안 취약으로 조치가 시급한 노후보안장비 긴급 교체 재원 마련

	420-03		3,900	9,425	10,040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정보화)	210-15	10.22.	화재로 인해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 재개를 위한 기반인프라 복구 재원 마련
	420-04		70	222	7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정보화)	210-15	10.22.	화재로 인해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기반인프라 복구 재원 마련
			13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정보화)	260-01	10.22.	
	250-02		1.5	-	-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정보화)	210-15	12.18.	부서신설(클라우드협력팀, '25.7.)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재원 마련
	소계		6,861	15,430	10,638				
재난안전 연구원 기본경비 (총액)(R&D)	210-01	세목조정	5	-	-	재난안전연구원 기본경비(총액)(R&D)	210-02	12.12.	연구원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재원 마련
			5	-	-	재난안전연구원 기본경비(총액)(R&D)	210-05	12.12.	
	소계		10	-	-				
	320-09	전용	8	-	-	재난안전연구원 인건비(R&D)	110-02	12.24.	'25년 상반기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8,278천원이 지출되어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예산대비 7,800천원 부족
	소계		8	-	-				
	합계		18	-	-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환경 개선유지	210-02	자체이용	134	-	8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210-01	10.24.	공공요금 부족재원 마련
	소계		134	-	8				
	210-02	세목조정	12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210-01	9.23.	공공요금 부족재원 마련
	210-02		16	-	16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210-15	12.8.	공공요금 부족재원 마련
	210-09		9	-	-				온수배관 누수에 따른 긴급보수비용 재원 마련
	소계		37	-	16	공공요금 집행잔액(도시가스 12월 요금 '26년 1월 집행)			
	합계		171	-	24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운영	220-02	세목조정	6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	220-01	5.23.	한·중세미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

	210-14		6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	210-01	10.17.	동영상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예산 비목의 조정
	210-02		20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	210-01	12.23.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30	-	-		210-07		
	소계		62	-	-				
	합계		62	-	-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220-02	세목 조정	30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220-01	6.19.	KOICA 위탁과정 경비 집행주체 변경(KOICA → 인재개발원)에 따른 교육생 체재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소계		30	-					
	합계		30	-					
인건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10-02	세목 조정	0.2	-	-	인건비(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10-01	12.30.	기타직보수 부족분 재원마련
	소계		0.2	-	-				
	합계		0.2	-	-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기본경비 (총액)	110-03	내역 변경	3	-	-	이북5도 기본경비(총액)	110-03	12.15.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상용임금 부족분 지원
	소계		3	-	-				
	합계		3	-	-				
비상대비훈련	210-09	세목 조정	4	-	1	비상대비훈련	210-07	12.12.	중앙통제단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 재원 마련
	220-01		10	-	7		220-02	11.26	국내여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합계		14	-	8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 확충	220-01	세목 조정	10	-	-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 확충	210-02	11.24.	국내여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합계		10	-	-				
비상대비 담당자선발	210-14	세목 조정	2	-	-	비상대비 담당자선발	210-07	2.19	용역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210-01		5				210-16	7.7	수용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6				210-07	11.25	
			1				210-04	12.11	
			1					12.16	
	합계		15	-	-				

비상대비 정보화 (정보화)	210-15	전용	20	-	-	비상대비정보화	260-01	2.1.	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조달수수료 지급 예산 부족
	260-01		566	-	-	비상대비정보화	430-01	11.18.	국정원 ISP 결과에 근거한 운영환경 고도화 추진
	합계		586	-	-				
비상대비정책 국기본경비 (총액)	210-05	내역 변경	5	-	3	사회재난실 (총액)	210-05	11.21.	현안대응 지원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합계		5	-	3				
비상대비정책 국기본경비	220-01	세목 조정	4	-	5	비상대비정책 국기본경비	220-02	11.11.	국내여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합계		4	-	5				
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 점검단 운영	220-01	전용	75	-	-	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 점검단 운영	210-01	8.14.	수상안전점검 특별대책기간 운영, 하반기 지역축제 안전관리,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지역 현장점검 등 안전점검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재원 마련
	소계		75	-	-				
	210-14	세목 조정	18	-	-		210-01	5.22.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홍보영상 용역비 확보
	210-15		18	-	-		210-01	10.15.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휴일 대국민 안내·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용역비 확보
	소계		36	-	-				
	합계		111	-	-				
10.29참사피해 자지원단 운영지원	210-01	내역 변경	30	-	-	사회재난교육 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210-01	9.18.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4분기 피해구제 심의회 등 운영비 부족에 따른 재원 지원
	소계		30	-	-				
	210-01	세목 조정	0.2	-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	210-16	12.29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안건 검토 자료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
	210-02		2	-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	210-01	3.27.	피해자지원 안내문 발송(등기)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재원마련
			2	-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	210-07	9.2	피해자지원 안내문 발송(등기)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재원마련

	210-14		51	-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	210-01	9.2	3주기 추모행사 외국인 유가족 초청에 따른 통역, 의전 등 행사지원용역 필요에 따른 재원 마련
			4	-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	210-05	9.2	
	220-01		8.1	-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	220-02	11.17	3주기 추모행사 진행에 따른 유가족 의전, 행사지원 여비 부족에 따른 재원 마련
			0.1	-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	220-02	12.2	국회업무(예산, 법안 등) 협의, 세종 출장 등 여비부족
	소계		67.4	-	-				
	220-02	전용	6	-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	420-02	9.18.	3주기 추모행사 외국인 초청 결정에 따른 항공료, 체제비 등 국외업무 여비재원 마련
			117	-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	420-03	9.18.	
			1	-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	420-05	9.18.	
			29.2	-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운영지원	430-01	9.18.	
	소계		153.2						
	합계		251	-	-				
사회재난실(총액)	110-03	내역변경	2.5	-	0.3	재난관리실(총액)	110-03	12.15.	원활한 기관운영 지원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2.5	-	0.3				
	합계		2.5	-	0.3				
사회재난실기본경비	220-01	전용	60	-	30	사회재난실기본경비	210-01	10.31.	사회재난 예방 현장업무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60	-	30				
	합계		60	-	3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운영지원	210-02	세목조정	80	-	28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운영지원	210-01	8.28.	사무실 관리비 및 망 사용료 집행을 위해 부족 재원 마련
	소계		80	-	28				
	합계		80	-	28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320-02	전용	245	-	-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210-02	10.22	모바일 신분증 발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등 부족분 재원 마련
	210-15		5	-	-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210-01	11.5.	주요정책과제 추진에 따른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재원 마련
	소계		250	-	-				
	합계		250	-	-				

전자정부 국가간 협력강화	210-07	세목 조정	15	-	2	전자정부 국가간 협력강화	210-01	10.21.	2025년 중남미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운영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재원마련
	소계		15	-	2				
	합계		15	-	2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210-02	세목 조정	4	-	2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210-15	5.20.	행정정보 보유기관과 연계를 위한 공공요금(전용회선료) 부족 재원 마련
	소계		4	-	2				
	합계		4	-	2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운영 (정보화)	260-01	전용	40	-	-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운영(정보화)	210-15	3.28.	정부24 보안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40	-	-				
	합계		40	-	-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운영	210-14	세목 조정	13	-	-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운영	210-07	9.4.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행사비용 재원 마련
			6	-	-		210-01		
	210-14		35	16	4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운영	210-01	10.17.	오송 지하차도참사 백서 제작비용 재원 마련
	210-05		5	-	3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운영	210-01	12.19.	자연재난 대응 근무자 특근매식비 재원 마련
	합계		59	16	7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220-01	세목 조정	2	-	-	지진대비인프라구축	220-02	1.10.	국내여비 부족으로 국외업무여비 집행 잔액을 세목 조정하여 집행
	합계		2	-	-				
국가재난 대응종합훈련	210-14	세목 조정	160	-	6	국가재난 대응종합훈련	210-01	1.10.	재난대비훈련 홍보 용역 사업 추진
	합계		160	-	6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	210-07	세목 조정	30	-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210-01	3.13.	'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심사 관련 임차료 부족재원 마련
	210-01		16	-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210-07	12.24.	'26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책자 인쇄비용 등 부족재원 마련
	합계		46	-	-				
재난관리실 기본경비 (총액)	210-05	내역 변경	11	-	8	사회재난실 (총액)	210-05	12.12.	원활한 기관운영 및 업무 지원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1	-	-		210-16		
	210-12		0.04	-	-	사회재난실 (총액)	210-12	12.12.	원활한 기관운영 및 업무 지원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210-16		1	-	-	사회재난실 (총액)	210-16	12.12.	원활한 기관운영 및 업무 지원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합계		13	-	8				

재난관리실 기본경비	210-08	세목 조정	2	-	-	재난관리실 기본경비	210-01	5.1.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 유류비 재원 마련
			3	-	1		210-07	10.17.	원활한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유류비 재원 마련
	220-01		14	-	-	재난관리실 기본경비	220-02	12.3.	원활한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출장여비 재원 마련
	소계		19	-	1				
	220-01	자체 전용	62	-	27		210-01	12.12.	원활한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출장여비 재원 마련
	소계		62	-	27				
	210-07	내역 변경	22	-	3	차관보실 기본경비	210-07	5.30.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 임차료 재원 마련
	소계		22	-	3				
	합계		103	-	31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210-15	자체 전용	175	-	2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260-01	1.22.	사무이양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용역비로 전용
	110-03		37	-	-	국민통합 위원회 운영	110-03	12.29.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공무직(1명) 시간외근무 수당 부족 ※ '25년도 행안부 임금 단체협약('25.11) 따른 임금 인상
	소계		212	-	2				
	210-14	세목 조정	15	-	-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210-01	4.17.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비용 부족 세목 재원 마련
	210-01		4	-	-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210-05	4.17. ~6.24.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비용 부족 세목 재원 마련 ※지자체 재배정예산 자체적으로 세목조정 진행
	210-02		25	-	-				
	소계		44	-	-				
	합계		256	-	2				
지자체 경쟁력지원	330-02	전용	17	-	-	지자체경쟁력지원	210-14	12.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로 인해 발생한 합동평가시스템 장애 복구를 위한 부족재원 마련 필요
	소계		17	-	-				
	330-01	세목 조정	135	-	11	지자체경쟁력지원	330-03	3.24.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 공모결과에 따른 경상보조 재원마련
	210-14		62	-	-	지자체경쟁력지원	210-01 210-07	12.23.	30주년 기념사업 행사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행사용역 과업 변경 및 추가
	소계		197	-	11				
	합계		214	-	1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지원	110-04	전용	23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지원	210-01	11.4.	5.18 8차 보상에 따른 사실조사원 인건비(고용부담금 포함) 및 여비 부족 재원 마련
	220-01		15	-				11.4	
	320-09		3	-				11.4.	
	소계		41	-					
	합계		41	-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350-01	세목 조정	87	-	-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350-02	12.23.	인건비 부족 등에 따른 사업비 87백만원을 인건비, 운영비로 세목조정
	합계		87	-	-				
지역발전 활성화	210-14	전용	30	-	3	지역발전활성화	260-01	2.18.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 연구 추진 사업목적 달성
	110-03		1	-	-	지역발전활성화	320-09	12.30.	퇴직연금 적립금(DB형) 지출을 위해 상용임금 일부를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소계		31	-	3				
	210-01	세목 조정	10	-	-	지역발전활성화	210-07	4.8.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워크숍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세목조정
	220-02		5	-	-	지역발전활성화	220-01	10.20.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현장점검 추진을 위해 세목조정
	소계		15	-	3				
	합계		46		3				
마을기업 육성사업	320-02	전용	90	-	-	마을기업 육성사업	210-01	6.23.	당초 홈페이지를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위탁 거부로 인해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210-15		
							430-01		
	합계		90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260-02	세목 조정	300	-	104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260-01	11.13.	주요 정책현안 연구용역 진행을 위한 세목조정
	합계		300	-	104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운영	210-09	세목 조정	4	-	-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운영	210-15	5.22.	피해진상관리시스템 검색기능 보완 비용 마련
	210-09	세목 조정	4	-	-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운영	210-15	10.16.	위로금등지급관리시스템 검색기능 보완 비용 마련
	210-02	세목 조정	1	-	1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운영	210-01	11.20.	공공요금 부족재원 마련
	210-16		1	-	-		210-01		기타운영비 부족재원 마련
	210-09	세목 조정	8	-	-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운영	210-15	11.24.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위로금등지급관리시스템 및 피해진상관리시스템 장애복구 비용 마련
	합계		18	-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조사 지원 및 운영	210-02	세목 조정	0.8	-	-	대일항쟁기강제 동원조사지원및 운영	210-07	9.11.	행안부-미 DPAA 유해발굴 업무 관련 국외출장 시 현지 차량 임차비용 마련
	210-14		5	-	-	대일항쟁기강제 동원조사지원및 운영	210-01	11.7.	중국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유전자 검사 비용 마련
	210-14		5	-	-	대일항쟁기강제 동원조사지원및 운영	210-07	11.7.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업무관련 국외출장 시 현지 차량 임차비용 발생
	소계		10.8	-	-				
	합계		10.8	-	-				
인건비 (부마민주 항쟁위)	110-01	이용	21	-	-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지원	210-01	11.21.	'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약 20백만원이 조정재원으로 삭감 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 이용하였음.
	합계		21	-	-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210-15	세목 조정	3	-	-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210-01	1.21.	관리용역 추진 부족재원 마련
	210-07		50	-	2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210-01	11.3.	사무실 임차료 부족재원 마련
	210-05		7	-	1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210-01	11.11.	특근매식비 부족재원 마련
	합계		60	-	3				
청사시설유지 보수	210-02	이용	840	-	1,829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지원	310-01	10.19.	청사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재원 마련
	합계		840	-	1,829				
재난대책비 (보조)	330-03	이용	24,128	-	-	제주4.3피해보상 (보상금등)	310-02	8.22.	7.16.~20.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재원 확보
			9,201	-	-	제주4.3피해보상 (보상금등)	310-02	11.19.	7.16.~20. 호우, 9.6.~7.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재원 확보
			7,000	-	-	민주화운동기념 사업지원	310-02		
			3,400	-	-		330-03		
			1,214	-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 운영지원 (정보화)	210-01		
			1,605	-	-		210-14		
			1,000	-	-		260-01		
			400	-	-		420-03		
	합계		47,948	-	-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210-14	세목 조정	6	-	-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210-01	8.27.	지자체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 집행지침에 맞는 세목으로 조정
	합계		6	-	-				
행정생산성 향상 지원	210-14	세목 조정	22	-	-	행정생산성향상 지원	210-01	11.6.	공유누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비용 마련
	합계		22	-	-				
정부혁신 추진 및 확산	260-01	전용	515	761	252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10-15	5.20.	정보시스템(소통24혁신24) 통폐합 사업 수행을 위한 전용 및 국정자원 화재('25. 9.26.)로 인한 위임발주 지연
	소계		515	761	252				
	210-02	세목 조정	1.5	-	-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10-01	6.19.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이용 요금 마련
	소계		1.5	-	-				
	합계		516.5	761	252				
정보공개 활성화 (정보화)	210-02	전용	4	-	-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10-01	11.4.	정보공개시스템 서비스 제공(시스템 복구 등)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210-15		6	-	-				
	합계		10	-	-				
인건비 (본부)	110-01	이용	8,500	-	2.,010	제주4.3피해보상 (보상금등)	301-02	25.11.	본부 인건비 부족재원 마련
	110-02				623				
	합계		8,500	-	2,633				
기관운영(총액)	210-07	세목 조정	10	-	-	기관운영(총액)	210-12	2.1.	부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
	210-07		23	-	-	기관운영(총액)	210-12	12.30.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재원 마련
	소계		33	-	-				
	210-12	전용	350	-	-	인건비(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10-01	12.23.	복리후생비 재원 마련
						인건비(기록)	110-01		
	250-02		27	-	-	기관운영(총액))	210-05	12.23.	행정안전부 본부 직책수행경비 재원 마련
						감사관실(총액)	210-05		
						사회재난실(총액)	210-05		
	소계		377	-	-				
	합계		410	-	-				

기관운영	210-07	세목조정	47	-	-	기관운영	210-01	5.12.	부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
	210-09		25	-	-				
	210-07		10	-	-	기관운영	210-01	8.5.	부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
	210-07		8	-	-	기관운영	210-01	12.23.	전용차량 임차료 재원마련
	210-08		8	-	-	기관운영	210-14	12.31.	유류비 등 재원 마련
	210-09		1	-	-				
	소계		99	-	-				
	220-01	자체전용	56	-	-	기관운영	210-01	12.29.	출장자에 대한 여비 재원 마련
	소계		56	-	-				
	합계		155	-	-				
재외주재관 지원	220-02	전용	22.3	-	-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210-02	12.19.	재외주재관의 법적경비 지원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1.5	-	-	재외주재관지원	210-02		
	소계		23.8	-	-				
	210-07	세목조정	18.9	-	-	재외주재관지원	210-01	12.19.	재외주재관의 법적경비 지원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3.6	-	-		210-02		
	소계		22.5	-	-				
	합계		46.3	-	-				
전자정부국 (총액)	210-05	내역변경	7	-	3	사회재난실 (총액)	210-05	11.21.	현안대응 지원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7	-	3				
	합계		7	-	3				
전자정부국	220-01	전용	20	-	-	사회재난실	210-01	12.12.	원활한 현장업무 대응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220-01		30	-	-	전자정부국	210-01		
	소계		50	-	-				
	210-09	세목조정	1	-	-	전자정부국	210-01	6.27.	TF협업지원팀 전기공사 등 시설장비유지비 마련
	210-09		5	-	-		210-01	10.17.	디지털정부인프라혁신TF 전기공사 등 시설장비유지비 마련
	210-07		6	-	1		210-01	7.29.	사무기기 임차료 부족 재원 마련
	210-07		10	-	1		210-01	10.16.	TF팀 사무용집기 임차료 부족 재원 마련
	소계		22	-	1				
	합계		72	-	1				
국경일등 정부행사	210-01	세목조정	85	-	-	국경일등 정부행사	210-02	9.1.	광복 80년 영상 홍보 부족재원 마련
	210-01		254	-	-	국경일등 정부행사	210-02	12.2.	광복 80년 대행 용역 등 부족재원 마련
	210-14		29	-	-		210-07		
	합계		368	-	-				

정부포상	210-14	세목 조정	61	-	-	정부포상	210-01	1.8.	국민추천포상 홍보 용역의 원활한 진행 및 조달계약 의뢰
	210-14		77	-	-	정부포상	210-01	7.23.	
	210-14		18	-	-	정부포상	210-07	10.10.	대한민국 우수공무원 행사 용역의 원활한 진행 및 조달계약 의뢰
	합계		156	-	-				
국가상징선양	210-01	세목 조정	200	-	-	국가상징선양	210-14	7.4.	태극기 캠페인 물품제작 등으로 일반수용비로 목변경 필요
	210-01		10	-	-	국가상징선양	210-14	12.5.	국민의례 홍보 영상 표출을 위한 재원 마련
	합계		210	-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3. 2025회계연도 이용·전용내역 분석

(1) 이·전용 현황

행정안전부의 2025회계연도 이·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증액사업 기준으로 이용은 9개 세부사업에서 606억 800만원 규모로 실시되었고, 전용은 29개 세부사업에서 167억 800만원 규모로 총 38개 세부사업에서 773억 1,600만원 규모로 이·전용이 실시되었음.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이용·전용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수	금액
이용	9	60,608
전용	29	16,708
합계	**38**	**77,316**

주 1) 증액 사업 기준으로 집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연례적 이·전용 실시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든 재정적·행정적 변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일정 정도의 이·전용등은 용인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전용등이 실시되고 있다면, 담당 부서의 집행관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연례적으로 이·전용등이 실시된 것은 예산규모 산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전용등을 통한 증액이 자주 실시되었다면 과소편성, 이·전용 등을 통한 감액이 자주 실시되었다면 과다편성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예산안 심의 시 환류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겠음.

아래와 같이 최근 5년(2021～2025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전용등(내역변경·세목조정 제외)을 통한 증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8개 사업임. 이 중 5회(매년) 증액된 것은 재난대책비(총액), 국과수기본경비(총액), 기관운영(총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등 4개 사업, 4회 증액된 것은 기관운영, 정보보호인프라확충, 청사기본경비(총액), 청사시설유지보수 등 4개 사업임.

[2021～2025회계연도 4회 이상 이·전용 사업별 증액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세부사업	2025	2024	2023	2022	2021
5회	일반회계	재난대책비(보조)	47,948	53,723	18,419	62,652	5,877
	일반회계	국과수기본경비(총액)	1,250	1,149	1,378	786	372
	일반회계	기관운영(총액)	377	18	1,310	171	198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6,860	200	2,516	1,540	1,245
4회	일반회계	기관운영	56	50	64	152	-
	일반회계	정보보호인프라확충	250	218	100	-	87
	일반회계	청사기본경비(총액)	98	67	61	-	114
	일반회계	청사시설유지보수	6,210	8,003	8,748	2,140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역변경·세목조정은 제외하고 최근 5년(2021～2025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용·전용을 통한 감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12개 사업임. 이 중 5회(매년) 감액된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인건비(국과수), 인건비(본부),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등 3개 사업, 4회 감액된 것은 인건비(청사), 지자체경쟁력지원,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정부혁신추진및확산, 기록관시설보존관리,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 등),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등 9개 사업임.

[2021～2025회계연도 5회 이상 이·전용 사업별 감액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세부사업	2025	2024	2023	2022	2021
5회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6,879	-6,375	-8	-1,540	-1,332
	일반회계	인건비(국과수)	-1,250	-1,149	-1,378	-1,345	-1,872
	일반회계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175	-652	-151	-655	-18
4회	일반회계	인건비(청사)	-98	-517	-55	-	-114
	일반회계	지자체경쟁력지원	-17	-554	-422	-320	-
	일반회계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187	-503	-	-556	-420
	일반회계	정부혁신추진및확산	-525	-130	-400	-530	-
	일반회계	기록관시설보존관리	-218	-270	-398	-	-325
	일반회계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	-41,829	-28,800	-10,000	-47,000	-
	일반회계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20	-220	-903	-2	-
	일반회계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860	-1,669	-2,315	-	-164
	일반회계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7,697	-7,640	-4,200	-4,703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연초 이·전용등 실시

통상 연초는 예산안의 국회 심의·확정 시점과 가깝다는 점에서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이·전용등의 소요도 크지 않을 것임. 이에 연초에 이·전용등이 실시된 사업은 당초 예산안 편성이 신중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음.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중 2월 이전에 이·전용등을 실시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기획조정실', '국과수기본경비(총액)', '과학수사감정지원' 등 총 9개 세부사업이 있었음.

[2025회계연도 2월 이전에 이·전용등 실시 사업]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기획조정실	210-02	전용	27	재난안전연구원 기본경비(총액)	210-01	1.24	장애인 의무고용관련 법정부담금 재원 마련
	210-02	이용	187	공무원통근 버스운행	210-07	1.24	장애인 의무고용관련 법정부담금 재원 마련
			100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10-02		
			167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10-15		
			68	기록관보존 시설관리	210-02		
			20	대통령기록관리	210-02		
			19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정보화)	210-02		
			14	국과수 기본경비(총액)	210-02		
국과수기본경비 (총액)	210-01	세목 조정	1	국과수기본경비 (총액)	210-02	1.21.	2025 제주분원 물품 관리 용역 대금 부족
과학수사감정지원	210-15	세목 조정	99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9	1.3.	디지털인증 유지보수비 조정
	210-14	세목 조정	30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9	1.15.	일반용역비 사업량 증가
	210-07	세목 조정	10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9	1.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임차료 대금 부족으로 인한 조정
과학수사감정장비 현대화	210-15	세목 조정	1,134.5	과학수사감정장비 현대화	210-09	1.3.	감정장비 유지보수 계약으로 조정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10-15	세목 조정	883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10-09	1.31.	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 소요 반영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220-01	세목 조정	2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220-02	1.10.	국내여비 부족으로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을 세목 조정하여 집행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10-14	세목 조정	160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10-01	1.10.	재난대비훈련 홍보 용역 추진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210-15	자체 전용	175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260-01	1.22.	사무이양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용역비로 전용
여수·순천 10. 19 위원회 지원	210-15	세목 조정	3	여수·순천 10. 19 위원회 지원	210-01	1.21.	관리용역 추진 부족재원 마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재이·전용등의 사례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집행과정에서 특정 세부사업·세목으로부터 이·전용등을 받은 후 이를 다시 다른 세부사업·세목으로 이·전용등을 하여 주거나, 다른 세부사업·세목으로 이·전용등을 한 후 해당 예산이 부족하여 이를 다시 이·전용등 받는 사례(이하 “재이·전용등”)도 발생하였음. 이는 해당 세부사업·세목 예산의 향후 소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전용 등을 실시한 것을 의미함.

‘국과수기본경비(총액)’ 세부사업의 경우 총 5개 세목에서 재이·전용등이 발생하였는데,

① 특근매식비(210-05)의 경우 4건의 세목조정을 통한 증액과 1건의 세목조정을 통한 감액이 있었음.

② 일반수용비(210-01)의 경우 9건의 세목조정을 통한 증액과 5건의 세목조정을 통한 감액이 있었음.

③ 시설장비유지비(210-09)의 경우 5건의 세목조정을 통한 증액과 1건의 세목조정을 통한 감액이 있었음.

④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의 경우 8월 4일 300만원을 세목조정받고, 8월 25일 12억 1,900만원을 전용받았으며, 1건의 이용과 6건의 세목조정을 통해 감액되었음.

⑤ 일숙직비(210-05)의 경우 9월 9일 400만원을 세목조정받고, 12월31일 58만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 주었음.

[2025회계연도 국과수기본경비(총액) 재이·전용등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세목	날짜	증액			감액	
		유형	금액	사유	유형	금액
특근매식비(210-05)	5.29.	세목조정	1	감정량 증가에 따라 부족예상분 보충	-	-
	9.9	세목조정	4	을지연습 등으로 인한 특근매식비 부족 보충	-	-
	10.24	세목조정	16.9	특근매식비 부족 등에 따른 조정	-	-
	10.27.	세목조정	8.9	본원 및 지방연구소 특근매식비 부족	-	-
	12.18.	-	-	-	세목조정	1.5
일반수용비(210-01)	1.21.	세목조정	1	2025 제주분원 물품관리 용역대금 부족	-	-
	2.24	세목조정	0.15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인한 조정	-	-
	5.29	-	-	-	세목조정	1
	5.30	세목조정	0.5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사용료 부족으로 조정	-	-
	8.4.	세목조정	3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조정	-	-
	10.24	세목조정	16.9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조정	-	-
	11.7.	세목조정	39,2	자문수당, 변호사비 등으로 조정	-	-
	12.11	-	-	-	세목조정	2
	12.15.	-	-	-	세목조정	1.7
	12.18.	세목조정	1.5	일반수용비 등으로 조정		
	12.22.	-	-	-	세목조정	1.3
	12.30.	세목조정	1.2	일반수용비 등으로 조정	-	
	12.30.	세목조정	0.46	긴급소모품 구입	-	-
	12.31.	-	-	-	세목조정	0.58
시설장비유지비 (210-09)	4.11	세목조정	0.7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 수리비용	-	-
	10.3	-	-	-	세목조정	2
	10.24	세목조정	16.9	청사수리보수비 충당	-	-
	12.11.	세목조정	2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으로 인한 충당	-	-
	12.18.	세목조정	0.3	관용차량 소모품 규모	-	-
	12.22.	세목조정	1	공용차량 엔진오일교환 등 관리비 부족	-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21	-	-	-	세목조정	1
	1.24.	-	-	-	이용	15
	2.24.	-	-	-	세목조정	0.15
	5.30	-	-	-	세목조정	0.5
	8.4	세목조정	3	공공요금 부족 등	-	-
	8.25.	전용	1,219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재원 마련	-	-
	10.27	-	-	-	세목조정	1.4
	10.27.	-	-	-	세목조정	8.9
	11.7.	-	-	-	세목조정	39.2
일숙직비(210-06)	9.9.	-	-	-	세목조정	4
	12.31.	세목조정	0.58	일숙직비 부족	-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감사관실 세부사업의 경우 2개의 세목에서 재이·전용등이 발생하였는데,

① 일반수용비(210-01)의 경우 9월 3일, 10월 13일 각각 700만원, 400만원을 세목조정 받았으며, 11우 25일 900만원을 다른 세목에 조정해 주었음.

② 임차료(210-07)의 경우 9월 3일, 12월 26일 각각 700만원, 600만원을 다른 세목에 조정해 주었고, 11월 25일 900만원을 세목조정받았음.

[2025회계연도 감사관실 재이·전용등 사례]

(단위: 백만원)

세목	날짜	증액			감액	
		유형	금액	사유	유형	금액
일반수용비(210-01)	9.3.	세목조정	7	감사관실 운영비 부족분	-	-
	10.13.	세목조정	4	감사관실 운영비 부족분	-	-
	11.25.	-	-	-	세목조정	9
임차료(210-07)	9.3.	-	-	-	세목조정	7
	11.25.	세목조정	9	감사관실 TF설치를 위한 재원마련	-	-
	12.26	-	-	-	전용	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세부사업의 경우 두 개의 세목에서 재이·전용등이 발생하였는데,

① 시설장비유지비(210-09)의 경우 1월 3일에 11억 3,450만원을 관리용역비로 세목조정해 주었고, 7월 5일, 11월 13일 각각 5,000만원, 770만원을 세목조정 받았음.

② 관리용역비(210-15)의 경우 1월 3일 11억 3,45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부터 세목조정 받은 후, 7월 6일, 11월 13일 각각 5,000만원, 770만원을 세목조정해 주었음.

[2025회계연도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재이·전용등 사례]

(단위: 백만원)

세목	날짜	증액			감액	
		유형	금액	사유	유형	금액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3.	-	-	-	세목조정	1.134.5
	7.5.	세목조정	50	감정장비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의 부족 충당	-	-
	11.13.	세목조정	7.7	감정장비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의 부족 충당	-	-
	1.3.	세목조정	1.134.5	감정장비 유지보수 계약으로 조정	-	-
	7.5.	-	-	-	세목조정	50
	11.13.	-	-	-	세목조정	7.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세부사업의 경우 상용임금(110-03) 세목에서 재이·전용이 발생하였는데, 10월 24일 다른 세목으로 16억 2,000만원을 전용하고, 11월 20일 다른 사업으로 17억 3,000만원을 이용한 후, 12월 23일과 다른 세목으로부터 13억을 전용받았음.

[2025회계연도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재이·전용등 사례]

(단위: 백만원)

세목	날짜	증액			감액	
		유형	금액	사유	유형	금액
상용임금(110-03)	10.24	-	-	-	전용	1,620
	11.20	-	-	-	이용	1,730
	12.23.	전용	1,300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재원 마련	-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4. 2025회계연도 불용·이용내역 분석

(1) 불용・이월 현황

행정안전부의 2025회계연도 불용・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증액사업 기준으로 불용은 223개 세부사업에서 1,191억 8,900만원 규모로 실시되었고, 이월은 27개 세부사업에서 305억 700만원 규모로 총 225개 세부사업에서 1,496억 9,600만원 규모로 불용・이월이 실시되었음.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불용·이월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수	금액
불용	223	119,189
이월	27	30,507
합계	**225[1)]**	**149,696**

주1) 불용사업과 이월사업간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므로, 세부사업수 합계는 불용사업수와 이월사업수의 단순 합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불용률이 과다한 사업현황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예측하지 못한 사정변경, 100% 정확한 수요예측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일정 수준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불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예산과다 계상, 수요예측 실패, 집행과정의 비효율에 따른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불용률이 30%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진실화해위원회기본경비, 의정관실(총액),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 등 6개 사업임.

[2025회계연도 불용률이 30%이상인 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인건비(진실화해위원회)	76.8	0.4	0.0	76.4	99.5
진실화해위원회 지원	1,088.7	62.8	0.0	1,025.9	94.2
진실화해위원회기본경비	664.5	93.1	0.0	571.4	86.0
의정관실(총액)	30.5	16.1	0.0	14.4	47.2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7,512.7	4,304.1	0.0	3,208.6	42.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	4,525.0	3,128.3	0.0	1,396.7	30.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이월률이 과다한 사업현황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나 협의보상 지연으로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거나, 자연재해 및 예상치 못한 사고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다음연도로 예산 일부를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음.

「국가재정법」 제48조[8]에서는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으나, 명시이월비,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이월률이 30%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정책연구개발 등 2개 사업임.

---

8)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2025회계연도 이월률이 30%이상인 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C)	이월률 (C/A)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7,904.0	4,512.5	3,382.0	9.5	42.8
정책연구개발	922.0	572.2	306.3	51.2	33.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세　　입】

【운영지원과】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00%를 초과하는 등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수입예산과 수납액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73.1%에 불과한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납 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통해 신속한 정산을 독려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반납시 광역자치단체가 취합하는 방식이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반납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 및 위탁사업에서 반납된 집행잔액의 수입으로, 2025년 예산현액은 181억 9,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2억 1,700만원이며, 수납액은 491억 3,900만원임.

구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을 계정별로 살펴보면, 지역자율계정은 예산현액이 52억 8,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3억 9,500만원이며, 수납액은 248억 8,200만원임. 한편, 지역지원계정은 예산현액이 129억 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8억 200만원이며, 수납액은 242억 3,700만원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							2026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총계	18,192	-	18,192	67,217	49,139	18,078	-	24,153
지역자율계정	5,283	-	5,283	25,395	24,882	513	-	15,643
지역지원계정	12,909	-	12,909	41,802	24,237	17,565	-	8,510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	-	-	20	20	-	-	-

자료: 행정안전부

나.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025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예산현액은 181억 9,2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491억 3,900만원(270.1%)으로, 결산액이 예산액을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음. 이처럼 수납률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2025회계연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2022년도 191.1%, 2023년도 252.6%, 2024년도 788.9%등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5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목명	예산액 (A)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D/A)
2022	5,253	-	5,253	11,905	10,041	1,864	-	191.1
2023	5,411	-	5,411	14,487	13,668	819	-	252.6
2024	10,343	-	10,343	89,083	81,594	7,488	-	788.9
2025	18,192	-	18,192	67,217	49,139	18,078	-	270.1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국회 지적 이후 세입예산 추계방식을 변경하여 수납률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대부분 지방정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세입 예산편성 시기와 보조금 반납시기가 다르고, 국고보조금 집행률과 반납률 예측이 어려워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 예산 산식]

(2023년 예산 편성) 전년 예산 × 물가상승률 →
(2024년 예산 편성) '23년 결산 추정치 × 물가상승률 →
(2025년 예산 편성) '24년 국고보조금 등 예산액 × '22~'23년 보조금 등 지출액 대비 평균 징수결의액 비율 × '22~'23년 징수결의액 대비 평균 수납액 비율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기타경상이전수입 산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지출액 대비 평균 징수결의액 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어서 이러한 요소를 기초로 정확한 세입예산을 추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징수결의율 및 평균수납률]

(단위: 백만원, %)

연도	보조금 등 지출액(A)	징수결정액 (B)	지출액대비 평균 징수결의율 (B/A)	수납액(C)	평균수납률 (C/B)
2022	224,074	490	0.219	473	96.531
2023	225,653	10,604	4.699	10,490	98.925
2024	216,684	16,901	7.800	16,872	99.828
2025	252,898	25,395	10.042	24,882	97.980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징수결의율 및 평균수납률]

(단위: 백만원, %)

연도	보조금 등 지출액(A)	징수결정액 (B)	평균 징수결의율 (B/A)	수납액(C)	평균수납률 (C/B)
2022	1,021,088	11,415	1.118	9,568	83.820
2023	1,381,503	3,883	0.281	3,178	81.844
2024	1,434,036	72,182	5.033	64,722	89.665
2025	2,140,947	41,802	1.953	24,237	57.980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이처럼 수입예산이 실제 수납액보다 과소하게 편성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지출예산 편성 위축, 필요 이상의 전입금 예산 편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수입예산과 수납액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 관리 필요

□ 2025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73.1%로, 2022년 84.3%, 2023년 94.3%, 2024년 91.6%에 비해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5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목명	예산액 (A)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D/C)
2022	5,253	-	5,253	11,905	10,041	1,864	-	84.3
2023	5,411	-	5,411	14,487	13,668	819	-	94.3
2024	10,343	-	10,343	89,083	81,594	7,488	-	91.6
2025	18,192	-	18,192	67,217	49,139	18,078	-	73.1

자료: 행정안전부

□ 이를 각 계정별로 살펴보면, 2025년 수납률이 저조한 원인은 지역지원계정의 수납률이 57.98%에 불과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175억 6,500만원)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집행잔액 136억 9,5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30억 6,900만원, 기타 8억 100만원으로 구성됨.

[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별 평균수납률]

(단위: 백만원, %)

계정	보조금 등 지출액(A)	징수결정액 (B)	지출액대비 평균 징수결의율 (B/A)	수납액(C)	평균수납률 (C/B)
지역자율계정	252,898	25,395	10.042	24,882	97.980
지역지원계정	2,140,947	41,802	1.953	24,237	57.980

자료: 행정안전부

□ 이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이 2022년 83.82%, 2023년 81.844%, 2024년 89.665%의 수치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 것임.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평균수납률]

(단위: 백만원, %)

연도	보조금 등 지출액(A)	징수결정액 (B)	평균 징수결의율 (B/A)	수납액(C)	평균수납률 (C/B)
2022	1,021,088	11,415	1.118	9,568	83.820
2023	1,381,503	3,883	0.281	3,178	81.844
2024	1,434,036	72,182	5.033	64,722	89.665
2025	2,140,947	41,802	1.953	24,237	57.980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사업 반납금은 지자체가 지출예산을 편성해야 반납할 수 있는데,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어 보조금 반납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함. 특히, 2025년에는 2024년에 지출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의 정산이 전체적으로 2025년 12월경에서야 완료된 사정이 있었음.

또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금 반납을 늦추려는 경향 및 국고보조사업 담당자의 관심부족도 반납금 지연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한편, 현재 국고보조금의 정산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정산 반환액을 취합하여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속 기초지자체 중 일부의 납부가 지연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전체의 수납이 지연되는 것도 수납률 저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함.

□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 반납의 지연으로 인한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저하는 다음연도에 재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현장에 묶여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와 정부의 징수능력 및 재정관리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국고보조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통해 신속한 정산을 독려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반납시 광역자치단체가 취합하는 방식이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반납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세　　출】

【기획조정실】

1. 기획조정실 (7011-254)

○ 행정안전부는 최근 4~6억원 규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을 통해 집행하고 있으므로, 소속기관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납부방법 변경 등 이·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노력을 통해 고용부담금의 납부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기획조정실' 사업은 기획조정실의 기본업무와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21억 7,000만원 중 21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기획조정실	1,568	-	602	-	2,170	2,148	-	22	1,894

동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인쇄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운영비로 17억 7,400만원, 국·내외 출장비 등으로 2억 2,400만원, 업무추진경비로 1억 3,300만원, 포상금으로 1,700만원 등으로 구성됨.

동 사업은 총 6억 200만원을 이·전용 받았는데, 주요원인은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예산액:4,500만원)에서 부족한 장애인 의무고용관련 법정부담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6억 600만원을 이·전용받았기 때문임.

세사업 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기획조정실	1,568	-	602	-	2,170	2,148	-	22
- 일반수용비 (210-01)	1,150	-	△135	-	1,015	1,012	-	3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5	-	606	-	651	650	-	1
- 임차료 (210-07)	65	-	14	-	79	78	-	1
- 일반용역비 (210-14)	-	-	34	-	34	34	-	-
- 국내여비 (220-01)	119	-	105	-	223	219	-	4
- 국외업무여비 (220-02)	37	-	△22	-	16	5	-	10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34	-	-	-	134	133	-	-
- 포상금 (310-03)	19	-	-	-	19	17	-	2
합 계	1,568	-	602	-	2,170	2,148	-	22

자료: 행정안전부

나. 장애인 의무고용관련 법정부담금 지출 축소노력 및 이·전용 최소화 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안전부도 동법 제27조제1항[9]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함.

한편, 법률상 정해진 장애인 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법 제32조의2[10]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최근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의무고용관련 법정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2년 1억 6,300만원에서 2025년 6억 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법정부담금 지출규모가 증가하는 이

---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유는 1인당 법정부담금이 매년 증가[11]하고, 2022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상승[12]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보임.

[행정안전부 장애인 의무고용관련 법정부담금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법정부담금 납부내역	1	163	358	461	606

자료: 행정안전부

□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 5월 기준 전체 장애인 고용 미달인원의 대부분이 국가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나타나고 있음.

[행정안전부 소속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

(2026년 5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본부	인재원	기록원	청사	국과수	대통령기록관	국정자원	재난연구	이북5도, 과거사, 재난교육
행정안전부 전체인원	3,612	40	70	235	2,659	150	100	171	142	45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A)	137	1	2	8	101	5	4	6	5	0
실제 고용인원 (B)	119	2	2	11	83	6	4	6	5	0
미달인원 (A-B)	18	-1	0	-3	18	-1	0	0	0	0

주1) 소속기관 합은 132명이나 소수점 이하 절사 인원 포함시 137명(추가 5명 발생)
2) 미달인원(A-B)은 기관별로 판정하기 때문에, 기관별 미달인원이 양수(+)인 경우만 합산함
자료: 행정안전부

11) 1,094천원(2022년), 1,149천원(2023년), 1,240천원(2024년), 1,311천원(2025년)
12)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화추이- 2022년:3.4%, 2023년:3.6%, 2024년:3.8%

□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청원 경찰의 비중이 높고, 청원경찰 직종은 일반인과 동일한 채용 자격요건[13]이 요구되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요구되는 장애인 고용비율 충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다만, 장애인 채용 독려 등으로 연도별 기준 장애인 미고용 인원이 2024년 36명, 2025년 29명, 2026년 8월 기준 11명으로 대폭 감축되었다고 설명함.

□ 이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설명에 따른다면,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미달되어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공공요금 및제세(210-02)'목에 4,500만원 이하의 예산액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2026년에도 장애인 고용관련 법정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타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반복될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을 받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전용을 하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으므로,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13)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사전적으로 예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준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납부방법 변경 등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 채용비율을 제고함으로써 법정부담금 납부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각 소관기관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고려하여 납부방법 변경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는 장애인 고용노력을 통해 법정부담금의 납부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의정관실】

2. 국경일등정부행사(2131-300)

○ ‘국빈방한 등 정부의전행사’ 내역사업은 2025년 신년인사회 미개최 및 대통령 탄핵·대선에 따른 정상외교 일정의 추진 제약으로 예산현액 3억 6,500만원 중 8,300만원만 집행하고 2억 8,200만원을 불용하는 등 집행이 부진하였음. 향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재원의 감액 또는 법령상 허용 범위 내 재배분을 검토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경일등정부행사 사업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념식 등 정부가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14], 신년인사회·정부시무식·국빈방한환영식 등 각종 정부의전행사를 지원하는 ‘국빈방한 등 정부의전행사’,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5회계연도에 본예산 49억 2,400만원 및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관련 추가경정예산 9억 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8억 5,400만원 중 53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집행률은 91.2%임.

□ 이 중 내역사업 ‘국빈방한 등 정부의전행사’는 예산현액 3억 6,500만원 중 8,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2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14)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념식 중 제헌절 기념식은 국회가 주관하고, 다른 4개 기념식은 정부 주관으로 시행됨.

22.7%에 그치는 등 세부사업 내 집행부진이 두드러졌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경일등 정부행사	4,924	5,854	-	±368	-	5,854	5,338	-	516	2,559
국경일 행사	4,559	4,559	-	-	-	4,559	4,480	-	79	1,440
국빈방한 등 정부의전행사	365	365	-	-	-	365	83	-	282	365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	930	-	-	-	930	775	-	155	-
정부행사 관리시스템 운영	-	-	-	-	-	-	-	-	-	754

나. 정부의전행사 집행부진 및 추경 편성 시 재원 조정 검토 미흡

□ 내역사업 '국빈방한 등 정부의전행사'는 신년인사회, 정부시무식, 신년 국립묘지 참배 등 정례행사와 국빈방한 공식환영식, 대통령 및 국무총리 순방 관련 환송·환영행사 등 수시로 발생하는 정부의전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3억 6,500만원 중 8,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2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특히 일반용역비는

예산현액 2억 4,500만원 중 200만원만 집행되고 2억 4,3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집행이 현저히 부진하였음.

[국빈방한 등 정부의전행사 비목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빈방한 등 정부의전행사	365	365	-	-	-	365	83	-	282	365
일반수용비 (210-01)	101	101	-	-	-	101	65	-	36	101
임차료 (210-07)	8	8	-	-	-	8	5	-	3	8
일반용역비 (210-14)	**245**	**245**	**-**	**-**	**-**	**245**	**2**	**-**	**243**	**245**
국내여비 (220-01)	5	5	-	-	-	5	5	-	-	5
사업추진비 (240-01)	6	6	-	-	-	6	6	-	-	6

□ 2025회계연도 집행액 8,300만원 중 4,258만원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에 따른 정부의전행사용 카페트 구매·설치비로 집행되어 전체 집행액의 약 51.3%를 차지하였음. 이는 향후 정부의전행사 개최를 위한 경비로 볼 수 있으나, 신년인사회와 국빈방한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2025년도 실제 행사 개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 집행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는 2025년 국내 정치상황으로 국빈방한 및 정상외교 관련 행사 추진이 제약되었고, 하반기 국빈방한 및 대통령·국무총리 순방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의전 수요가 있어 정부의전행사 예

산을 사전에 감액하거나 다른 내역사업으로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최근 실적을 보면 정부의전행사 개최 횟수는 2021년 10회, 2022년 11회, 2023년 23회, 2024년 11회 등으로 변동이 있으나, 해당 기간의 연도별 집행액은 약 2억원 내지 2억 4,60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국빈방한 등 정부의전행사 개최 실적]

(단위: 회, 백만원)

구분	개최 횟수	집행액	국빈방한 환영식	대통령 해외순방 환송·영	국무총리 해외순방 환송·영	신년 인사회	정부 시무식	신년 국립묘지 참배
2021	13	243	4	5	1	1	1	1
2022	14	243	1	4	6	1	1	1
2023	26	246	2	13	8	1	1	1
2024	14	202	3	5	3	1	1	1
2025	7	83	-	5	-	-	1	1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2025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점에는 통상 1월에 개최되는 신년인사회[15]가 이미 개최되지 않았고,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 및 6월 3일 대통령선거 일정으로 상반기 국빈방한 등 정상외교 관련 행사의 정상적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 따라서 정부의전행사 예산 중 일부의 미집행 가능성은 당시에도 일정 부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15)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신년인사회 행사의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계상되었음.

제출하면서 동일 세부사업에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내역사업 예산 9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회는 이를 5월 1일 의결하였음. 결산 결과 취임선서 내역사업에서도 1억 5,500만원이 불용되어, 기존 정부의전행사 내역사업의 불용액 2억 8,200만원과 함께 세부사업 전체 불용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국가재정법」 제89조는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또는 법령에 따른 지출의 발생·증가 등으로 기확정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6]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보충적 수단이므로, 신규 소요의 반영과 함께 기존 사업의 집행실적, 확정된 미집행 소요 및 향후 집행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물론 동일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간 예산조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사후적 재정조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사업계획 또는 집행여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이용·전용 등 제도를 통해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은 구체적 집행전망에 기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16)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을 신설·증액하는 경우, 기존 내역사업의 최근 집행실적, 편성 시점까지의 집행상황, 확정된 미개최 행사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토대로 집행 가능성이 낮아진 기존 예산은 감액하거나 신규 소요와의 재배분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불가피한 추경 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내 재원배분 및 집행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 정부포상(2131-301)

○ 내내역사업 국민추천포상 운영사업은 최근 5년간 홍보·수여식 대행용역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2025년에도 일반수용비 2억 3,100만원 중 1억 3,8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조정하는 등 세목조정이 지속되었음. 행정안전부는 홍보·영상제작·행사대행 등 반복적 용역소요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일반용역비에 우선 반영함으로써 비목별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편성·집행 간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정부포상 사업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유공자에게 공정하고 영예로운 정부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포상 운영’과 ‘상훈시스템 유지관리’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포상 운영 사업은 정부포상물 구입, 국민추천포상 운영, 우수공무원 포상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25회계연도에는 본예산 107억 5,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700만원[17]을 포함한 예산현액 108억 5,200만원 중 105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0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집행률은 97.3%임.

17) 전년도 이월액 9,700만원은 ‘2024년도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일정이 다음 연도로 연기되어, 해당 행사 예산 9,680만원이 2025회계연도에 집행된 데 따른 것임.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정부포상	10,755	10,755	97	-	-	10,852	10,562	-	290	13,368
정부포상 운영	10,577	10,577	97	-	-	10,674	10,449	-	225	13,191
상훈시스템 유지관리	178	178	-	-	-	178	113	-	65	177

나. 국민추천포상 행사·홍보 용역비의 반복적 세목조정 개선 필요

□ 내내역사업 ‘국민추천포상 운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한 유공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도에는 수여식, 홍보, 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에 총 3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비목별로는 일반수용비 2억 3,100만원, 임차료 2,100만원, 일반용역비 4,4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사업추진비 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사업내용별로는 수여식 1억 1,600만원, 홍보 9,100만원, 심사위원회 운영 2,000만원 및 기타 운영경비 8,400만원으로 구성됨.

[2025년도 국민추천포상 운영사업 예산 비목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일반수용비 (210-01)	임차료 (210-07)	일반용역비 (210-14)	국내여비 (220-01)	사업추진비 (240-01)	합계
예산액	231	21	44	10	5	311

[2025년도 국민추천포상 운영사업 예산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 항목	산출내역	비목	금액
수여식	사회자 및 행사요원 등 사례비	2,000 × 2명 + 4,000	일반수용비(210-01)	8,000
	대통령·국무총리 행사 식전·식후 공연 등	22,000 × 2회	일반수용비(210-01)	44,000
	행사용품(백드롭, 비표, 식순지, 주차카드, 초청장, 서한문 등)	22,000 × 2회	일반수용비(210-01)	44,000
	국민추천포상 우수사례 동영상	**20,000 × 1식**	**일반용역비(210-14)**	**20,000**
	소 계			116,000
홍보	지하철 스크린도어	5,000 × 4개소	일반수용비(210-01)	20,000
	버스중앙차로 광고	20,000	일반수용비(210-01)	20,000
	유튜브 온라인광고	26,775 × 1식(140만회, 1개월)	일반수용비(210-01)	26,775
	홍보 동영상 제작	**24,225 × 1식**	**일반용역비(210-14)**	**24,225**
	소 계			91,000
심사위원회 운영비	심사수당	230 × 23명 × 3회	일반수용비(210-01)	15,870
	안건 인쇄비	700 × 6식	일반수용비(210-01)	4,200
	소 계			20,000
기타 운영경비	추천안내 리플릿(20만부), 포스터(2만부) 제작 및 발송	1식	일반수용비(210-01)	30,000
	미담사례집 제작		일반수용비(210-01)	18,000
	심사위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5,440
	포상행사 수행 차량 및 장비 임차		임차료	21,040
	공적사실 현지 확인 여비		국내여비	8,500
	수상자 및 가족 참석 여비		국내여비	1,240
	소 계			84,220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를 지출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일반수용비는 인쇄·유인, 소모성 물품 구입 등 통상적인 수용경비를 대상으로 하고, 행사 등 일반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대행시키는 용역은 일반용역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추천포상 사업도 행사운영·영상제작 등

외부 대행경비와 인쇄물·물품구입 등 직접 집행경비를 구분하여 비목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 당시 국민추천포상 우수사례 동영상 제작 2,000만원 및 홍보 동영상 제작 2,423만원 등 총 4,400만원의 동영상 제작 대행용역비만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제15기 국민추천포상 홍보용역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6,1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조정하고, 같은 해 7월 수여식 행사용역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7,700만원을 추가로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였음. 이에 따라 국민추천포상 운영사업에서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조정한 금액은 총 1억 3,800만원으로, 당초 일반수용비 예산액 2억 3,100만원의 약 59.7%에 해당함.

□ 이러한 세목조정은 2025회계연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님. 2021~2024회계연도에도 국민추천포상 홍보용역 및 수여식 행사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조정하는 방식이 매년 반복되었으며, 특히 홍보용역 관련 조정은 매년 연초에 이루어졌음. 이는 홍보·영상제작 및 행사대행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 예산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수요라기보다, 매년 반복되어 온 사업집행 방식임을 시사함.

[최근 5년간 국민추천포상 운영 예산의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조정일자	감액비목	증액비목	조정액	조정 사유
2021	1.21.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10	국민추천포상 홍보용역 계약
	12.3.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68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행사용역 계약
2022	2.7.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48	국민추천포상 홍보용역 계약
	8.9.	일반수용비·임차료	일반용역비	61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행사용역 계약
2023	1.16.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48	국민추천포상 홍보용역 계약
	10.10.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58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행사용역 계약
2024	1.19.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30	국민추천포상 홍보용역 계약
	9.13.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86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행사용역 계약
2025	1.8.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61	국민추천포상 홍보용역 계약
	7.23.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77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행사용역 계약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포상 수여 행사의 주재자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으로 유동적이고, 대통령 친수 또는 국무총리 전수 행사로 변경·확대될 수 있어 수여식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홍보·행사운영 예산을 일반수용비 중심으로 편성한 후, 주재자 및 행사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에 실제 용역계약 범위에 맞추어 일반용역비로 세목을 조정하여 집행해왔다고 밝히고 있음.

□ 이와 같은 설명은 포상 수여식의 주재자 및 행사 규모에 따라 행사운영의 범위와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세부 행사운영비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확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행사 주재자, 참석 규모 및 공연 구성 등의 변동에 따라 일부 세목조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행사 규모의 변동 가능성과 별개로 국민추천포상 사업에서 홍보업무 위탁, 영상제작 및 수여식 행사대행 등의 기본적인 용역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은 최근 집행실적을 통하여 확인됨. 특히 홍보용역 및 수여식 행사용역이 최근 5년간 매년 일반용역비로의 세목조정을 거쳐 추진된 점을 고려하면, 전년도 계약방식, 세목조정 내역 및 집행실적을 차년도 예산안의 비목별 편성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세목조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약방식 또는 행사규모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운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그러나 정례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수요까지 일반수용비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후 매년 일반용역비로 조정하는 방식은 비목별 예산편성이 실제 집행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계약방식 및 용역성 지출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민추천포상 운영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세목조정·계약 및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보·영상제작·행사대행의 기본 소요는 일반용역비에 우선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만 행사 주재자 및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은 실제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필요한 범위에서만 세목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탄력성과 비목별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

【참여혁신조직실】

4. 정부조직진단관리(1931-300)

○ 행정안전부는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조직진단 연구결과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낮고 연구결과서에 대한 원문 접근성이 떨어져 대외 공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간의 결과서('21～'23년분)에 대해서는 미공개되어 있음. 조직·인력 진단 결과가 정부 기구의 개편 및 인력 배치로 이어져 국가 예산 소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연구 결과서의 투명한 공개로 외부 검증을 통한 진단 품질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미공개된 결과서를 공개하는 한편, 조직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공개 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정부조직진단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정부조직 운영을 위해 체계적·상시적인 조직진단·컨설팅 및 신설 기구·인력 평가를 추진하며, 정부조직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수행하는 등 각 부처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6억 8,100만원 중 6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을 불용[18]하였음.

18) 불용 사유: 연구용역비 낙찰 차액, 민간위탁사업비 및 일반수용비 등 집행 잔액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정부조직진단관리	681	-	-	-	681	633	-	48	681
정부조직·인력 진단·컨설팅	374	-	-	-	374	360	-	14	387
조직제도·기능 발전 방안 연구	240	-	-	-	240	213		27	240
현장중심·소통기반 조직 관리 추진	26	-	-	-	26	21		5	13
행정관리 역량강화 지원	41	-	-	-	41	39	-		41

자료: 행정안전부

나. 미공개 조직진단 결과서에 대한 공개 및 정보 접근성 제고 필요

□ ‘정부조직진단관리’ 사업 내 ‘정부조직·인력진단·컨설팅’은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부처의 조직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이며[19], ‘조직제도·기능발전 방안 연구’는 정부조직의 전략적 관리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임[20].

1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32조(조직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기능의 수행체계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상호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평가할 수 있다.

2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조직진단'은 사전진단을 통해 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등 조직 관리·운영의 타당성 분석 등[21]을, '정책연구'는 정부조직의 운영체계 전반, 제도분석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서로간 차이가 있음.

□ 2025회계연도 기준, 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직진단 분야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2억 4,600만원을, 정책연구용역 분야는 정책연구비(260-02)로 2억 1,3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민간위탁[22] 방식의 조직진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23][24]된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양성평

---

21) 대규모 인력증원에 대한 사전 타당성 분석, 범부처 조직진단 등을 포함함.

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2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32조(조직진단)** ① ~ ⑥ (생 략)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조직진단 기법의 연구·개발
2. 조직·정원관리 관련 법령·제도의 조사 및 연구
3. 외국정부의 조직·정원관리 관련 동향 조사·분석
4.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 활성화 지원
5. 제4항에 따라 국민이 참여하는 조직진단 및 그 밖에 조직진단에 필요한 사항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2조제7항에 따라 조직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24) <지정경과>

등·청년정책 조직체계 효율화 진단' 등 총 5개 과제를 동 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음[25].

반면, 정책연구용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추진되는데, 2025년도에는 5건[26]의 과제를 외부 기관과 계약을 맺어 수행하였음.

□ 그러나 두 방식 간의 연구결과서 공개 및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계약 내용, 평가 결과, 활용 상황 등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27]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위탁 과제는 부처 자체 시스템인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이하, "조직관리시스템")**[28]에 공개하지 않

▸('17.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및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7.4.)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1차3년+2년) : 한국행정연구원
▸('22.4.)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2차3년+2년) : 한국행정연구원(~'27.4.)
▸('25.8.) 전문연구기관 추가 지정 : 한국조직학회,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18년~'20년까지는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행정연구원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매년 2,3건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21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21년 5억원, '22년부터는 2억 5,000만원)하여 한국행정연구원과 민간위탁 계약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계약상대자(수행기관) 선정은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25) 사전적으로 조직 인력 운영의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한 '정부인력·기능체계 효율화 사전진단'이라는 명칭 하에 매년 세부과제들이 한국행정연구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26) '자율형 조직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수행) 등 5건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기관 선정은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짐.

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https://www.prism.go.kr)

28)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www.org.go.kr)으로 국가행정조직의 인력·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관코드 발급 등 업무지원 및 대내외 조직정보를 제공함.
본 통칙 제10조의2(정부조직관리정보 시스템의 구축·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정부조직통계, 정부기구도,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그 밖에 조직 관

고 있거나 공개를 하더라도 소극적인 방식을 취하고 실정임.

□ 위탁 과제 연구결과가 등재된 조직관리시스템은 인지도가 낮고, 결과서의 원문 접근성이 떨어져 대외 공개 효과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일부 기간의 결과서('21～'23년분)에 대해서는 미공개되어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하기 전인 2018～2020년 당시에는 해당 조직관리 과제를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서를 PRISM에 정상적으로 등록·공개한 바 있으나, 2021년부터 민간위탁 비목을 신설한 이후에는 결과서 공개를 중단하였다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29]을 받고 나서야 그 후속 조치로 2024년 과제분부터 조직관리시스템에 등재하게 된 경위가 있음.

□ 이에, 조직·인력 진단 결과가 정부 기구의 개편 및 인력 배치로 이어져 국가 예산 소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연구결과서의 투명한 공개로 외부 검증을 통한 진단 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해당 기간('21～'23년분)의 결과서를 공개하는 한편, 조직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공개 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29)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정책연구용역 및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위탁 과제]

구분	정책연구용역 과제	용역비(백만원)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위탁	용역비(백만원)
2021년	책임운영기관 전략체계 컨설팅 연구(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47	비교과교사 배치기준 진단	500
	책임운영기관 전략체계 컨설팅 연구(국립소방연구원)		산업안전보건 분야 진단(Ⅰ)	
	책임운영기관 전략체계 컨설팅 연구(국립문화재연구소)		근로장려세제 집행인력 진단	
	책임운영기관 전략체계 컨설팅 연구(경찰병원)		특허심사인력 진단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컨설팅 연구(국방전산정보원)	47	복수승조원제 운영인력 진단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컨설팅 연구(국립결핵병원)		교과교사 행정업무 진단	
	-	-	현장중심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방안(Ⅱ)	
			경찰서 운영기준 진단	
			시스템기반 정부조직관리체계 구축 방안	
			지역접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유사 업무분야 인력운영 효과성 비교·분석	
			AI 등 신기술 국내외 도입 현황 조사·분석	
	소계	94	소계	500
2022년	책임운영기관 조직성과·역량 강화 방안 연구(한국정책방송원)	34	상반기 사전진단 – 조직관리시스템 분야	250
	책임운영기관 조직성과·역량 강화 방안 연구(해양경찰정비창)		행정기관위원회정비 민관합동진단 보고서	
	책임운영기관 고객관리 역량 진단지표 개선 연구	43	소방 대규모 증원 효율화 사전진단	
	-	-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찰 직급구조 개편방안	
			대규모 인력 증원 효과 분석: 경찰 분야	
			하반기 사전진단: 교원 부문	
	소계	77	소계	250

구분	정책연구용역 과제	용역비(백만원)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위탁	용역비(백만원)
2023년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Ⅰ)	107	근로 감독관 인력운영 현황진단	250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Ⅱ)	95	2023 사전진단: 특허심사 분야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Ⅲ)	91	대규모 인력효율화 사전진단: 교원 분야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Ⅳ)	98	경찰 인력규모수준 효과분석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Ⅴ)	88	2023 사전진단: 식약 심사허가 인력 분야	
	책임운영기관 조직성과·역량 강화 진단·컨설팅(국가정보자원관리원)	50	-	-
	책임운영기관 조직성과·역량 강화 진단·컨설팅(국립종자원)			
	책임운영기관 조직성과·역량 강화 진단·컨설팅(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계	529	소계	250
2024년	행정수요 영향요인 조사 및 핵심지표·데이터 분석 연구	73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협업형 조직모델 개발	250
	정부위원회 정비성과 분석 및 내실화 방안 연구	40	외국인·이민자 지원을 위한 협업형 조직모델개발	
	정부조직관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성과 관리방안 연구	59	기후위기·재난 관리체계 진단	
	성과관리형 기관 조직관리·운영체계 연구	48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체계 진단	
	-	-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체계 진단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효과 진단(질병청)	
	소계	220	소계	250
2025년	자율형 조직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42	양성평등·청년정책 조직체계 효율화 진단	250
	신종·복합재난 대응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72	정부 데이터·AI 조직체계 효율화 진단	
	AI 도입에 따른 정부조직 변화 연구	36	법무부 전자감독 분야 기능·인력 효율화 진단	
	산불재난 대응 협업형 조직 모델 개발 연구	37	국립대학 행정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 진단	
	정부위원회 시민참여 및 대표성 확대 방안 연구	25	정부조직 개편 이후 효과 진단(개보위)	
	소계	212	소계	250
총계		1,132	총계	1,500

자료: 행정안전부

5.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1932-501)

○ 행정안전부는 2회계연도('25. 5. 23.~'26. 2. 17.)에 걸쳐 진행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 구축사업의 계약금액 32억원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회계 집행임. 비록 재정당국의 지침이 계약금액의 100%까지 선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이를 다음연도 이행분까지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음. 동 사업은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므로 해당연도 집행 가능 금액 내('25년도분)에서만 선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전액을 선지급한 것은 사고이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해당연도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필요 시 사고이월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가. 개 요

□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사업은 클라우드 온나라 업무관리, 전자문서유통 및 문서24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과 대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여 업무 프로세스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의 이용을 확산하고 품질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05억 3,000만원 중 97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원을 불용[30]하였음.

30) 불용사유 : 낙찰차액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자문서소통시스템	10,530	-	-	-	10,530	9,781	-	28	13,527
온나라문서시스템 운영	1,492	-	-	-	1,492	1,492	-	2	196
클라우드온나라 문서시스템 운영	3,032	-	-	-	3,032	3,032	-	20	2,579
정부전자문서 유통센터 운영	1,287	-	-	-	1,287	1,287	-	6	103
문서24시스템 운영	549	-	-	-	549	549	-	-	1,166
AI 행정업무 적용	4,170	-	-	-	4,170	3,421	49	700	8,483

자료: 행정안전부

나. 온AI 구축 계약에 대한 전액 선금 지급의 부적정성

□ 전자문서소통시스템 중 'AI 행정업무 적용'은 AI 활용 업무 증가와 데이터 생성·활용 필요성 확대에 따라 각 부처 행정시스템에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에 업무망 기반 대화형 AI 행정지원, 클라우드 기반 업무공간, 민간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 소통·협업도구로 구성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 구축을 추진하였음.

□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온AI의 총 사업예산은 228억 7,900만원으로, 여기에는 '25년 구축 예산 41억 7,000만원과 '26년 고도화 및 이용확산 예산 187억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 사업 개괄]

□ 사업 개요

○ **(사업명)**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 구축

○ **(총 예산 및 기간)** 22,879백만원 / '25.5월 ~ '26.12월

- '25년 구축사업(4,170백만원), '26년 고도화 및 이용확산(18,709백만원)

○ **(사업내용)** 생성형 AI, 소통·협업 솔루션 등 **민간 기술**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 추진 현황 및 성과

○ **(추진 현황)** '24년ISP → '25년구축 및 시범운영 → '26년고도화 및 확산

○ **(사업 성과) 모바일 서비스 등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4개 기관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 후 '26년에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용 확대**

- (모바일 서비스) 메일, 메신저, 드라이브, 화상회의 등을 스마트폰에서 이용하여 공간 제약 없이 출장 등 이동 중에도 업무 처리 가능

- (이용확산) 이용희망 수요조사 결과, 총 47개 기관(사용자 약 16만명)을 '26년 6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용 확산

※ 1차 약 13개 기관(6월~), 2차 약 13개 기관(9월~), 3차 약 14개(11월~)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따라 2025년 온AI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연구비(260-01)에 4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구축에 32억원을, 감리에 2억 4,400만원(조달수수료 2,600만원 포함)을 각각 집행하였음.

[2025년도 온AI 계약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비목)	예산액	계약 내역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기간
AI 행정업무 용역 (일반연구비)	4,170	2025년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 구축	3,200	△△△ 컨소시엄	'25.5.23.~ '26.2.17.
		온AI 구축 감리	244	(주)□□□	'25.8.12.~ '26.2.28.

자료: 행정안전부

□ 온AI 구축사업은 당초 연내 종료('25. 3.~'25. 12.)를 목표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2회계연도('25. 5. 23.~'26. 2. 17.)**에 걸쳐 추진되었음. 그 사유는, 2024년 11월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과업 내용과 구축 기간(9개월)을 확정하였으나 재정당국에 의해 신규 사업 및 AI 관련 비용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수시배정으로 분류('24. 12.)되었기 때문이고, 이후 2025년 3월에 수시배정이 해제됨에 따라 입찰이 지연되어 계약기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온AI 구축사업은 조달청 입찰공고('25. 3. 31.~4. 29.)를 거쳐 2025년 5월 23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6일에 계약금액의 100%인 32억원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31].

31) 행정안전부는 계약금액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한 것은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함.

[온AI 구축 추진경과]

구분	추진경과
조달청 입찰공고	2025.3.31.~2025.4.29.
계약 기간	2025.5.23.~2026.2.17.
선금 지급	**2025.7.16.(계약금액 100%인 32억원)**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50호 및「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범운영	1차: 행안부, 과기부, 식약처(2025.11.26.~2026.1.31.) 2차: 기획예산처(2026.2.1.~)
과업 검사 요청	2026.2.13.
검사결과 통보 및 사업종료	2026.2.25.

자료: 행정안전부

□ 이러한 선금 지급은 2025년 1월 재정당국이 고시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32]에서 선금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100%로 확대한 조치('25년 한시적용)에 근거한 것임. 동 지침은「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33]을 근거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757호) 제34조제1항[34]에 따른 선금 지

32)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선금지급한도 확대를 포함하여 긴급입찰, 입찰보증서, 하도급대금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당국을 통해 두차례에 걸쳐 고시되었음. 동 고시(지침)는 25년 한해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1차(25.1.3.시행)과 2차(25.7.1.시행)에 걸쳐 시행됨.

33)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재부계약예규 제757호)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급 규정의 특례를 마련한 것임.

□ 그러나 2회계연도('25. 5. 23.~'26. 2. 17.)에 걸쳐 진행되는 온AI 사업에 대해 계약금액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회계집행으로 판단됨.

□ 당시 재정당국의「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이 선금 지급 한도를 100%까지 허용하였으나, 이는 다음연도 이행분까지 포함하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허용한 취지는 아닌 것임. 특례 대상이 아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재부계약예규 제757호) 제34조 제11항[35]에 따르면,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연도 집행 가능 금액 한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미지급액은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사고이월 절차를 거쳐 다음 연도에 잔여 계약분을 집행하는 것이 선금 지급 원칙에 부합한 것이고, 이에 어긋

---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2026년도에 들어와서는 정부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2026.2.)을 통해 단계적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선금을 최초 지급시 최대 70%에서 30~50%로 하고, 이행 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하였음(재경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4.1.개정).

35)**「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재부계약예규 제757호) **제34조(적용범위)**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 및 제5항 내지 제7항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⑪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게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이월 절차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음.

□ 참고로, 온AI 구축 감리 계약은 2025년 8월 12일에 체결되었는데, 본 구축비에 대한 선급 지급('25. 7. 16.)이 감리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바, 이는 원활한 계약 이행과 사업 품질을 담보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음.

[온AI 구축 감리 추진경과]

구분	추진경과
조달청 입찰공고	2025.7.3.~2025.7.30. * 2025년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위탁감리사업
계약 기간	2025.8.12.~2026.2.28.
선금 지급	2025.9.15.(계약금액 80%)
감리수행	요구정의단계감리: 2025.9.5. / 설계단계감리: 2025.11.3. 종료단계감리: 2026.2.9. / 검수지원단계감리: 2026.2.9.
과업 검사 요청	2026.2.27.
검사결과 통보 및 사업종료	2026.3.11.(잔금지급 3.19.)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2회계연도에 걸쳐 진행된 온AI 구축사업에 대한 계약금액 전액(32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은 부적정한 회계집행이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필요 시 사고이월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6.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1933-307)

○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운영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매년 특정 기관과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유사 용역 계약 추진 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또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민간의 동등한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정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명시적인 법령상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은 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창출 등을 위하여 대국민 소통 플랫폼, 혁신 박람회 개최,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을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을 설계하고 범정부적 혁신 성과를 확산하며, 불합리한 조직문화·행정제도 정비를 병행하는 등 정부혁신을 종합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 예산현액 54억 8,200만원 중 41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6,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36]하였으며 5억 3,600만원을 불용[37]하였음.

36) 이월사유: 정보시스템(혁신24, 소통24) 통폐합을 위한 HW 등 구입을 국정자원관리원에 위임발주했으나, 동 관리원의 화재('25.9.26.)로 일시 중지, 과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월됨

37) 불용사유: 일반용역 낙찰차액 및 기획단 존속기한 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등 불용액 536백만원 발생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5,492	-	△10	-	5,482	4,185	761	536	4,764
정부혁신추진 기반 구축[38]	3,054	-	213	-	3,267	2,266	629	372	2,875
정부혁신 확산·홍보	1,157	-	△213	-	944	758	132	54	1,037
정부혁신 평가·컨설팅	359	-	-	-	359	356	-	3	339
범정부협업활성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138	-	-	-	138	138	-	-	138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운영	300	-	-	-	300	288	-	12	-
지방행정혁신 역량 강화	213	-	△1.5	-	212	199	-	13	213
조직문화 개선 범정부 확산	95	-	-	-	95	94	-	1	95
2030자문단 운영	67	-	-	-	67	66	-	1	67
범정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	109	-	△8.5	-	100	20	-	80	-

자료: 행정안전부

나. 공공서비스디자인 용역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미흡

□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의 내역사업인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운영**’은 민간의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국민이 직접 행정서

38) 이·전용액 213백만원은 정보시스템(소통24, 혁신24) 통폐합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확보에 따른 것이고, 이월액 629백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동 사업의 HW구축 등을 위해 국정자원관리원에 위임발주하였고 국정자원관리원의 화재('25.9.26)로 사업이 다음연도로 연장된 데 따른 것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임.

비스를 설계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2025년도에 **일반연구비 1억 9,900만원**, 일반수용비 8,000만원 및 임차료 900만원 등 총 2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음[39].

□ 동 사업은 기존 참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전반적인 추진 체계는 행정안전부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각 기관의 과제 발굴·신청 및 선정, 추진 과정에서의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거쳐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음의 표를 살펴 보면, 먼저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사업 방향과 지원 방안을 담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 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이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신청하면 이를 심사·선정하며, 지원 과제가 선정된 후에는 기관별 국민디자인단 운영 및 행안부의 과제 컨설팅 등 지원을 받아 기관에서 최종 성과를 제출하고, 행안부가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과제 수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39) 임차료 예산액 2,000만원 중 1,100만원은 불용액임.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운영 개괄]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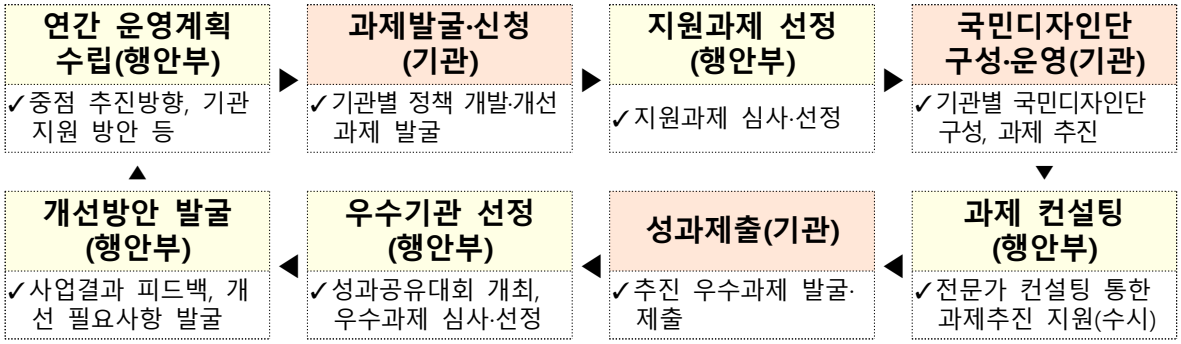
○ **(배경)** 기존 국민참여 방식(설문, 투표, 제안 등)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 반영에 한계, 새로운 방식의 국민협업 정책 모델 필요성 대두

○ **(도입)** 민간의 서비스디자인기법을 활용, 국민·행정기관이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토록 공공서비스디자인 도입(2014년)

○ **(내용)** 정부 정책 개발 全 과정에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 디자이너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국민의 수요를 관찰·분석하여 혁신적 정책을 개발하는 국민 협업 정책 개발 방식

※ (추진근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 추진체계 및 절차



※ 국민디자인단 :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 주체, 정책수요자(5~11명), 공무원(2~3명), 서비스디자이너(1~2명)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

<참고> 연도별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 추진 현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과제수(개)	31	248	382	273	229	203	125	173	117	119	82	76	2,058
참여자수(명)	310	1,706	4,240	2,857	2,467	2,478	1,831	2,050	1,380	1,578	958	918	22,773

*행안부는 2024년부터 과제수 감소 사유가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미지급에 따른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위 과제 운영에 대한 용역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면서, 매년 특정 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통상부 산하 기타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해[40] 왔는바, 정작 해당 수의계약의 적법한 법령상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용역 수의계약 현황]

연도	예산비목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2021	일반연구비 (260-01)	국민정책디자인 사업 운영 및 과제 지원체계 구축	3억 3,000만원	2021.3.23.~ 2021.12.10.
2022		국민정책디자인 사업 운영 및 과제 지원체계 구축	3억 3,000만원	2022.4.5.~ 2022.12.9.
2023		국민정책디자인 사업 운영 및 과제 지원체계 구축	3억 3,000만원	2023.5.16.~ 2023.12.31.
2024		국민정책디자인 사업 운영 및 과제 지원체계 구축	1억 9,700만원	2024.5.10.~ 2024.12.15.
2025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운영 및 과제 지원체계 구축	1억 9,900만원	2025.2.21.~ 2025.12.15.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동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1]에 따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40) 행안부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수행기관은 과제 발굴·신청 단계부터 용역을 수행하는 구조임.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의 수의계약(이하 "법정위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산업디자인진흥법」[42]에 명시된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사업 범위 중 하나인 '정부의 위촉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수의계약의 근거로 제시된 「산업디자인진흥법」상 '정부의 위촉사업'[43]은 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업무 영역(수권 규정)임을 고려할 때, 2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의계약의 예외 요건인 법정위탁으로 간주한 것은 규정을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음.

□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적법한 '법정위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권한을 위탁하는 개별 법령에 '(예시)○○ 업무를 A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

---

4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③ (생 략)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3) 참고로, 통상적으로 '위촉'은 외부 인사를 특정 직책에 임명하는 개념이므로, 법인(기관)에게 사업을 맡기는 '위탁'과는 구분됨. 드물게도 「산업디자인진흥법」상 '위촉사업'이라는 용어는 1977년 법 제정 당시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므로 정비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불필요한 해석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도 추후 관련 법령 등의 보강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정 근거가 존재해야 함. 예컨대, 「산업디자인진흥법」[44]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변경신고 처리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적법한 법정위탁의 입법례[45]에 해당함.

□ 따라서 본 공공서비스디자인 용역은 명시적인 법정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46]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47]의 원칙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야 했음[48].

---

4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45) 그외에도, 법정위탁은 다수 입법례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 도로교통법 제147조제5항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4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8) 설령 법정위탁 해당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국가계약법」상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제를 특정 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기술력이 요구되거나, 타 기관이 수행할 경우 명백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입증되어야 할 것임.

□ 향후 행정안전부는 유사 용역 계약 추진 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또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민간에게도 동등한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정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명시적인 법령상 위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공지능정부실】

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2031-505)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본예산의 약 50%인 42억 1,900만원을 재난대책비로 이용하였음에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약 69.1%에 그치고,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약 36%에 그치는바, 행정안전부는 추후 동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회 구성일정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추진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45억 2,500만원 중 31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9,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운영지원	8,684	60	△4,219 49)	-	4,525	3,128	-	1,397	-

49) 이용사유: 호우피해를 위한 재난대비책 부족재원 마련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03. ~ 2022. 05.)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TF를 구성하여 운영을 추진한 이후, 국정과제에 반영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22년 9월에 출범하였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범정부 디지털 전환 정책의 총괄·조정과 주요 정책 심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위원회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협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이행 점검 및 정책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하였으며, 동 사업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연구용역비, 업무추진비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였음.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 11월 4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이 공포·시행되면서 공식 폐지되었음.

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관리 필요

□ 동 세부사업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당초 ‘하나의 정부(부처 간 장벽 해소 및 클라우드 전환)’, ‘똑똑한 나의 정부(국민 체감형 통합창구 및 첨부서류 제로화)’ 등을 비롯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통해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4대 중점 추진과제]

4대 중점 추진과제	주요내용
1. 하나의 정부	○ 부처·기관별로 분절된 데이터와 행정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소관 기관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통합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똑똑한 나의 정부	○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개개인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집행을 지원함.
3.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 공공데이터와 디지털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민간의 기술·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하는 민관 협력 생태계를 조성함.
4.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DPG 구현	○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자신의 정보 활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2025년 11월 4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폐지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폐

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4대 중점 추진과제는 완료되지 못한 채 일부는 추진 대상이 축소되고, 일부는 타 부처로 이관되었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폐지 진행 경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폐지 진행 절차	시 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폐지령안 입법계획 보고	2025.10.17.
↓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폐지령안 관계기관 협의	2025.10.17. ~ 10.22.
↓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2025.10.21. ~ 10.22.
↓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폐지령안 사전영향평가 요청	2025.10.17. ~ 10.22.
↓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폐지령안 법제처 심사	2025.10.25.
↓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폐지령안 국무회의 상정	2025.10.28.
↓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폐지령 관보게재 및 공포	2025.11.4.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폐지로 동 세부사업의 지원 대상인 위원회 및 추진단이 부재하게 되어 전체회의 개최 등 관련 활동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동 세부사업 예산 중 42억 1,900만원을 2025년 11월 19일 재난대책비로 이용하고, 집행잔액 13억 9,700만원은 불용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제1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임기가 2022년 9월부터 발촉하여 2024년 8월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 절차가 지연되면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 사업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후 2025년 11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 후 남은 위원회 운영경비를 불용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1기 위원의 임기가 2024년 8월 종료되었음에도 제2기 위원회 구성이 2025년까지 지연되어 관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였고, 특히 2025년 11월까지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인 42억 1,900만원이 미집행된 채 재난대책비로 이용된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구성 일정과 연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이용 사유]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5. 11.19.)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2031-505)	210-01	1,214	재난대책비 (보조) (2734-300)	330-03	호우피해를 위한 재난대비책 부족재원 마련
		210-14	1,605			
		260-01	1,000			
		420-03	400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제1기 위원의 임기가 2024년 8월 종료된 이후에도 2025년 3월 제7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된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그 이전까지는 제1기 위원 등을 활용하여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당초 사업계획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었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경과]

회차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제1차 전체회의	2022. 9. 2.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민간위원 18인 위촉. 디지털플랫폼정부 4대 중점 추진과제(① 혁신 인프라 구현, ② 데이터 전면 개방·활용, ③ AI·데이터 기반 정부혁신, ④ 안전한 이용환경 보장)를 보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 및 계획을 논의
제2차 전체회의	2022. 12. 15.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안)을 심의하고, 각 부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체계를 점검. 향후 실현계획 수립 방향과 추진전략을 논의
제3차 전체회의	2023. 4. 14.	○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개최. 공장 간편 인허가, 구비서류 제로화, 혜택알리미 등 핵심 서비스를 소개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대국민 보고
제4차 전체회의	2023. 9. 20.	○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 방안,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체계 구축 등 주요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를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을 점검
제5차 전체회의	2024. 4. 17.	○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선제적·맞춤형 정부혜택 통합지원 서비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국가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방안을 보고받음
제6차 전체회의	2024. 7. 16.	○ 범정부 디지털 트윈 코리아 전략과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 추진방안을 심의·의결.

회차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디지털트윈 생태계 조성, 국민안전 서비스 확대, AI 기반 지능형 통합관제 추진 등을 논의
제7차 전체회의	2025. 3. 4. ~ 3. 7.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결과를 보고받음. 추진전략으로 ① 따뜻한 디지털행정, ② 정부효율성 제고, ③ GovAX 기반 조성, ④ 디플정 지속성 확보를 제시

자료: 행정안전부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한 위원회를 운영 시 위원회 구성 일정과 사업 추진계획을 보다 면밀히 연계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 운영 여건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계획을 적시에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8.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2036-500, 정보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하여 약 320억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약 138억원에 그쳤고, 그 중 공사비로 배정된 약 145억원의 대부분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으며, 동 세부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약 364억원으로 화재피해복구를 위하여 배정된 예비비보다 과다하여 예산의 이·전용을 통하여 충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비 배정 단계에서 사업내용과 소요액 및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청사관리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의 이·전용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는 과거 집행실적과 월별 공공요금 고지액 등을 바탕으로 연간 소요액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산정하여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및 국가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며,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3,079억 2,600만원 중 2,714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166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8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	272,149	3,755	△19	32,041	307,926	271,441	16,666	19,819	313,426
정보자원 유지관리	179,872	0	△7,659	0	172,213	168,188	0	4,025	231,947
정보보호 강화	12,231	1,095	2,759	0	16,085	10,338	5,598	149	11,445
공통인프라 운영강화	2,997	0	△130	0	2,867	2,829	0	38	6,704
기반시설 등 강화	11,994	2,660	0	0	14,654	10,767	3,058	829	15,587
공공요금 및 임차료	38,427	0	0	0	38,427	38,123	0	304	27,515
청사관리 및 기관운영비	18,466	0	908	0	19,374	17,760	611	1,003	16,364
백업센터 운영관리	3,549	0	3	0	3,552	2,953	0	599	3,864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4,613	0	0	0	4,613	4,543	0	70	0
화재피해복구	0	0	4,100	32,041	36,141	15,941	7,399	12,801	0

나. 화재 피해 복구 예비비의 사업계획 및 집행관리 개선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화재피해복구’ 사업은 2025년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등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전용 및 예비비 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361억 4,100만원 중 159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73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8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화재피해복구’ 사업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목	세목	세사업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
210	14	전산실 및 사무실 클리닝	1,000	국가전산망 복구 지원 (2025.10.22.)
210	15	시스템 복구지원 용역	6,250	
420	03	기반인프라 복구	14,460	
430	01	사무실 집기류 구입	100	
210	02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	6,122	정보시스템 복구 및 이전 지원(2025.11.17.)
260	01	민간클라우드 전환 지원	3,861	
430	01	민간클라우드 전환 지원	248	
합 계			32,041	

자료: 행정안전부

□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발생 이후 같은 해 10월 예비비를 배정받아 정보시스템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전력간선, 냉각탑 및 배터리 반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를 11월까지 우선 추진하여 2025년 12월 30일 모든 시스템의 복구를 완료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의 복구를 완료하였으나, 냉각탑 복구공사, 건물 창호 및 외벽 수리, 제8전산실 추가 전원공사 등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해당 사업을 위하여 배정된 예비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었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외적인 재원으로서[50], 회계연도 중 긴급한 재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51].

□ '화재피해복구' 사업에 배정된 예비비 320억 4,100만원 중 화재로 전소된 건물 등의 복구를 위한 공사비는 144억 6,000만원이나, 해

---

50)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51)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당 공사비는 59억 2,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91억 3,600만원이 불용처리됨에 따라 예비비는 집행되지 않았고, 실제 복구공사는 사실상 이·전용을 통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집행되었음.

['화재피해복구' 사업 예산집행 세부 실적]

(단위: 백만원)

세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화재피해복구	0	0	4,100	32,041	36,141	15,941	7,399	12,801	0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0	0	0	6,122	6,122	4,773	1,115	234	-
- 일반용역비 (210-14)	0	0	0	1,000	1,000	987	0	13	-
- 관리용역비 (210-15)	0	0	0	6,250	6,250	4,963	0	1,287	-
- 일반연구비 (260-01)	0	0	0	3,861	3,861	1,676	120	2,065	-
-공사비 (420-03)	0	0	3,900	14,460	18,360	3,305	5,920	9,136	-
-감리비 (420-04)	0	0	200	0	200	139	59	2	-
-자산취득비 (420-04)	0	0	0	348	348	98	185	65	-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화재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배정받았고, 정보시스템 복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복구하였으나, 화재 피해 전산실 복구공사의 선행절차인 내부 전산장비 반출이 경찰 현장조사 및 화재피해 내역조사 등으로 지연되었고, 이후 기반시설 공사에도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관

련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임.

[불용처리 및 이월된 예비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집행	불용	이월
예비비 공사비	1. 제8전산실 정상화	3,000	144	2,856	0
	2. 냉각탑 복구공사	1,420	260	1,160	0
	3. DCC 판넬 복구공사	240	44	194	0
	4. 건물 창호, 외벽수리 (구조진단 포함)	6,760	518	1,710	4,532
	5. 소방설비 복구공사	840	216	624	0
	6. 제8전산실 추가 전원공사	2,200	154	1,093	953
	합 계	14,460	1,336	7,637	5,485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경찰 현장조사와 화재 피해조사 등의 절차 및 화재 피해 건물의 복구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은 예비비 배정 당시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예비비를 배정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의결 및 재정통제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집행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현황]

구분	피해 내용
발생 일시	2025년 9월 26일 20시 15분경
발생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발화 지점	제7-1전산실 내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작업 구역

구분	피해 내용
인명 피해	경상 1명
전산실 피해	제7-1전산실 전소, 7전산실 열·분진 피해
전산장비 피해	서버, 스토리지, 통신장비 등 2,177대
배터리 피해	리튬이온 배터리 528모듈 전소
기반시설 피해	냉각탑 및 전원케이블 손상
기타 설비 피해	다수 구역의 항온항습기 및 전자접촉기 손상
전체 장애 시스템	대전본원 운영 정보시스템 709개 서비스 중단

자료: 행정안전부

□ 예비비는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52]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금액은 지출 전에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외적인 재원이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집행한 후 차기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 구조[53]인 만큼 국회의

52)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3)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 심의·의결권을 고려할 때, 일반 세출예산보다 배정 필요성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예비비 배정 단계에서 사업별 추진일정과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비비를 배정·집행함으로써 예비비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사관리 및 기관운영비’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및 광주·대구센터의 청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와 경비·미화 등 인력 운영 및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93억 7,400만원 중 177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청사관리 및 기관운영비’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목은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1억 6,800만원을 이·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최근 3년간 편성된 공공요금 및 실제 지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A)	이·전용 등(B)	예산현액(A+B)	지출액
2023년	29,271	2,508	31,779	31,519
2024년	33,352	2,832	36,184	36,091
2025년	34,310	6,290	40,600	38,978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같은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이·전용은 매 회계연도 반복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공공요금 부족분을 이·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공공요금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자체전용 ('23.10.27.)	범정부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구축 (2036-503)	436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 (2036-500)	공공요금 부족 재원 마련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2036-507)	758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신축 (2042-500)	1,314		
세목조정 ('24.1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정보화) (2036-500)	2,83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036-500)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부족분 지원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낙찰차액 활용
세목조정 ('25.12.2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정보화) (2036-500)	187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036-500)	공공요금 예산 부족분 확보

자료: 행정안전부

□ 이는 공공요금 소요액을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매년 이·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임.

□ 행정안전부는 당초 예산에 반영된 공공요금이 실제 소요액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고,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비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목조정 및 이·전용 등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임.

□ 그러나, 공공요금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경비로서

과거 집행실적과 요금 변동 추이 등을 토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상당 부분 그 소요액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은 공공요금의 실제 소요액이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이·전용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을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인바[54], 동일한 사업에서 최근 수년간 반복적

---

54)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으로 전용 및 세목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미흡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 및 계획적인 재정운용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도별 집행실적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변동 추이, 시설별 사용량 및 추가 소요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소요액을 예산편성 단계에 충실히 반영하고, 연중 집행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반복적인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2040-501, 정보화)

○ 행정안전부는 내역사업인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서 시스템 통합에 따른 개인정보 결합·공유의 보안상 위험이 사전에 확인되어 통폐합 예외사유에 해당하였음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인 7,200만원을 불용한바, 이는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향후에는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운영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제고하며,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49억 9,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4,998	-	-	-	4,998	4,998 [4,819]	-	-	4,998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환경개선	800				800	800 [693]			2,004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4,188				4,188	4,188 [4,116]			4,188
스마트워크 활성화 지원	10				10	10 [10]			10

나. 시스템 통합 사업 추진계획의 사전 검토 강화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은 전국 스마트워크센터의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원격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스마트워크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41억 8,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한 정보시스템 통합 관련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하였음.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출연금 세부 집행내역]

집행내역	집행액	실집행액
센터 운영관리비	○ 3,006백만원(18개소×167백) ○ 센터 1개소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 인건비 : 102백만원 - 공과금네트워크 : 40백만원 - 비품·청소·일반관리비 등 : 25백만원	○ 3,006백만원
센터 임대료 및 공통관리비	○ 828백만원(10개 센터) - 분당 : 78백만원 - 잠실 : 145백만원 - 서울역 : 135백만원 - 서울역2 : 100백만원 - 강남 : 95백만원 - 수서 : 85백만원 - 서초 : 8백만원 - 오송역 : 20백만원 - 용산 : 135백만원	○ 828백만원

집행내역	집행액	실집행액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 354백만원 - 응용SW : 59백만원 - HW : 168백만원 - 상용 SW : 55백만원 - 정보시스템 통폐합: 72백만원	○ 282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통폐합의 경우 당초 모바일공무원증(2등급) 시스템과 스마트워크센터(4등급) 시스템 간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관계자 검토 결과 두 시스템이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이 상이하고, 개인정보를 결합·공유하는 과정에서 제3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구조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폐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지 않았음.

□ 행정안전부는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시스템은 스마트워크센터 시설의 출입관리 및 운영과 직접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의 연속성이 요구되고, 모바일공무원증 시스템과 통합할 경우 개인정보 유형이 상이한 두 시스템 간 개인정보 결합·공유에 따른 구조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보시스템 통폐합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단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편성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통합 관련 실무검토회의

('24.9.10.) 결과 해당 시스템이 통폐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이후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서 변경 제출('24.9.23.) 및 통폐합 예외 인정('24.11.3.)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 단계에서 시스템 통합의 추진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관련 예산을 조정할 수 있었음.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시스템 통폐합 추진 경과]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시스템 통폐합 추진 경과	시 기
2024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계획 제출	2024.05.17.
↓	↓
정보시스템 통합 관련 실무검토회의	2024.09.10.
↓	↓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서 변경 제출	2024.09.23.
↓	↓
통폐합 예외 인정	2024.11.0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2024년 5월 17일 '2024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계획'을 제출한 이후 통폐합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검토 결과가 있었고, 통폐합 계획 변경 절차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이전 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

을 편성·유지한 결과 전액 불용이 발생한 것은 사업 추진계획과 예산편성 간 연계 및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통합 사업의 추진에 앞서 통폐합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 및 집행관리에 적시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0.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2046-502, 정보화)

○ 내역사업인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과업 종료일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5억 5,5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관리 및 사업의 분리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한 것인바, 향후에는 사업 추진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사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정보화)' 사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55] 및 「전자정부법」[56]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구

---

5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능정보사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계획,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지능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의 지원 및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 및 지능정보화의 지원
5.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술의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관리·유통·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8.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11.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한 사업
12.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축·개방을 확대하고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과 기업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출연 및 위탁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416억 3,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공공데이터개방및	41,634	-	-	-	41,634	41,634	-	-	40,662

⑤ 지능정보사회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능정보사회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능정보사회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원은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개발원의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이용활성화지원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	1,640	-	-	-	1,640	1,640 [1,640]	-	-	1,692
차세대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	5,120	-	-	-	5,120	5,120 [4,820]	-	-	-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26,410	-	-	-	26,410	26,410 [24,188]	-	-	30,506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6,316	-	-	-	6,316	6,316 [6,316]	-	-	6,316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1,268	-	-	-	1,268	1,268 [1,268]	-	-	1,268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지원	880	-	-	-	880	880 [880]	-	-	880

나. 사업 추진일정 및 추진방식 개선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사업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개방 가능성 점검 및 개선, 민·관 협업 기반 데이터 및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264억 1,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실집행의 경우에는 241억 8,800만원에 해당함.

□ 동 내역사업은 ‘공공데이터 개방 가능성 점검 및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및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사업 목적 및 추진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과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내내역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내내역사업	수행방식 (기관)	예산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사업	공공데이터 개방 가능성 점검 및 개선	출연 (NIA)	○ 공공데이터 개방 가능성 점검 및 개선 : 9,744 ○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 8,568 ○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 5,310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공공데이터 제공확대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		민간위탁 (KLID)	○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 2,788

자료: 행정안전부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과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은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개방과제를 발굴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관별로 보유한 기초자료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정제·가공 및 표준화한 후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는 등 사업 목적과 추진방식이 유사함.

다만, 원자료를 보유한 대상기관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인 반면,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57].

□ 원자료를 보유한 대상기관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여 추진하고 있고,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비교]

구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설립 목적	국가 정보화 촉진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시스템 개발·운영 지원

57)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2025. 10., 48쪽.

구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주요 역할	국가 차원의 ICT/AI 정책 수립 지원 및 선도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및 지역정보화 전담 관리·운영
핵심 사업	- 국가 디지털 전환(DX) 및 AI/데이터 기반 구축 - 초고속 정보통신망, 초거대 AI 데이터 구축 - 디지털 포용 및 정보격차 해소 정책 지원	- 지방행정공통시스템(새올, 시도/시군구 행정) 운영 -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전산망 유지·관리 - 지자체 정보보안(지역SIRT) 및 정보화 역량 강화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음.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3,622	23,622	23,622	-	23,622	21,955	-	1,667	92.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788	2,788	2,788	-	2,788	2,233	555	-	80.1

자료: 행정안전부

□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 2025년 7

월 이후에 이루어지고 계약 체결 또한 같은 해 9월에 완료되는 등 사업 추진일정이 당초부터 지연되어 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의 상당 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세부 추진 일정]

사업명	① 사업계획 수립일	②발주의뢰일	③ 계 약 일
1. 소방대상물 시설정보데이터 개방	2025.4.30.	2025.5.22.	2025.7.10.
2. 전국 업종별 인허가정보 및 생활편의 정보 통합 개방체계 구축		2025.5.26.	2025.7.17.
3.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소 운영정보 데이터 개방		2025.5.26.	2025.7.15.
4. 스마트팜 온실환경 및 작물생장 연구 데이터 개방		2025.6.2.	2025.7.15.
5. 한국 아동 패널,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데이터 제공 서비스		2025.6.12.	2025.7.30.
6. 아동·청소년·청년 조사 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		2025.5.28.	2025.7.22.
7. 특수교량 안전 및 계측데이터 개방		2025.5.26.	2025.7.16.
8. 아이돌봄 지원사업 데이터 제공 서비스		2025.5.29.	2025.7.22.
9.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체계 구축(2차)		2025.5.22.	2025.7.11.
10. 비수도권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2025.5.26.	2025.7.15.
11. 농산물 유통정보 확대 제공		2025.5.23.	2025.7.17.
12. 해양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기초데이터 개방		2025.5.22.	2025.7.17.
13. 실시간 일사량 및 홍반자외선 예측지수 제공 서비스		2025.5.29.	2025.7.22

사업명	① 사업계획 수립일	②발주의뢰일	③ 계 약 일
14.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제공 서비스		2025.5.26.	2025.7.17.
15. 청소년활동사업정보 제공 및 자격인증 진위확인 서비스		2025.5.23.	2025.7.17.
16. 울산항 선박 운항 및 항만시설 정보 개방체계 구축		2025.5.29.	2025.7.31.

자료: 행정안전부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 세부 추진 일정]

사업명	① 기본계획 수립일	② 발주의뢰일	③ 계약일
1. 2025년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2025. 7. 15.	2025. 7. 15.	2025. 9. 1.
2.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025. 7. 24.	2025. 7. 30.	2025. 9. 3.
3. 2025년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감리용역	2025. 8. 12.	2025. 8. 12.	2025. 9. 17.

자료: 행정안전부

[전국 통합 데이터와 국가중점데이터 사업 간 비교]

구분	전국 통합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
목적	공공데이터 활용성 증대 및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개방 관리로 민간서비스 창출 도모	개방·활용 시 국가 차원의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 데이터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추진 절차	수요조사(국민, 기업 등) ↓ 의견수렴(기업, 전문가 대상) ↓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및 개방과제 선정 ↓ 사업추진(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업무데이터 현황 분석 및 연계방식 협의 ↓ 자치단체 연계 에이전트 설치 ↓ 전국데이터개방시스템(기관관리) 등록 ↓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 전국 통합 데이터 이용(국민, 기업 등)	수요조사(국민, 기업 등) ↓ 타당성 심의위원회 검토(전문위원) ↓ 후보과제 확정 ↓ 사업추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개방 참여기관 수집 ↓ 개방 참여기관 측 시스템 직접연계 수행 ↓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 국가중점데이터 이용(국민, 기업 등

구분	전국 통합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
제공 형태	파일(확장자 csv, XML 등 오픈포맷) 또는 오픈API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 체결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은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 수요를 반영한 개방과제 선정, 데이터의 표준화·가공 및 오픈API 제공 등 사업 목적과 추진절차 및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녀 별도의 내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추진체계로 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사업을 2개 기관에서 분리하여 추진함에 따라 사업관리비용이 중복적으로 소요되고 있음.

□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지연되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58]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58)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이 회계연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일정 및 집행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사업 목적, 추진절차 및 제공방식이 유사한 두 사업의 분리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조정 등을 통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자치혁신실】

11. 국민통합위원회 운영(1145-300)

○ 2025년 정책연구용역은 5건 모두 9월 이후에 착수되었고, 전임 위원장이 재임한 상반기에는 착수 실적이 없었음. 정권교체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기초·상시 연구과제는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과제 수요조사, 연간 발주계획 수립 및 계약 준비를 회계연도 초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연구용역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정책연구용역 5건 중 4건의 계약 종료일이 12월 19일로 집중되었고, 일부 과제는 54일 또는 39일의 단기계약으로 체결되는 과정에서 연구계획상 기간, 실제 계약기간, 투입인력, 보고일정 및 계약금액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연구용역 발주 시 과업량·계약기간·연구인력·보고일정 및 계약금액을 상호 연계하여 설계하고, 연말 종료일에 맞추어 연구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의 회의체 운영, 정책연구 및 행사·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관한 국가전략 수립, 사회갈등의 예방·해결 및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59)]

---

59)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
3.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5.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6. 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7.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수렴 및 소통 활성화
8.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의 제정·개정 및 폐지
9.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75억 1,300만원 중 43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9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집행률은 57.3%임.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7,513	7,513	-	-	-	7,513	4,304	-	3,209	6,115
국민통합위원회 운영비	5,137	5,137				5,137	2,781		2,536	3,739
국민통합위원회 사업비	2,376	2,376				2,376	1,523	-	853	2,376

나. 정책연구용역 사업관리 미흡 및 집행부진

□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 사회갈등의 예방·해결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임.[60] 정책연구용역은 국민통합 관련 현안을 조사·분석하고 위원회의 자문 및 정책제안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사업수단에 해당함.

□ 2025회계연도 정책연구비는 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2억 4,400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61.0%에 그쳤음. 이는 2023회계연도와 2024회계연도의 정책연구비 집행률이 각각 80% 이상, 90%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임.

□ 정책연구용역 추진 건수도 2023년 14건, 2024년 10건에서 2025년 5건으로 감소하였음. 특히 2025년에는 상반기 착수 실적이 없고, 5건 모두 9월 이후에 착수되어 연구용역의 기획·발주 및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60)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
3.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5.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6. 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7.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수렴 및 소통 활성화
8.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의 제정·개정 및 폐지
9.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예산집행내역 및 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건수 (착수 시기)	차년도 완료
2023년	580	24	604	500	85	19	14건 (상반기 9건, 하반기 5건)	3건
2024년	440	85	525	519	-	6	10건 (상반기 2건, 하반기 8건)	3건
2025년	**400**	**-**	**400**	**244**	**-**	**156**	**5건 (상반기 0건, 하반기 5건)**	**1건**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최근 3개년 정책연구용역의 착수 시기를 비교하면, 2023년에는 14건 중 9건이 상반기에 착수되었고, 2024년에도 10건 중 2건이 상반기에 착수되었음. 반면 2025년에는 상반기 착수 실적이 전무하였는바, 과제 수요조사, 연구계획 수립, 정책연구심의, 발주 및 계약 준비 등 발주 전 단계의 업무가 적시에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궐위 및 정권교체 과정, 전임 위원장 임기 종료와 신임 위원장 취임 사이의 공백,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기존 과제 마무리 등을 정책연구용역 추진 지연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 이후 국민통합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중점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 이러한 사정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된 신규 연구과제를 조

정·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배경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국민통합 관련 사회갈등 분석, 국민통합 지표·제도 연구, 국내외 통합정책 동향 분석 등은 정권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상시 연구과제로 볼 여지가 있음.

□ 실제 2025년도에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국민통합위원회 5대 사회갈등 관련 주요 이슈 및 데이터 분석」,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숙의 전략 연구」, 「헌법적 실용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 방안」, 「국민통합 실질화 종합계획 수립방향에 관한 정책연구」, 「해외 세대, 젠더 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상당수는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과제 발굴, 기초조사 및 발주 준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갈등 및 국민통합 관련 중장기 연구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도	연구 주제	사업기간	계약금액
2023년 (14건)	근로자의 건강상 위험 추정 및 현행 근로자 안전 보장 제도의 적절성 평가	03-06~05-31	50,000
	국내 이주배경인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04-10~06-30	30,000
	정치지역분과 '정치진영갈등 해소 과제' 운영 지원	04-25~06-31	50,000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05-10~08-31	36,000
	청년의 로컬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05-08~06-30	25,000
	지표와 데이터로본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현황과 추세분석 연구	05-11~12-31	50,000
	지역사회 갈등 현황 연구를 통한 시도 지역협의회 운영효과 제고방안 수립	05-15~08-31	30,000
	국내외 국민통합 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	06-08~09-30	27,000
	국민통합위원회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한 이슈 연구	06-14~09-07	50,000
	4차 산업혁명 관련 갈등완화 및 국민통합 방안	10-31~12-31	48,000
	국민통합정책 평가방안 연구	11-01~12-31	30,000
	가족구조 변화와 청년 1인가구 지원방안	11-13~24-02-13	30,000

(단위: 천원)

연도	연구 주제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만노인시대 대비 정책연구	11-17~24-02-29	50,000
	이주민 자치참여 제도 발전방안	11-22~24-02-20	55,000
2024년 (10건)	북배경주민 정착지원 발전방안	03-04~06-02	35,000
	불법도박 대응 및 거버넌스 정책방안	04-15~07-11	30,000
	지표와 데이터로 본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분석	07-16~12-31	62,363
	지역활력 제고 방안	09-11~12-10	45,000
	지자체의 기본수당 설치 현황 및 개선방안	09-26~12-31	34,545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적 지역주의 극복 방안	09-27~12-31	45,454
	일자리 격차 및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조사	10-24~12-31	48,048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11-21~25-02-28	40,000
	도시 기후불평등 대응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11-29~25-02-16	49,000
	2040 가족, 노동역할 태도와 실태 연구(양성공감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방안)	11-22~25-03-17	45,000
2025년 (5건)	국민통합위원회 5대 사회갈등 관련 주요 이슈 및 데이터 분석	09-11~12-19	40,000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숙의 전략 연구	09-19~12-19	37,990
	헌법적 실용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 방안	10-27~12-19	45,000
	국민통합 실질화 종합계획 수립방향에 관한 정책연구	10-29~'26-02-13	63,000
	해외 세대, 젠더 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11-11~12-19	58,000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2025년 6월 중순까지 전임 위원장이 재임하고 있었음에도 정책연구용역 착수 실적이 전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장 공석이나 국정과제 확정 지연만으로 정책연구용역 집행부진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려움.

□ 정책연구용역은 외부 연구기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위원회 회의체 운영에 비해 위원장 공석이나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사무조직인 국민통합지원단이 과제 발굴, 발주 준비 및 연구집행 관리를 통하여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함.

□ 그럼에도 2025년에는 연간 연구계획에 따른 단계적 발주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하반기에 연구용역이 집중 발주됨에 따라 일부 과제의 연구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이는 정책연구용역의 연간 추진계획 및 일정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중앙관서의 장이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연구과제의 중복 여부 및 연구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음.

□ 아울러 동 지침은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연말에 사업예산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연도 내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단기간에 발주·종결하도록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과제의 필요성·긴급성, 충분한 연구수행 기간 및 예산 집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연구성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위원회는 정권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상시 연구과제와, 국정과제 또는 위원회 운영방향 확정 이후 추진할 신규 연구과제를 구분하여 연간 연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제 수요조사, 연구과제

선정, 정책연구심의, 발주 및 계약 준비를 회계연도 초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연구용역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기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의 발주·계약·착수·중간보고·최종보고 현황 및 집행률을 점검하고, 발주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제의 긴급성, 연구기간의 적정성 및 법정 이월 요건 충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연말의 단기 연구용역 발주를 방지하고, 정책연구용역이 위원회의 정책형성 및 자문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정책연구용역 계약기간 및 과업조건의 정합성 미흡

□ 정책연구용역은 위원회의 정책형성 및 자문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과업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연구기간, 투입인력, 보고일정 및 계약금액이 상호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특히 연구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과업범위·연구인력·인건비 및 보고일정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 2025년 추진된 정책연구용역 5건 중 4건은 계약 종료일이 12월 19일로 동일함. 이 중 9월에 착수한 2건은 3개월 이상의 연구기간이 부여된 반면, 10월 및 11월에 착수한 2건은 각각 54일 및 39일의 단기간 내에 연구를 완료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었음.

[2025회계연도 정책연구용역 추진 내역]

(단위: 천원)

연구 주제	사업기간	계약금액
국민통합위원회 5대 사회갈등 관련 주요 이슈 및 데이터 분석	09-11~12-19	40,000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숙의 전략 연구	09-19~12-19	37,990
헌법적 실용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 방안	10-27~12-19	45,000
국민통합 실질화 종합계획 수립방향에 관한 정책연구	10-29~'26-02-13	63,000
해외 세대, 젠더 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11-11~12-19	58,000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연구주제의 전문성, 과업범위 및 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계약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구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적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약 3개월의 연구기간이 부여된 일부 과제의 계약금액이 3,799만 원 및 4,000만 원인 반면, 연구기간이 54일 또는 39일에 불과한 과제의 계약금액은 각각 4,500만 원 및 5,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연구기간 단축에 따라 과업량·인력투입계획 및 계약금액이 어떠한 기준으로 조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1) 「헌법적 실용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 방안」 연구용역

□ 「헌법적 실용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 방안」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계획(안)에는 연구기간을 3개월로, 과업지시서 및 수의계약사유서에는 4개월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실제 계약서상 사업기간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54일에 불과하였음.

□ 동 연구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일반경쟁 입찰의 유찰 또는 계약절차 지연에 따라 연구기간이 단축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 또한 연구계획상 과업범위는 계약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당초 3개월을 전제로 편성된 5,000만 원의 예산은 4,500만 원으로 10% 감액된 반면, 실제 사업기간은 54일로 단축되었음.

□ 계약체결 당시 제출된 산출내역서에는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5명 및 연구보조원 1명이 3개월간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인건비가 산정

되어 있음. 반면 결과보고서에는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자 4명 및 연구보조원 1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산출내역서와 결과보고서 간 연구인력 구성에도 차이가 확인됨.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세부산출내역서 상 인건비 항목]

(단위: 원)

비목		금액	산출내역
인건비		25,398,680	
	가. 책임연구원	5,558,850	7,411,808원 × **1명 × 3개월** × 25%
	나. 연구원	17,902,310	5,683,276원 × **5명 × 3개월** × 21%
	다. 연구보조원	1,937,520	3,799,078원 × **1명 × 3개월** × 17%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이처럼 과업범위는 유지된 반면 연구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단축되었고, 산출내역서상 인력투입계획과 결과보고서상 연구인력 구성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계약금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0% 감액되는 데 그쳐, 사업기간 단축에 상응하여 과업량·투입인력 및 계약금액이 정합적으로 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만일 54일의 연구기간만으로 당초 계획된 과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면, 당초 3개월의 사업기간과 5,000만 원의 예산을 전제로 한 과업·예산 산정이 과다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반대로 당초 과업을 54일 내에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웠다면, 연구기간 단축은 현황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검토의 충실성을 저해하여 연구결과의 완성도를 낮출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동 연구용역은 연말 종료일에 맞추어 연구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과업범위, 연구기간, 연구인력 및 계약금액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음.

(2) 「해외 세대·젠더 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연구용역

□ 「해외 세대·젠더 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연구용역은 2025년 10월 22일 입찰공고 후 11월 3일 개찰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고, 계약서상 사업기간은 11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39일로 설정되었음.

□ 그런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된 제안요청서에는 계약 후 2개월 내외의 중간보고 1회, 월 1회 이상의 수시보고 및 계약 만료 10일 전까지의 최종보고를 요구하고 있음. 실제 계약기간이 약 1.3개월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후 2개월 내외의 중간보고 요건은 계약기간 내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음.

□ 또한 동 연구용역은 1.2개월간의 연구인력 투입을 전제로 산출내역서가 작성되었음에도 계약금액은 5,800만 원으로, 약 3개월의 연구기간이 부여된 일부 과제의 계약금액을 상회함. 해외 사례 조사 등 연구주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단기간의 연구수행을 전제로 한 과업량·인력투입계획 및 계약금액 간 대응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세부산출내역서 상 인건비 항목]

(단위: 원)

비목		금액	산출내역
인건비		43,098,000	
	가. 책임연구원	5,336,502	3,705,904원(50%) × **1명 × 1.2개월** × 60%
	나. 연구원	28,643,711	2,841,638원(50%) × **6명 × 1.2개월** × 70%
	다. 연구보조원	6,382,451	1,899,539원(50%) × **2명 × 1.2개월** × 70%
		2,735,336	1,899,539원(50%) × **1명 × 1.2개월** × 60%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입찰공고일, 개찰일, 수의계약 전환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입찰공고 단계에서 이미 제안요청서상 과업조건을 계약기간 내 이행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음. 이는 발주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일정, 보고일정 및 연구범위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임.

(3) 결 어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연말에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연도 내 집행을 위해 연구기간을 단축하도록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연구과제의 필요성·긴급성 및 충분한 연구수행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통합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 과업량·계약기간·연구인력·보고일정 및 계약금액 간 정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연말 종료일에 맞추어 연구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방식의 계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12.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1131-319)

○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이 주민의 다양한 직접참여제도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주민조례청구·주민투표청구·주민감사청구만 제공하고 있는 ‘주민청구’ 서비스에 주민소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 제·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등과도 연계하여 주민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민생각’ 서비스는 2024년 2월 서비스 개시 이후 등록된 208건의 설문 중 일반시민이 작성한 설문이 38건(18.2%)에 불과하고, 일반시민 설문도 참여자 비율이 대상지역 인구의 0~0.4% 수준에 그치는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사업은 온라인을 통한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및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수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e직접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6,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	69	-	-	-	69	69	-	-	69
주민e직접 플랫폼 유지관리	69	-	-	-	69	69	-	-	69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 실시와 1995년 최초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확대되어 왔으며,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2000년), 주민투표제(2004년), 주민소환제(2007년) 등 주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음.

아울러 최근에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바탕으로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61].

이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또는 숙의민주주의 제도는 대의민주주의

61) 숙의민주주의의 사례로는 서울특별시의 「상상대로 서울 플랫폼」, 경기도의 도민참여단·숙의공론조사,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등을 들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2026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Representative Democracy)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음.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통치구조로서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기능하고 있으나, 선출된 대표자가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정치제도 및 대표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정치참여가 위축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또한 대의민주주의는 다수결에 따른 선호집합적 민주주의(Aggregative Democracy)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시민 간 토론과 숙의를 통한 공적 의사형성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음[62].

□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사업은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지역 현안에 대한 공론형성과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정책 형성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음.

62) 「지역 시민의회 도입의 논거와 민주적 정당성」,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방의회 미래전환을 위한 제3차포럼 주제문, 2026.

[주민e직접 플랫폼 사업추진 경과]

연도	추진경과
2018	- BPR/ISP 수행(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마련)
2020	- 사업예산 확보
2021	-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전자서명 등)
2022	- 주민감사청구 기능 추가 구축
2023	-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구축(온라인 의견수렴, 모바일 청구)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플랫폼 홈페이지]



※ 자료: 주민e직접 홈페이지(www.juminegov.go.kr),

구체적으로 주민e직접 플랫폼은 ①주민청구 서비스와 ②주민생각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①주민청구 서비스는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주민의 전자청구·서명 기능을 제공하고, ②주민생각 서비스는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조사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나. 주민참여제도를 고려한 '주민청구' 서비스 확대 필요

□ 그러나 주민e직접 플랫폼의 '주민청구 서비스'는 주민의 직접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보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민직접참여제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주민청구 서비스는 ①주민조례청구, ②주민투표청구 및 ③주민감사청구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소환제도[63]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 제정·개폐 의견제출[64] 및 주민참여예산[65] 등 일부 주민참여제도[66]는 플랫폼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주민 직접 참여제도 청구 및 제안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주민e직접 포함	조례청구	31	45	64	21	16
	주민투표	2	1	-	3	3
	감사청구	4	2	1	33	31
주민e직접 미포함	주민소환	9	-	11	9	6
	규칙 제정·개폐 의견제출	-	5	4	2	9

※ 자료: 행정안전부

63)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64) **「지방자치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65)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6) 법령상 주민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①주민투표(제18조), ②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제19조), ③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제20조), ④감사청구(제21조), ⑤주민소환(제25조)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⑥주민참여예산제도(제39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⑦주민자치회(제40조)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⑧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있음

□ 특히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은 서면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임[67].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주민소환 청구 및 서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전자서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68],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 주민소환 청구 및 서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참고로, 2022. 12. 1. 행정안전위원회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전자서명의 근거 등을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대안을 의결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23. 2. 22.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시 법무부가 추진 중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상호주의 원칙 인정 여부에 대한 이견[69]으로 인해 의결되지 못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능 역시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무의 정보화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규칙 제정·재정·폐지 의견

67) 주민이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종이로 된 청구인서명부를 교부받아 해당 서명부에 주민의 서명을 수기로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68)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면을 통한 서명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서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69) 제21대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3.02.22.) 회의록

제출 사례가 적어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의견 제출 사례가 적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기능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주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제 의견 제출 사례를 증가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에도 별도의 정보시스템(주민e참여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어 주민 입장에서 주민참여제도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괄적 이용을 위하여 주민e참여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70],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서비스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70)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p.199-207, 2024.11.

[주민참여수단별 온라인 참여방법]

주민참여 수단	온라인 참여방법	근거법령
주민투표	주민e직접 플랫폼	-「지방자치법」 제18조 -「주민투표법」
조례개폐 청구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감사 청구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e참여 플랫폼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칙개폐 의견제출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자치회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 (※ 지자체별로 운영방식 상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
주민자치위원회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 (※ 지자체별로 운영방식 상이)	- 개별 지자체 조례
주민소환	-	-「지방자치법」 제25조 -「주민소환법」

※ 참고로,「주민투표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시행령」(제14조)에서는 주민투표·조례개폐 청구·주민감사 청구 시 전자서명 이용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자료: 행정안전부

□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주민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별로 분산된 시스템을 운영하기보다는 하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현재 주민e직접 플랫폼은 일부 주민참여제도만을 지원하고 있어 주민직접참여형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소환제도 등 현재 플랫폼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정보시스템 연계 또는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유사 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주민생각 서비스의 주민 참여 확대 필요

□ 한편, 주민e직접 플랫폼의 ‘주민생각 서비스’를 통한 주민 간 숙의 과정은 행정안전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의 참여건수도 저조한 상황으로 주민이 숙의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우선, ‘주민생각 서비스’의 이용주체를 보면 2024년 2월 28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26년 5월 31일까지 총 208건의 설문이 등록되었는데, 이 중 38건(약 18.2%)만이 일반 시민에 의해 작성되었고, 나머지 170건(약 81.8%)은 행정안전부가 주민e직접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서비스 이용경험, 서비스의 편의성 등) 또는 이벤트 운영 등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설문작성 주체를 구분하여 설문유형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설문은 플랫폼 이용자 설문조사, 정책·사업 관련 국민심사 및 각종 홍보·참여 이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일반 시민이 작성한 설문은 주민 의견·정책 관련 설문이나 주민총회·마을사업 관련 주민투표 등으로 나타남.

[주민생각 서비스 설문작성자별 이용현황]

설문작성자	설문유형	설문건수	평균참여자
행정안전부	플랫폼 이용자 설문조사	34	68.1
	정책·사업관련 국민심사	17	357.8

	홍보·참여이벤트	119	91.0
	합 계	170	113.1
일반시민	주민의견·정책관련 설문	15	64.3
	주민총회·마을사업관련 주민투표	20	32.4
	교육·행사 관련 설문	3	3.0
	합 계	38	42.7
총 계		208	100.2

※ 자료: 주민e직접 홈페이지(https://www.juminegov.go.kr)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주민생각 서비스가 당초 의도한 주민 주도의 정책 제안 및 숙의 기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주민생각 서비스 이용현황]

연번	대상지역 및 설문명	설문기간	설문작성자
1	[17개 시·도] 주민e직접플랫폼 이용자 온라인 설문조사	'24.5.27.~'24.5.31.	행정안전부
2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의시설 설치 방안	'24.9.5.~'24.9.8.	박00
3	[17개 시·도] 주민생각 서비스 활용사례 어워드 및 퀴즈이벤트	'24.10.11.~'24.11.11.	행정안전부
4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주거환경에서 삶의 질을 올려주는 요소는?	'24.10.14~'24.12.31.	이00
5	[부산진구] 부산시 e스포츠 경기장 시민 활용 방안	'24.10.15.~'24.11.15.	조00

6	[칠곡군 석적읍] 우리동네, 우리 이야기	’24.10.16.～’25.3.31.	조00
7	[예천군 호명읍] 경북도서관을 활요한 예천군 지역주민 자치 프로그램 기획안	’24.10.20.～’24.10.31.	김00
8	[청주시] 청주문화탐험! 당신의 여가 취향은?	’24.10.21.～’24.11.8.	지00
9	[17개 시·도] 2024년 우수 적극조례 대상 선정을 위한 국민심사	’24.10.22.～’24.11.1.	행정안전부
10	[장수군] 장수군 기후 변화가 사과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24.11.4.～’24.12.6.	정00
11	[부산진구] 관광객의 부산진구의 특성화거리 재방문을 위한 개선방안	’24.11.4.～’24.11.30.	윤00
12	[파주시] 신규 광역소각장에 대한 파주시민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24.11.5.～’25.5.3.	김00
13	[수원시] 수원 화성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	’24.11.6.～’24.12.6.	정00
14	[수원시] 수원시 체육시설 이용 실태 및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4.11.8.～’24.12.6.	유00
15	[노원구]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에 관한 설문	’24.11.9.～’24.11.30.	유00
16	[장수군] 장수군 문화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24.11.12.～’24.12.9.	정00
17	[광주시 도척면] 진우1리 새마을회 21일 임시총회 개최건	’24.12.9.～’24.12.21.	오00
18	[17개 시·도] 주민e직접 플랫폼 e게 뭐지?! 퀴즈 이벤트	’25.4.7.～’25.5.18.	행정안전부
19	[화성시] 공적활동의 공개/비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5.4.8.～’25.6.30.	권00
20	[광주 서구 풍암동]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 설문조사	’25.4.7.～’25.5.18.	오00
21	[광주 서구 풍암동]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 설문조사	’25.4.24～’25.4.24	오00
22	[17개 시·도] 25년 주민e직접 플랫폼 이용자 온라인 설문조사	’25.6.9.～’25.6.18.	행정안전부

23	[17개 시·도] 주민e직접 플랫폼 연상퀴즈 이벤트	’25.6.16～’25.7.20.	행정안전부
24	[광주서구화정4동] 2025 화정4동 주민총회 의제투표	’25.7.1.～’25.7.23.	유00
25	[화성시] 아이와 마을이 함께 자라는 돌봄공간, 우리 동네에 생기면 어떨까요? 동탄 9동 재난공원 내 유휴시설 초등돌봄교실 활용에 관한 투표	’25.7.1.～’25.8.15.	김00
26	[춘천시] 2025 약사명동 온라인 주민총회	’25.7.19.～’25.8.1.	이00
27	[춘천시] 효자1동 2026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	’25.8.4～’25.8.7.	김00
28	[춘천시] 춘천시 후평2동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투표	’25.8.6.～’25.8.20.	박00
29	[춘천시] 행복마을 후평3동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 투표	’25.8.8.～’25.8.22.	김00
30	[춘천시] 2026년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25.8.11.～’25.8.20.	박00
31	[춘천시] 후평1동 마을사업 주민총회 온라인·오프라인 주민투표	’25.8.12～’25.8.19.	최00
32	[춘천시] 춘천시 교동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투표	’25.8.11～’25.8.21.	최00
33	[춘천시] 서면 2026년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25.8.11～’25.8.21.	최00
34	[춘천시] 춘천시 교동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투표	’25.8.14～’25.8.21.	최00
35	[춘천시 신북읍] 2026년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25.8.18～’25.9.6.	황00
36	[춘천시] 효자2동 2026년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25.8.18～’25.8.31.	장00
37	[춘천시] 동내면 2026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	’25.08.21～ ’25.08.25	김00
38	[춘천시 신사우동]	’25.08.25 ～ ’25.08.31	신00

	주민이 발굴하고 계획한 2026년 우리동네 마을사업 주민 투표		
39	2026년 춘천시 근화동 주민자치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25.08.25 ~ '25.08.27	박00
40	[17개 시·도] 주민e직접 플랫폼 빈칸 맞히기 이벤트	'25.8.26~'25.9.30.	행정안전부
41	[춘천시] 조운동 2026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	'25.8.28~'25.9.3.	이00
42	[춘천시] 2026년 퇴계동네 계속되는 동네 발전을 위한 주민주도 마을 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 투표를 진행합니다.	'25.8.29~25.9.6	이00
43	[춘천시] 춘천시 북산면 26년 행복한 우리동네를 위한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25.8.29~25.9.5	이00
44	[춘천시] 춘천시 강남동 2026년 주민주도 마을사업을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	'25.8.29~25.9.3	박00
45	[17개 시·도] 주민e직접 플랫폼 주민청구 탐구영역 퀴즈 이벤트	'25.10.24~'25.11.28.	행정안전부
46	[인천광역시 서구] 2026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서구' 명칭 관련 주민의견 조사	'26.1.13~'26.4.30.	박00
47	[17개 시·도] 보고!풀고! 퀴즈이벤트	'26.2.24~'26.3.31.	행정안전부
48	[17개 시·도] 주민e직접 플랫폼 보고! 풀고! 퀴즈이벤트	'26.5.11~'26.5.31.	행정안전부

※ 음영표시된 설문은 일반 시민에 의해 작성된 것임.
※ 자료: 주민e직접 홈페이지(https://www.juminegov.go.kr)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일반 시민이 작성한 설문 38건을 기초지자체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국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4개 기초지자체에서만 설문이 작성되어 지역별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춘천시에서 작성된 설문이 18건으로 전체의 47.4%를 차지

하는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일반 시민이 작성한 설문의 참여자 비율(참여자 수/대상지역 인구 × 100) 또한 0~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생각 서비스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일반시민 제안 설문 참여현황]

연번	대상지역 및 설문명	참여자	대상지역 인구	참여비율 (%)
1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의시설 설치 방안	337	163,071	0.2
2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주거환경에서 삶의 질을 올려주는 요소는?	1	18,161	0.005
3	[부산진구] 부산시 e스포츠 경기장 시민 활용 방안	1	365,104	0.0002
4	[칠곡군 석적읍] 우리동네, 우리 이야기	2	29,083	0.006
5	[예천군 호명읍] 경북도서관을 활요한 예천군 지역주민 자치 프로그램 기획안	0	20,974	0
6	[청주시] 청주문화탐험! 당신의 여가 취향은?	8	859,441	0.0009
7	[장수군] 장수군 기후 변화가 사과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1	21,144	0.004
8	[부산진구] 관광객의 부산진구의 특성화거리 재방문을 위한 개선방안	1	365,104	0.0002
9	[파주시] 신규 광역소각장에 대한 파주시민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33	532,124	0.006
10	[수원시] 수원 화성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	15	1,186,120	0.001
11	[수원시] 수원시 체육시설 이용 실태 및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5	1,186,120	0.0004
12	[노원구]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에 관한 설문	1	481,589	0.0002

13	[장수군] 장수군 문화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0	21,144	0
14	[광주시 도척면] 진우1리 새마을회 21일 임시총회 개최건	4	8,952	0.04
15	[화성시] 공적활동의 공개/비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7	997,713	0.0007
16	[광주 서구 풍암동]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 설문조사	0	32,794	0
17	[광주 서구 풍암동]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 설문조사	2	32,794	0.006
18	[광주서구화정4동] 2025 화정4동 주민총회 의제투표	82	18,804	0.4
19	[화성시] 아이와 마을이 함께 자라는 돌봄공간, 우리 동네에 생기면 어떨까요? 동탄 9동 재난공원 내 유휴시설 초등돌봄교실 활용에 관한 투표	67	997,713	0.006
20	[춘천시] 2025 약사명동 온라인 주민총회	40	285,160	0.014
21	[춘천시] 효자1동 2026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	44	285,160	0.015
22	[춘천시] 춘천시 후평2동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투표	20	285,160	0.007
23	[춘천시] 행복마을 후평3동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 투표	58	285,160	0.02
24	[춘천시] 2026년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100	285,160	0.03
25	[춘천시] 후평1동 마을사업 주민총회 온라인·오프라인 주민투표	23	285,160	0.008
26	[춘천시] 춘천시 교동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투표	7	285,160	0.002
27	[춘천시] 서면 2026년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64	285,160	0.02
28	[춘천시] 춘천시 교동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투표	8	285,160	0.02
29	[춘천시 신북읍] 2026년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30	6,787	0.4
30	[춘천시] 효자2동 2026년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7	285,160	0.002
31	[춘천시] 동내면 2026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	42	285,160	0.014

32	[춘천시 신사우동] 주민이 발굴하고 계획한 2026년 우리동네 마을사업 주민 투표	8	24,990	0.03
33	[춘천시] 2026년 춘천시 근화동 주민자치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4	285,160	0.001
34	[춘천시] 조운동 2026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	10	285,160	0.003
35	[춘천시] 2026년 퇴계동네 계속되는 동네 발전을 위한 주민주도 마을 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 투표를 진행합니다.	10	285,160	0.003
36	[춘천시] 춘천시 북산면 26년 행복한 우리동네를 위한 주민주도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5	285,160	0.001
37	[춘천시] 춘천시 강남동 2026년 주민주도 마을사업을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	18	285,160	0.006
38	[인천광역시 서구] 2026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서구' 명칭 관련 주민 의견 조사	556	660,464	0.08

※ 자료: 주민e직접 홈페이지(https://www.juminegov.go.kr)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생각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며, 서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생각 서비스가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13.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1132-300)

○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비 89억 6,900만원 중 14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 재배정 예산의 집행률도 65.2~95.9%로 편차가 크므로, 향후 선거기간 및 과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소요액을 면밀히 산정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재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기 구축된 사무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 1억 7,500만원을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였다가 회계연도 개시 직후 관리용역비로 전용하였는바, 향후 사업의 성격과 지출 목적에 맞는 비목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사업은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06억 7,700만원 중 88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1,524	184	±227	8,969	10,677	8,823	-	1,855	1,818
공직선거추진	525	-	-	8,969	9,494	7,751	-	1,743	989
주민참여제도 확대 및 공정한 관리지원	55	-	-	-	55	33	-	**2**	-

	지방의회 역량강화	76	-	-	-	76	56	-	20	68
	중앙지방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추진	828	184	-	-	1,012	949	-	**63**	743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활성화 추진	20	-	-	-	20	18	-	**2**	-
	법령적합성 자치법규	20	-	-	-	20	16	-	4	18

나. 공직선거 예비비 편성 및 재배정의 적정성 제고 필요

□ ‘공직선거추진’ 사업의 예비비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9억 6,900만원 중 일용임금 13억 4,800만원, 일반수용비 33억 1,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9,800만원, 특근매식비 22억 900만원, 임차료 7,000만원, 국내여비 7억 9,000만원, 사업추진비 5억 3,500만원, 고용부담금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편성된 예비비 중 불용액은 일용임금에서 2억 1,60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1억 7,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억 4,500만원, 특근매식비에서 5억 3,000만원, 임차료에서 1,600만원, 국내여비에서 3억 300만원, 사업추진비에서 5,000만원, 고용부담금에서 200만원이 발생하였음.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목	예비비	집행액	불용액	불용 사유
일용임금	1,348	1,132	216	-지자체 재배정 예산 불용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일반수용비	3,317	3,146	171	-지자체 재배정 예산 불용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공공요금 및 제세	698	553	145	-지자체 재배정 예산 불용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특근매식비	2,209	1,679	530	-지자체 재배정 예산 불용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임차료	70	54	16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국내여비	790	487	303	-지자체 재배정 예산 불용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사업추진비	535	485	50	-지자체 재배정 예산 불용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세목	예비비	집행액	불용액	불용 사유
고용부담금	2	-	2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합계	8,969	7,536	1,433	

※ 자료: 행정안전부

□ 동 내역사업은 행정안전부 몫과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각각 나누어 편성·집행되며, 행정안전부 몫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몫은 지방자치단체에 재배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한 다음 행정안전부에 정산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행정안전부 몫으로는 5억 6,700만원 중 1억 8,200만원이 불용되어 32.1%의 불용률을 보이며, 지방자치단체 몫은 84억 200만원 중 12억 5,100만원이 불용되어 14.9%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예산이 상당 부분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실제 사업에 필요한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공직선거추진’ 사업 예산 편성·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편성액	567	8,402
집행액	385	7,151
불용액	182	1,251
불용률	32.1%	14.9%
집행방식	▸ 예산과목에 따라 집행	▸ 행정안전부 → 시·도로 재배정 ▸ 시·도 → 시·군·구로 재재배정 ▸ 시·군·구 → 읍·면·동 배분 - 읍면동에서 예산과목에 따라 집행

※자료: 행정안전부

□ 예비비 편성금액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예비비 편성 시 인력·경비 소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탄핵결정에 따른 조기 선거로 일반적인 대통령선거에 비해 선거관리 기간이 짧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에 따른 선거관리 기간의 단축은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관리 기간(선거실시 사유 발생 후 최대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전제로 예비비를 산정하는 등 실제 소요액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1대 대통령선거 예비비 요구안 일부]

(단위: 천원)

비목	내역	산출근거
일용임금	선거상황실 행정실무원 기본급 및 수당	21,965 x 4개월
특근매식비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물품	3,000 x 3개월
일반수용비	상황실 전산장비 등 임차	5,000 x 3개월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선거기간, 과거 선거 집행실적, 지역별 선거 규모 및 집행수요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소요액을 추계하고, 이를 예비비 편성 규모에 반영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6. 3. 대통령선거 관련 시·도별 재배정 예산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별 집행률이 65.2~95.9%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선거인 수, 면적, 선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선거 경비의 지자체별 재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배분기준이나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재배정 예산의 적정한 배분 및 집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71]

71)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재배정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등 위탁선거의 경우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의거 비용을 산정하고 집행에 활용하고 있음.

[6. 3. 대통령선거 시·도별 재배정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시.도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서울	1,189	1,091	98	91.8
부산	510	476	34	93.3
대구	361	333	28	92.2
인천	408	340	68	83.2
광주	222	208	14	93.6
대전	207	184	23	89.0
울산	153	144	9	94.3
세종	54	45	9	83.7
경기	1,723	1,530	193	88.8
강원	394	257	137	65.2
충북	337	245	92	72.8
충남	444	314	130	70.7
전북	462	443	19	95.9
전남	552	427	125	77.4
경북	635	508	127	80.0
경남	649	526	123	80.9
제주	102	80	22	78.8
계	8,402	7,151	1,251	85.1

※자료: 행정안전부

다.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제고 필요

□ 내역사업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추진’ 사업(예산액 8억 2,800만원)은 국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및 실질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회의 개최 및 운영(3,200만원), ②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발간(1,000만원), ③사전협의 지침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800만원), ④지방이양 관련 간담회 등(4,000만원), ⑤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5,000만원), ⑥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이양 방안 연구(6억 8,800만원)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추진 사업 편성내역]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추진: (’25) 828백만원

- 이양완료 사무의 재정·조직·인력 등 객관적인 실제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이양사무관리시스템 內 이양 성과 등 체계적 사후관리 환경 구축 필요

○내내역사업 예산편성 내역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회의 개최 및 운영 : 32백(전년동)

- 〔산출근거〕 자문 수당(대면): 200천원 × 5명 × 12회(月/1회)= 12,000천원
  자문 수당(서면): 100천원 × 5명 × 12회(月/1회)= 6,000천원
  자문단 전체회의 수당: 200천원 x 15명 x 2회(반기별)= 6,000천원
  전체회의 자문단 여비: 100천원 × 15명 × 2회(반기별)= 3,000천원
  전체회의 참석 여비: 100천원 x 5명 x 2회(반기별)= 1,000천원
  사전협의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4,000천원 × 1회 = 4,000천원

▸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 발간 : 10백(전년동)

- 〔산출근거〕 지침 제작: 20천원 × 500부 × 1회 = 10,000천원
  ※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입법가이드로 지침 발간(중앙-지방 배포 및 교육)

▸ 사전협의 지침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 8백(전년동)

• 〔산출근거〕 안내문·홍보물 제작: 1,000천원 × 1회 = 1,000천원
소모성 물품 구입비: 500천원 × 1회 = 500천원
행사장·장비 등 임차: 3,000천원 × 1회 = 3,000천원
행사진행 여비: 100천원 × 5명 × 1회 = 500천원
전문가 회의 및 자문 등 운영비: 30천원 × 50명 = 1,500천원
참석자 수당: 200천원 × 5명 × 1회 = 1,000천원
참석자 여비: 100천원 × 5명 × 1회 = 500천원
※ 중앙-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전협의제 지침 설명 및 제도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의견수렴

▸ **지방이양 관련 간담회 등 : 40백(전년동)**
• 〔산출근거〕 자료인쇄: 10천원 × 100부 × 4회 = 4,000천원
안내문·홍보물 제작: 1,000천원 × 4회 = 4,000천원
소모성 물품 구입비: 760천원 × 5회 = 3,800천원
행사장·장비 등 임차: 3,500천원 × 4회 = 14,000천원
행사진행 여비: 100천원 × 10명 × 4회 = 4,000천원
전문가 회의 및 자문 등 운영비: 30천원 × 139명 = 4,170천원
회의 참석 수당: 200천원 × 5명 × 4회 = 4,000천원
회의 참석 여비: 100천원 × 5명 × 4회 = 2,000천원
※ 지방 이양사무 발굴 관련 중앙-지방 간 협력 도모, 미래지향적 지방이양 추진 및 국가-자치단체간 기능재정립 방향 설정을 위한 중앙-지방-전문가 간담회 추진

▸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50백(전년동)**
• 〔산출근거〕 연구용역: 50,000천원 × 1회 = 50,000천원
※ 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적합한 사무를 발굴하고, 자치단체의 권한 증대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이양 방안 연구 : 688백('24 대비 △556백, ↓44.7%)**
• 〔산출근거〕 ① 지방이양 사무 실태조사 및 분석: 120,000천원 × 1회 = 120,000천원
- 지난 20년간 추진된 지방이양 사무* 관련 현황자료 조사, 실태분석, 역대정부별·주요 분야별 BP 사례 발굴·분석 및 성과 우수사례집 발간
② 지방이양 관련 연구: 80,000천원 × 1회 = 80,000천원
- 이양사무의 성과평가를 위한 효과성 분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이양 필요사무 발굴
③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75,000천원(시스템운영관리)+313,000천원(2차 구축) = 488,000천원**
- '24년 지방이양사무관리시스템 1차 구축 후 서비스 오픈에 따른 시스템 운영관리 및 추가 기능 개발*을 위한 2차년도 구축
* 지방이양 완료사무의 성과평가를 통해 필요시 권한 회수 등 국가-자치단체간 기능 재조정을 위한 지방이양 완료사무의 이력관리 및 성과 평가 필요
→ 지방이양 이력관리를 위한 재정·조직·인력 추이 관리 및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별 성과 누적관리 기능 구현
- 지방이양사무시스템 운영관리: 9.7MM x 18,042천원 = 175,000천원

※ 자료: 행정안전부

□ 내내역 사업인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이양 방안 연구'는 ① 지방이양 사무 실태조사 분석 사업, ②지방이양 관련 연구 사업, ③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방이양 사무의 관리 및 성과평가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지방이양 완료사무의 이력관리 및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한 '지방이양 사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기능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24년에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5년과 2026년에는 이양사무에 대한 데이터 기반 비용평가 모형 구축 등 시스템운영 안정화 및 발전단계로 추진하려는 계획임.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

【 2024년 사업 :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단계】

○ **법령상 사무배분* 현황 DB 구축 및 대국민 정보 제공**

* 국가사무(직접수행, 기관위임 등), 시·도사무, 시·군·구사무(전체, 특례시, 50만이상)

○ **사무이양 추진상황의 단계적 관리* 및 상시적 의견수렴창구 개설**

*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부처 협의, 법령 제·개정 추진 등 단계별 추진상황 공개

○ **이양완료 사무 효과 분석 등 체계적 사후관리 지원***

* 이양완료 사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유사·연계 사무 추가 이양, 이양효과 분석

【 2025년 ~ 2026년 사업 : 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발전 단계 】

○ **이양사무에 대한 데이터기반 비용평가 모형* 구축**

* 그간 비용산정 연구용역(전수, 표본) 및 1·2차 지방일괄이양사무 자료를 토대로 빅데이터 구성, 이양사무 비용 산정 시 신뢰성 있는 유사사무 추천 알고리즘 구현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에는 총 10억 4,400만원(시스템 개발비 7억 9,400만원 및 SW구입비 2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25

회계연도에는 ①데이터기반 비용평가 모형 등의 구축을 위한 비용 3억 1,300만원과 ②기 구축된 사무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 1억 7,500만원이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되었음.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4년(1차)	'25년(2차)	'26년(3차)
사업명		사무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평가 모형 구축	유사사무 추천 알고리즘 적용(AI)
구축비 (백만원)	요구액	1,044	313	298
	국정자원*	350	0	0
	소계	1,394	313	298
유지관리비		-	-	108
위탁운영비		-	175	14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 편성분 : H/W 예산 286백 + 시스템 S/W 예산 64백 = 350백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일반연구비(260-01)는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비목으로, 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은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관리용역비(210-15)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일반연구비(260-01) 및 관리용역비(210-15) 집행지침]

6-1. 일반연구비(260-01목)

□ 적용범위

○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

우의 용역
-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임상연구용역 :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 기타 연구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 관련 제반 용역

1-13. 관리용역비(210-15목)

□ **적용범위**

○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반면, 관리용역비(210-15목)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 자료: 기획예산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 비목 편성 과정 상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2025년 1월 22일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된 1억 7,500만원을 관리용역비(210-15)로 자체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음[72].

72) 참고로, 일반연구비(260-01)와 관리용역비(210-15)는 동일한 물건비(200) 비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음.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구 분	목 (25개)		자체전용대상	자체전용제외(기획예산처 협의)
200 (물건비)	210	(운영비)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타 비목에서 230목, 240목, 250-03목(특정업무경비), 210-12목(복리후생비)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 주요사업비 내 210-08목(유류비)에서 타 비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220	(여비)		
	230	(특수활동비)		
	240	(업무추진비)		
	250	(직무수행경비)		
	260	(연구용역비)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1. 사업개요

○ 의뢰부서: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지원과

○ 사 업 비: 1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013-1100-1132-300-260-01(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일반연구비)

○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 계약방법: 조달청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사업내용: 지방이양사무관리시스템의 운영 안정성 강화 등

2. 감사자 조치의견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한도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을 준수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일반연구비는 Data입력, SW개발의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3. 조치내용(불채택시는 그 사유)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완료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음

○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수하여 평가 시 특정업체에 유리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25.1월 중 관리용역비(210-15)로 비목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하겠음

※ 자료: 행정안전부

□ 일반적으로 신규 시스템 구축은 정보시스템의 개발·고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유지관리 사업은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 목적과 성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예산 편성 시에도 비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사전에 산정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인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내용과 소요경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정보화사업은 구축 단계와 운영 단계의 비용 구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운영비용을 시스템구축사업비에 포함하여 편성한 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이를 전용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실제 사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더욱이 해당 사안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당시부터 운영비용의 발생이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성격과 지출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한 예산비목을 편성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 구축비와 운영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단계별 소요예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산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4.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1131-300)

○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지원금을 전액 교부하여 집행률이 100%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지자체의 실집행률은 창원시 83.8%, 청주시 86.7%에 그치고 집행잔액 및 이월액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사업 추진상황과 실집행률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하고, 특히 지원이 종료된 창원시의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사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73]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74]인 경상남도 창원시와 충청북도 청주시에 보통교부세와 별도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시·군·구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05억 7,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7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53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59조제4호 및 제61조제3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시범실시한다.

③ 제53조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1년에는 100분의 6, 2022년에는 100분의 5, 2023년에는 100분의 4, 2024년에는 100분의 2, 2025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④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5년에는 100분의 6, 2026년에는 100분의 5, 2027년에는 100분의 4, 2028년에는 100분의 2, 2029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7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10,575	-	-	-	10,575	10,575	-	-	7,795
청원사자율 통합지원금	1,222	-	-	-	1,222	1,222	-	-	-
청주사자율 통합지원금	9,353	-	-	-	9,353	9,353	-	-	7,795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의 반복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로 하여금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액과는 별도로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 창원시는 2020년, 청주시는 2024년에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 창원시 및 청주시에 대한 지원이 각각 5년간 연장되었으며, 연장된 기간 동안 1년 차에는 폐지된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 2년 차에는 100분의 5, 3년 차에는 100분의 4, 4년 차에는 100분의 2, 5년 차에는 100분의 1의 차등적인 비율로 지원금이 교부됨.

□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 50%는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국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75],

이에 따라 창원시에 대해서는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3억 3,2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22년 61억

7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53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1,000만원, 2023년 48억 8,800만원, 2024년 24억 4,400만원, 2025년 12억 2,200만원이 각각 지급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지원이 종료됨.

또한, 청주시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93억 5,3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26년에는 77억 9,500만원, 2027년에는 62억 3,600만원, 2028년에는 31억 1,800만원, 2029년에는 15억 5,9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임.

[지자체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통합지원금 지원 규모]

(단위: 백만원)

	'11~'20	'21	'22	'23	'24	'25	총 계
창원시	73,320	7,332	6,110	4,888	2,444	1,222	95,316
	'15~'24	'25	'26	'27	'28	'29	총 계
청주시	93,530	9,353	7,795	6,236	3,118	1,559	121,591

※자료: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은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비목으로 창원시와 청주시에 직접 교부되고 있어 행정안전부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2025년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창원시의 실집행률은 약 83.8%, 청주시의 실집행률은 약 86.7%로 나타나고 있음.

[2025회계연도 자율통합지원금 실집행 내역]

(단위:백만원)

지자체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예산 현액	집행액 (B)			
창원시	1,222	10	1,232	1,034	1,222	1,024	198	-	83.8
청주시	9,353	3	9,356	8,109	9,353	8,106	1,247	-	86.7

※자료: 행정안전부

□ 이 중 창원시의 구체적인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총 이월액 1억 9,800만원 중 사고이월된 금액이 1억 4,080만원이며, 사업 집행잔액을 이월한 금액이 약 5,720만원임.

또한, 청주시의 경우 총 이월액 12억 4,700만원 중 명시이월된 금액이 1억 2,680만이고, 계속비에 따른 이월액이 6억 2,380만원이며, 집행잔액을 이월한 금액이 4억 9,640만원임[76].

76)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5년도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이월사유 및 이월액]

(단위: 원)

사업명	이월 사유	이월액
양덕초등학교 앞 육교 난간 교체공사	사고이월	40,800,000
상동인도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100,000,000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어린이 테마체험존 조성	집행잔액	2,651,000
웅동초 주변 도시계획도로(소로3-256호선) 개설사업		1,910,070
진해청소년전당 시설 환경 리모델링		5,008,090
여좌남로 다목적 CCTV 설치		2,659,950
드림파크 내 가로등 설치 및 노후 시설물 정비		4,535,870
경화동 도로정비공사		3,093,220
마천동 29번지 일원 도로 확포장		3,398,460
장복산 등산로 정비사업		2,314,170
경화역 외 1개소 정비공사		2,733,300
이동레포츠공원 정비사업		1,820,310
동마산시장 아케이드 보수 사업		5,550,510
합성2동 게이트볼장 시설정비사업		1,491,360
석전주민운동장 관중석 데크설치공사		3,723,600
구암동 741번지 일원 보도정비 공사		5,719,550
뒷등저수지 배수로 정비공사		1,919,000
지귀로 일원 보도블럭 교체공사		8,080,440
동읍 용잠리 농로 확장 및 주차장 설치 공사		116,740
귀산동 노후 화장실 교체		594,061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청주시 자율통합지원금 이월사유 및 이월액]

(단위: 원)

사업명	이월 사유	이월액
오감만족 초정행궁 조성사업	명시이월	126,839,000
석곡사거리~척북삼거리 도로개설공사	계속비	623,882,630
낭성 호정2리 농로포장 공사	집행잔액	29,450
미원 기암1리 농로포장 공사		15,252,840
미원 종암2리 농로포장 공사		6,918,630
미원 운교2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4,456,690
가덕 인차3리 구거정비 공사		11,201,950
남일 고은3리 우수관로정비 공사		901,320
남일 가산3리 배수로정비 공사		732,820
남일 개미실 자연친화숲길정비 공사		12,794,420
남이 외천천 황금길조성 공사		11,106,780
남이 구암리 구거정비 공사		3,919,090
남이 석실리 구거정비 공사		4,712,220
남이 상발리 농로정비 공사		2,361,210
남이 갈원2리 농로포장 공사		3,320,570
남이 가마육교 노면포장 공사		29,876,970
현도 중척3리 마을안길정비 공사		5,819,240
현도 우록1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060,430
현도 우록1리 마을안길정비 공사		8,248,490
현도 시동리 농로정비 공사		8,605,360
오송호수공원 광장 무대정비 공사		333,180
강내 궁현2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1,386,870
강내 태성2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954,570
강내 학천2리 농로포장 공사		717,430

강내 다락2리 농로포장 공사		2,171,610
옥산 금계리 농로포장 공사		26,612,400
석곡동 산17-2번지일원 농로포장 공사		6,668,040
석곡동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831,850
오창 후기2리 배수로정비 공사		954,260
오창 석우-탑리 아스콘포장 공사		64,090
북이 대율2리 배수로정비 공사		612,070
북이 대길1리 마을안길정비 공사		4,453,570
북이 석성3리 마을안길정비 공사		1,473,440
북이 토성2리 농로정비 공사		2,223,360
북이 화하2리 농로사면정비 공사		1,886,870
북이 선암2리 농로확장 공사		1,953,220
북이 용계3리 농도305호선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4,030,790
낭성 문박리 배수로정비 공사		9,588,470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농경지교차로개선등6개사업		132,298,180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현도,시목지구암반관정개발		19,084,190
오송 쌍청1리 도로확포장공사		728,040
남일 가산리 도로확포장공사		4,378,300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스마트버스승강장설치사업 (4개소)		81,819,700
오송산단 수도용지 생태경관 개선사업		6,844,180
옥화자연휴양림 액티비티 체험시설 조성사업		14,818,100

※자료: 행정안전부

□ 자율통합지원금은「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회계연도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77]에서 2회계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78],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유사한 목적의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79].

□ 이와 관련하여 2025년의 경우 2022~2024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협의 등을 보다 충실히 실시함에 따라 이월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집행관리 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및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77) 다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해당 이월범위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명시·사고이월 사유 등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임

7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7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다만,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범위의 예산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월 발생을 최소화하고, 당초 편성된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 내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1년~2025년 자율통합지원급 연도별 집행액 내역(창원시)]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연도별 집행액					집행 잔액
		2021	2022	2023	2024	2025	
2021년	7,332	2,949	4,133	248	-	-	-
2022년	6,110	-	2,996	1,951	1,161	-	2
2023년	4,888	-	-	4,249	615	24	-
2024년	2,444	-	-	-	1,892	542	10
2025년	1,222	-	-	-	-	1,033	198

※자료: 행정안전부

[2021년~2025년 자율통합지원급 연도별 집행액 내역(청주시)]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연도별 집행액					집행 잔액
		2021	2022	2023	2024	2025	
2021년	9,353	5,928	2,206	1,218	-	-	-
2022년	9,353	-	6,959	2,393	-	-	-
2023년	9,353	-	-	4,449	4,678	225	-

구분	예산액	연도별 집행액					집행 잔액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년	9,353	-	-	-	7,921	1,428	3
2025년	9,353	-	-	-	-	8,109	1,244

※자료: 행정안전부

□ 특히, 창원시의 경우 2024년 및 2025년에 발생한 집행잔액 약 2억 800만원이 이월되어 2026년에 집행될 예정이나, 2026년부터는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이 종료되어 향후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 집행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지원 종료 이후에도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이 당초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예산의 집행 상황과 사용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80].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지원금의 법령상 이월 허용 취지를 존중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 종료 이후에도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의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0)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창원시에 대한 자율통합지원금 사업('10~'25년)이 종료되었더라도 이월 및 집행잔액에 대해 e-나라도움(시스템) 및 분기별 점검자료 제출(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계획임.

15.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1431-301)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으로 2024년 741만원, 2025년 6,590만원을 실제 납부하였음에도 2025회계연도 예산에 관련 경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 다른 사업에서 5,0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하였고, 2026회계연도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았음. 특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대상 범위 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더라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련 기준을 조속히 명확히 하고,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경비는 과거 집행실적 및 관련 기준 등을 토대로 예산에 사전 반영하여 반복적인 세목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 사업은 지방 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정철학 교육 및 워크숍,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자치인재원 교육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0억 1,100만원 중 9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7,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	1,011	-	±62	-	1,011	934	-	77	875
교육프로그램개	45	-	-	-	45	40	-	5	50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발									
국정철학교육 및 워크숍	51	-	△5	-	46	39	-	7	45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79	-	△25	-	54	44	-	10	112
자치인재원 교육운영지원	262	-	50	-	312	302	-	10	112
신규임용자과정 및 지방직무공무원 역량평가	268	-		-	268	243	-	25	273
지방의정연수센터운영	306	-	△20	-	286	266	-	21	283

나. 예측 가능한 의무지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제고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자치인재원교육운영지원’ 사업은 인재원 연보, 소식지, 홍보동영상 및 홍보책자 제작, 시·도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와 컨설팅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 예산액 2억 6,2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예산현액 3억 1,200만원 중 3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자치인재원 교육운영지원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자치인재원 교육운영지원	262	-	50	-	312	302	-	10	112

※ 자료: 행정안전부

□ 구체적인 세목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국정철학교육 및 워크샵, 국제교류협력활성화 사업 및 지방의정연수센터운영 사업에서 각각 500만원, 2,500만원 및 2,0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사이버교육에 사용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납부에 집행하였음.

[자치인재원 교육운영지원 사업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아·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12.23)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1431-301)	210-01	20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1431-301)	210-02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210-07	30			

※ 자료: 행정안전부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이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차년도에 지급하는 금전[81]으로

2023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보상금 납부 대상으로 지정되어 2024년부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사이버교육에 대한 보상금을 납부하였음.

---

81)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급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및 산정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종량/포괄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저작권법 상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 어문: A4 1쪽 분량 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 이미지: 1건당 7.7원 ○ 음악: 1곡당 42원 ○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 (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으로 함. ○ 일반대 1,300원 ○ 전문대 1,200원 ○ 원격대 1,100원	수강생 1인의 시간당 기준금액은 다음으로 함. **(대면수업)** 12원/인·시간 **(원격수업)** 32원/인·시간

□ 2024년에는 2023년도 사이버교육에 대한 보상금 741만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1433-650)'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비목으로 납부하였으며, 2025년에는 2023년 및 2024년도 사이버교육에 대한 보상금 6,590만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

운영(1432-501)'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으로 1,590만원을 납부하고, '자치인재원교육운영지원(1431-301)' 사업의 세목조정을 통해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으로 5,000만원을 납부하였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납부내역]

(단위: 천원)

연도	대상 저작물	보상금	지급 일시	지급사유	사업비목
2024	'23년 사이버교육 (일부)	7,417	'24.12.11.	수업목적 저작물 관련 법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1433-650) 공공요금 및 제세
2025	'23년 사이버교육 (일부)	24,685	'25.12.29.	수업목적 저작물 관련 법령	①자치인재원교육운영 (1431-301) 공공요금 및 제세 이전용 예산(50백만) ②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산운영(1432-501) 공공요금 및 제세 (15.9백만)
	'24년 사이버교육	41,241	'25.12.29.	수업목적 저작물 관련 법령	

※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2025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해당 제도가 2023년에 처음 시행되어 2024년 상반기까지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 범위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었으며, 사이버 교육용 동영상 제작 시 이미 저작권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별도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

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었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024년 741만원, 2025년 6,590만원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실제 납부하였으며,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세목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보상금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보상금 납부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필요한 소요를 반영하는 것이 예산의 계획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참고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 행정안전부 소속 교육훈련기관인 국가재난안전교육원도 사이버 교육용 동영상에 대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약 29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인사혁신처 소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역시 일반수용비로 해당 보상금 약 2,000만원을 별도로 집행한 바 있음.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2026회계연도 예산에서도 사이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아 향후에도 세목조정을 통해 해당 보상금을 집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인 만큼, 지급기준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기준을 조속히 명확히 하는 한편, 실제 보상금 납

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년 반복적인 세목조정보다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소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과 같이 발생이 예정되어 있는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과거 집행실적 및 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복적인 세목조정에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지급기준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82].

82)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해당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지급기준 명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16.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1237-300)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내역사업 'K-주소 해외진출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과 예산액을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용역 발주시에는 위탁기간 내에 해당 용역이 완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연말 발주를 주의하고,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산업협회를 비롯한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준수하여 위탁사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은 주소정보의 구축·활용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내역사업으로는 ① 주소 국제표준화 추진, ② 주소체계 고도화, ③ 주소정보기본도 갱신 및 안내도 보급, ④ 주소정보시설 지도·점검, ⑤ 주소정보산업 지원, ⑥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⑦ 주소정보 제공 및 연계확대, ⑧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⑨ K-주소 해외진출 추진, ⑩ 주소정보사업 추진 기본경비가 있으며,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86억 6,5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18,665	-	-	-	18,665	18,665	-	-	18,185
주소 국제표준화 추진	200	-	-	-	200	200	-	-	200
주소체계 고도화	8,192	-	-	-	8,192	8,192	-	-	7,421
주소정보기본도 갱신 및 안내도 보급	2,700	-	-	-	2,700	2,700	-	-	2,700
주소정보시설 지도·점검	876	-	-	-	876	876	-	-	876
주소정보산업 지원	4,384	-	-	-	4,384	4,384	-	-	4,384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234	-	-	-	1,234	1,234	-	-	1,545
주소정보 제공 및 연계확대	584	-	-	-	584	584	-	-	584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152	-	-	-	152	152	-	-	132
K-주소 해외진출 추진	300	-	-	-	300	300	-	-	300
주소정보사업 추진 기본경비	43	-	-	-	43	43	-	-	43

나. 내역사업 'K-주소 해외진출 추진' : 예산 편성 취지 준수 필요

□ 2025년도 행정안전부에 편성된 세부사업 '도로명 및 도로번호 활용' 사업 예산액 186억 6,500만원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된 사업은 내역사업 '주소 국제표준화', '주소체계 고도화', '주소정보 기본도 갱신 및 안내도 보급', '주소정보산업 지원', 'K-주소 해외진출 추진' 등 5개 사업 총 142억 700만원임.

□ 이 중 내역사업 'K-주소 해외진출 추진' 사업은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해외에 확산하고 주소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5년도 국비 예산액 3억원을 위탁받았음.

□ 그런데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문제가 있었음.

□ 첫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내역사업 'K-주소 해외진출 추진' 사업 집행 과정에서 국회가 의결한 2025년도 예산 집행 계획과 달리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예산액을 집행하였음.

□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에는 내역사업 'K-주소 해외진출 추진' 사업을 위하여 '협력사업 추진전략 수립 및 판로 개척 용역'(1억 2,000만원), '해외 국가 주소정보 수요기관 고위급 및 실무자급 초청 연수'(8,000만원), 'K-주소기반 주소정보 현대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8,000만원), 'K-주소체계 도입 희망국 협력 강화'(2,0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3억원이 편성되었음.

□ 또한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2025년도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관련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K-주소 해외진출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① 해외 진출 대상 국가(몽골·에티오피아) 현지조사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확대, ② K-주소 해외 진출 대상국 법제도 분석 및 사업 진단을 통해 안정적 협력사업 방안 마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등 과업을 수행하고,

관련 위탁사업비 3억원 전액을 외주 용역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음.

□ 그런데 내역사업 'K-주소 해외진출 추진' 관련 4개 사업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해 실제 수행된 사업은 '몽골 주소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초청연수'와 '우즈베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2개 사업으로 총 2억 6,276만원이 집행되었음.

□ 구체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 당시 해외 공무원 초청 연수에는 8,000만원의 예산액이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약 2배 이상인 1억 6,476만원이 외주용역비로 집행되었고,

해외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는 8,000만원의 예산액이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약 1.2배인 9,800만원이 외주용역비로 집행되었음.

□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공모사업을 통해 ‘키르키즈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자체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의비 및 해외 출장여비 등 직접경비로 약 4,130만원을 집행하였음.

□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로명주소 영문법령집 제작’에 외주용역비 1,980만원을, ‘주소 혁신 국제 콘퍼런스’ 관련 행사대행 및 영상제작 용역에 외주용역비 약 2억 29만원 및 직접경비 약 1,617만원 등 총 2억 1,646만원을 집행하였음.

□ ‘주소 혁신 국제 콘퍼런스’는 국내·외 주소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주소 정책 및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K-주소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2025년에는 전세계 26개국 전문가 및 주소 관련 산·학·연·정 관계자, 국민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개최되었음.

[내역사업 'K-주소해외진출 추진' 관련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 내내역사업명		편성액	집행액	집행내용
K-주소해외진출 추진		**300**	**541.9**	
외주용역비	협력사업 추진전략 수립 및 판로 개척	120	-	-
	해외 국가 주소정보 수요기관 고위급 및 실무자급 초청 연수	80	164.8	몽골 주소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초청연수 용역
	K-주소기반 주소정보 현대화 사전타당성 조사	80	98	우즈베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K-주소체계 도입 희망국 협력 강화	20	-	-
	주소 혁신 국제 콘퍼런스	-	178.8	행사대행 용역
			21.5	오프닝 영상 제작 용역
	도로명주소 영문법령집 제작 용역	-	19.8	도로명주소 영문법령집 제작 용역
	합계	**300**	**482.9**	
직접경비	키르키즈스탄 해외진출 컨설팅	-	41.3	※사업비는 NIA 공모사업으로 집행
	우즈베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		※사업비는 자체 예산으로 집행
	몽골 주소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	-		※사업비는 외주용역비로 집행
	몽골 주소법 개정 컨설팅 및 후속사업 추진	-		
	주소혁신 국제 콘퍼런스	-	16.2	
	기타 회의비	-	1.6	
	합계	-	59.0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 2025년도 위탁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제행사로 ‘세계 주소 콘퍼런스’를 최초 개최한 이후, 2024년 국내행사로 ‘주소 미래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매년 주소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2025년도 예산편성 당시 관련 행사의 개최 유무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예산에 주소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채 주소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하나의 세부사업이더라도 각 내역사업의 예산액을 다른 사업 집행에 활용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 심의의 취지에 맞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

□ 따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사업의 내용과 예산액을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5 주소 혁신 국제 콘퍼런스 개요]

□ 콘퍼런스 개요

○ (개최 배경) 세계 각국의 주소정책 및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AI 기반 K-주소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협력 기반 강화 필요

○ (일시·장소) '25. 9. 25.(목) ~ 26.(금),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401·402호

○ (주제) AI와 융합하는 주소, 주소로 연결되는 세계

○ (참석) 26개국 해외인사, 주소 관련 산·학·연·정 관계자, 국민 등 300여 명

< 추진 경과 >

- 2023 세계 주소 콘퍼런스 개최(국제행사, 탄자니아·에티오피아 MOU 체결)
- 2024 주소 미래혁신 콘퍼런스 개최(국내행사)

□ 주요 내용

○ (개회식) 참석 감사인사, 그간의 성과 및 국제협력 필요성 제시

○ (1세션 K-주소 이니셔티브) K-주소 국제 선도 사례 발표 2건(제도, 산업), 국외 주소제도 현황 공유(4개국*), K-주소 글로벌 파트너십 제안

* 몽골,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2세션 K-주소 글로벌화) K-주소 국제 협력 MOU 2건, 면담 4건

구분	대상국	추진 사항
신규 MOU 체결	▸ 우즈베키스탄(지적청 청장) ▸ 키르기스스탄(토지자원청 청장)	MOU 체결
기존 MOU 체결국*	▸ 탄자니아(정보통신부 부국장)	면담(협력 강화)
수원국	▸ 타지키스스탄(국토관리위 원장) ▸ 인도네시아(국가토지부 과장)	면담(협력 발굴)

○ (3세션 K-주소 미래전략) AI 시대 주소정책 추진 전략 발표(3건) 및 패널 토론

○ (4세션 K-주소 인사이트) 주소정보 활용 산업·홍보 아이디어 발굴 및 K-주소 해외진출 기업 컨설팅

※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다. 내역사업 ‘주소정보산업 지원’ : 위탁기간을 벗어난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서의 정확성 확보 필요

□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주소기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22년부터 내역사업 ‘주소정보시설 점검’과 ‘주소정보산업 지원’ 등 2개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주소기반산업협회 수탁사업 추진실적]

□ **(소요예산) 총 4,016백만원**(민간위탁사업비)
- (’22년) 280백만원, (’23년) 1,280백만원, (’24년～’25년) 2,156백만원

□ **(수탁업무)**
- (’22년) 주소정보 활용 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 주소정보 공유체계 마련
- (’23년) 주소정보산업 동향 작성 및 우수기업 조사, 주소기반 공공데이터 생성, 주소정보 국가 통계화
- (’24년～’25년) 주소정보시설 점검, 주소정보산업 동향 작성 및 우수기업 조사, 주소기반 공공데이터 생성, 주소정보 국가 통계화

□ **(’25년 업무수행 실적)**
- 주소정보시설 점검 : 현장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초번호판 위치정확도 확보 및 설치 현황 점검(33.366개 실태점검)
- 주소정보 산업 동향 작성 및 우수기업 조사 : 주소정보 활용기업 실태조사(200개 기업),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주소정보 인식 조사(523명), 주소기반산업 동향 분석을 위한 특허 조사, 주소기반산업 육성방안 마련
- 주소기반 공공데이터 생성 : 주소 지식그래프 활용 환경 마련, 주소정보 데이터 비식별 제도화 방안 연구, 소규모 주소정제 공공 시범서비스
- 주소정보산업 국가통계화(국가통계 승인 제110033호, 2024.11.13.)

□ 주소기반산업협회의 2025년 민간위탁 규모는 내역사업 ‘주소정보 시설 점검’ 사업에 8억 7,600만원, 내역사업 ‘주소정보산업 지원’ 사업에 12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2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총 21억 5,600만원을 위탁받았고,

내역사업 ‘주소정보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각 내내역사업별로 ‘주소정보산업 동향 작성 및 우수기업 조사’에 2억 8,000만원, ‘주소기반 데이터지능정보 생성·운영’에 8억원,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에 2억원을 위탁받았음.

□ 그런데 주소기반협회는 수탁기간 내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신규 연구용역을 연말에 발주하고, 수탁기간이 종료된 2026년에 용역 준공에 따른 잔금 납부를 계획하는 등 수탁기간을 벗어나 사업을 수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 민간위탁은 위탁기간 내에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행정안전부와 주소기반산업협회가 체결한 「2025년 주소정보산업 활성화 지원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협약 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위탁업무 수행기간 동안 소요경비를 지급하고, 주소기반산업협회는 계약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위탁업무 수행결과 보고서와 정산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주소기반산업협회는 내내역사업 ‘주소기반 데이터지능정보 생성·운영’ 사업 용역의 낙찰차액 1억 1,000만원을 활용하여, 2025년 12월 15일 ‘주소기반 데이터지능정보 적용 확대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 위치오류 개선 방안 마련’에 관한 신규 용역을 추가로 발주하고 위탁기간 종료를 불과 6일 앞둔 12월 26일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음.

□ 해당 사업은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지역 소재 5,958개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하여, 버스정류장 DB와 사물주소 간 정합성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인터넷 지도 등에서 제공하는 버스정류장 위치정보와 실제 위치의 오차 또는 오류를 정정하여 정확한 버스정류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련 시스템에 적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그런데 해당 사업은 3개 시·도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 버스정류장에 대한 실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용역사업을 위해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므로, 주소기반산업협회는 2025년 12월 26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기간인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용역사업이 준공되지 못할 것임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임.

□ 실제로 주소산업기반협회는 외주용역의 계약기간을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로 4개월로 하여 2025년 12월 30일 용역회사에 선금 6,160만원을 집행하였음.

□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3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여 국가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83]

합리적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 용역을 위탁기간 종료 직전에 발주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위탁기간 종료 후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탁기간 종료 후 사업을 계속 집행하는 경우 위탁기간 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민간위탁 종료 이후에도 사실상 위탁사무가 계속 수행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성과를 관리·감독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주소기반산업협회의 민간위탁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위탁사업인 ‘주소기반 데이터지능정보 적용 확대 BIS 위치 오류 개선 방안 마련’ 사업은 완수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가 이루어질 수 없고,

위탁 기간 종료 이후에 용역사 사정으로 용역사업이 실제로는 준공되지 못하였거나 부실하게 준공된 경우에 행정안전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

8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더 나아가 주소기반산업협회가 작성한 「2025년도 주소기반산업협회 위탁사업 정산 보고」에서 2026년 완료 예정인 ‘주소기반 데이터지능정보 적용 확대 BIS 위치오류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잔금을 포함한 용역비 전액을 2025년 집행한 것으로 포함하여 최종반환액을 산정하였음.

□ 그런데 외주용역비 잔금 4,840만원에 대하여는 2026년에 실제 집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인데, 주소기반산업협회의 위탁사업비 정산 시점에는 해당 이자수입이 포함되지 않고 반환액이 과소하게 집계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국가재정법」 제56조는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61조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 등 세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26년에 집행 예정인 잔금을 2025년도 위탁사무 집행내역에 포함하여 정산 보고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의 정확성을 저해하고 「국가재정법」 제56조 및 제61조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용역 발주시에는 위탁기간 내에 해당 용역이 완수될 수 있도록 위탁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보고서

작성시 연내 집행한 금액과 이월된 예산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확한 내용을 정산보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산업협회를 비롯한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준수하고 수탁기관이 정산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7.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1231-302) 및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 행정안전부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본사회 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 등을 거쳐 예산을 이용(移用)하고,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의 각종 심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시정이 필요함.

가. 개 요

□ 세부사업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전년도이월액 1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4억 2,800만원 중 50억 4,000만원이 집행되고 8,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800만원임.

□ 세부사업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은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 9,9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200	-	-	-	200	199	-	1	-
지역발전활성화	5,328	100	-	-	5,428	5,040	80	308	10,777

나. 기본사회 관련 조직 신설 및 신규사업 추진 시 이전용 없는 예산의 우회적 사용 지양 필요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25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858호)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89호)을 개정하여 균형발전국에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하였음.

□ 신설된 기본사회정책과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관련 제도 기반 구축, 발전계획 수립, 범부처 추진체계 관리와 기본사회위원회 지원·협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하면서도 해당 조직의 운영과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차관보실’, ‘차관보실(총액)’, ‘지역발전활성화’,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등 사업에서 총 3,232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기본사회정책과는 기본사회 관련 업무를 집행하면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성 예산사업 외에도 별도 사업을 위해 편성된 세부사업 ‘지역발전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사업 예산액 1,777만원을 별도의 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였음.

[2025년 기본사회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회계종류	세부사업명	비목	금액
일반회계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일반수용비(210-01목)	4,989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300
	차관보실	일반수용비(210-01목)	6,760
		국내여비(220-01목)	1,037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1,000
	차관보실(총액)	특근매식비(210-05목)	462
	소계		14,548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추진비(240-01목)	500
	지역균형발전 추진지원	일반수용비(210-01목)	17,143
		사업추진비(240-01목)	126
	소계		17,769
합계			32,317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심의 당시에는 기본사회정책과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조직 신설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별도의 예산이 편성·반영되지 못하였고,

세부사업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는 행정안전부 기관운영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관보실' 및 '차관보실(총액)'은 차관보실(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균형발전지원국) 기본업무 수행 및 관서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기본경비성 예산으로 조직 신설에 따라 해당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임.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세부사업 ‘지역발전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지원’ 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별도의 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규 사업인 기본사회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집행함.

□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각 세항 또는 목(행정과목)의 금액을 전용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각 기관 간 또는 장·관·항(입법과목) 간에도 이용(移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84]

이는 국회가 심의한 예산은 그 취지에 따라 사용됨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전용의 절차를 거쳐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려는 취지임.

---

84)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 세부사업 ‘지역발전활성화’의 내역사업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은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추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사업은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사업관리·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각 편성된 것으로,

해당 사업들이 속한 지역발전 프로그램은 도로명주소 사업, 지역경관 개선,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경제권추진, 인구감소지역이나 섬·접경지역·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등 전반적으로 또는 특수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그런데 기본사회 관련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삶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려는 신규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예산의 전용이 불가능하므로,[85]

85)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2025년도 지역발전 프로그램 예산 목록]

(단위: 백만원)

부처	분야-부문-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행정안전부	일반·지방행정(010) - 지방행정·재정지원(013) - 지역발전(1200)	일반회계	도로명주소사업추진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18,665
				클라우드기반의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	2,358
			생활공감정책추진	생활공감정책추진	260
			한국 섬 진흥원 지원	한국섬진흥원 지원	4,86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경제권추진지원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200
				지역발전활성화	5,328
			지역경관개선지원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10,000
			지역공동체기반조성 및역량강화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9,818
			지방소멸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8,540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1,478
			접경권발전지원	접경권발전지원(자율)	45,627
			제주민군복합항 주변지역발전지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5,250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등지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61,797
			특수상황지역개발	특수상황지역개발	194,260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5,026

※ 자료 : 기획예산처 - 재정정보공개시스템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정책과의 신설 및 기본사회 관련 업무 추진으로 인하여 필수적 경비가 부족해진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이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었음.

□ 한편, 2022년 5월 30일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653호)을 제정하여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2022년 7월 27일까지 국민통합위원회의 출범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기본경비적 성격을 갖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분권실(7011-257)' 사업 116만원을 집행하면서도,

국민통합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세부사업 '국민통합위원회 운영(1145-300)'을 신설하고 세부사업 '정책기획위원회 운영(7035-300)' 중 8억 3,600만원을 이용하며 예비비 41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현액 50억 400만원 중 41억 9,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

□ 반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기본사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사업 '지역발전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사업의 예산을 별도의 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사회 관련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제45조[86]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서 국회의 예산안 편성의 취지에 반하는 예산 집행에 해당함.

[국민통합위원회 관련 예산 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변경전		금액	변경후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2.7.6.)	정책기획위원회 운영(7035-300)	110-02	158	국민통합위원회 운영(1145-300)	110-02
		210-01	300		
		210-14	76		110-03
		210-14	82		
		260-02	3		210-07
		260-02	207		210-02
이용 (‘22.7.8.)	정책기획위원회 운영(7035-300)	260-02	10	국민통합위원회 운영(1145-300)	210-02

※ 자료: 행정안전부 - 2022년 결산 사업설명자료

□ 둘째, 행정안전부는 예산의 이용 절차 없이 기본사회 관련 예산을 집행한 결과, 국회의 결산안 심사 단계에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추진 여부나 집행 규모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 「국가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을 이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이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87]

86)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87)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동법 제61조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전용 등 증감액을 포함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88]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국회의 결산 심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그런데 기본사회 관련 예산은 별도의 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집행되었으므로, 국회에 제출한 예산 이용 내역과 결산안을 통해서는 기본사회 정책 관련 예산 집행 내역과 규모를 일체 확인할 수 없음.

□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은 국가 예산의 집행액과 집행실적, 집행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신규 정책이 기존 사업 예산으로 집행되는 경우 사업별 예산집행액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그에 따른 사업 성과나 집행과정의 효율성을 심사하기 어렵고,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8) 「국가재정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라. 전용 등 증감액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는 2025년 11월 25일 신설됨에 따라 2026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 관련 예산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심의 과정에서도 별도 예산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2026년도 예산에도 기본사회 관련 예산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2026년 상반기에 출범한 기본사회위원회의 운영경비는 현재 예비비를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 그런데 2026년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58호, 2026년. 1. 27. 제정)이 제정되어 4월 14일에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하였고,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 및 추진체계를 총괄·조정하면서 기본사회위원회에 대한 지원·협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향후 기본사회 관련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본사회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됨.

□ 행정안전부의 기본사회 관련 정책이 별도의 사업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기본사회 정책의 투입 규모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본사회 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 등을 거쳐 예산을 이용하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의 각종 심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시정이 필요함.

18. 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

○ 행정안전부는 내내역사업 ‘마을기업 DB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신규 사업 추진시 사업의 방식과 소요 예산규모를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예산 집행시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고,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DB 홈페이지와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의 중복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기능 및 데이터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가. 개 요

□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6억 7,500만원 중 16억 6,500만원이 집행되고 1,000만원이 불용[89]되었음.

89) 불용사유 : 낙찰 차액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마을기업육성사업	1,675	-	±90	-	1,675	1,665	-	10	5,250
마을기업활성화지원	200	-	±90	-	200	190	-	10	600
마을기업육성사업	1,475	-	-	-	1,475	1,475	-	-	4,650

나. 예산편성시 사업방식 및 소요예산액 사전 검토 강화 필요

□ 내역사업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마을기업을 내실화하여 지속 성장하도록 마을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과 마을기업 DB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이 중 마을기업 DB 홈페이지는 ① 행정안전부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개요, 마을기업 지정 요건, 관련 규정, 매출액·고용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고, ② 마을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마을기업의 사업 현황과 성과 등 데이터를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DB 홈페이지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운영 경험이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전제로 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12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예산의 규모가 작아 담당자 인건비 보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탁을 거부하였음.

□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업방식을 직접수행으로 전환하고, 2025년 6월 23일 민간위탁사업비 9,000만원을 관리용역비,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음.

□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기능 개발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리용역비 3,400만원과 마을기업 홈페이지 서버 등 필요한 기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여 마을기업 업무를 위한 각종 사무용품 및 운영물품 구매·제작에 사용하였음.

[마을기업 DB 홈페이지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변경전		변경후	
	목·세목 (코드)	금액	목·세목 (코드)	금액
전용 (2025.6.23.)	민간위탁비 (320-02)	90	관리용역비 (210-15)	34
			자산취득비 (430-01)	30
			일반수용비 (210-001)	26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DB 홈페이지 위탁 운영을 전제로 2023년 2월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민간위탁을 협의해왔고, 2023년도 예산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마을기업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일반연구비 1억원을 편성해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9,100만원을 집행하는 등,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 마을기업 DB 홈페이지 위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예산 금액과 금액의 규모에 따른 수탁기관의 수행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2023년 '마을기업 홈페이지 구축' 사업 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 용역

○ **(용역사)** ㈜오OOOOO

○ **(금액/기간)** 91백만원 / '23. 6. 16.~11. 15.(5개월)

○ **(내 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마을기업 정보 및 데이터 시스템 추가

✓ (현행) 정보화마을 소개+쇼핑몰+체험마을 → (개편) 마을기업·정보화마을 소개+마을기업 DB
* 쇼핑몰 기능은(invil.com) 정보화마을 협회 등에 이관 예정

※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시스템 이관을 기준으로 개편

□ 홈페이지 시스템

1. 마을기업 기본 데이터 입력 및 관리
   ○ (기본현황) 마을기업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마을기업 유형, 주생산품, 법인명, 법인번호, 법인형태,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현황
   ○ (사업성과) 매출액, 임금근로자 고용, 타부처사업 연계
   ○ (지역사회 공헌활동) 유형, 횟수, 내용, 금액
2. 마을기업 및 정보화마을 소개
   ○ 사업개요, 지정요건, 추진절차, 지원사항, 관련규정,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우수마을기업 소개 등
3. 마을기업 관련 정보 제공
   ○ 연도별 지정현황, 지역별 운영현황, 연도별 매출액, 임금근로자 고용현황
4. 마을기업 지원(커뮤니티 공간)
   ○ 건의사항 게시, 답변
   ○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연관 사업 정보 제공
5. 데이터 활용 권한 관리 등
   ○ 지자체, 중간지원기관 등 접근권한 부여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DB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예산에 9,000만원을 편성한 결과, 위탁운영을 논의해 왔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수탁을 거부하고 당초의 사업 방식을 변경하였음.

□ 이는 마을기업 DB 홈페이지 구축·운영은 정보화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최초 예산 편성시 구축 비용 외에 구축 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계획하여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으나,

사전에 홈페이지 구축·운영 단계별 예상 비용을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2024년 예산안 편성시 클라우드 이관비용 3,000만원과 위탁운영비 7,0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정책방향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은 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연차별·항목별 투자소요 및 총사업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 시작연도부터 당해연도까지의 기투자비용과 예산요구연도부터 향후 5년까지의 투자소요를 모두 포함하도록 함.

□ 결과적으로 2023년 마을기업 홈페이지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마을기업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고, 2025년에는 마을기업 홈페이지 사업 방식이 변경되어 운영 일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어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신규 사업 추진시 사업의 방식과 소요 예산 규모를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 예산집행시 경쟁계약 원칙 준수 필요

□ 행정안전부는 2025년 마을기업 DB 홈페이지 운영을 위탁에서 직접수행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와 관리용역비를 집행하였는데,

서버 등 기기 구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사업을 통해 발주하여 자산취득비를 집행하였으나 홈페이지 관리용역 계약 체결시 별도의 입찰공고나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계약을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관리용역 계약 체결시 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복수 업체를 비교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마을기업 DB 홈페이지 운영 수탁을 거절한 이후 사업 방식을 위탁수행에서 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고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비목 전용 승인이 2025년 6월에 완료되어 사업 착수 일정이 지연되었고 경쟁입찰을 재추진하는 경우 연내 사업 완수가 불가능

하다고 보아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모색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여성기업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함.

□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통합·구축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리용역 입찰 공모시 참여할 수 있는 용역사의 수가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공개경쟁시 다양한 업체를 비교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용역사 선정과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달성하며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에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예산 집행시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당사자를 결정하고,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라. 사회연대경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고려한 마을기업 홈페이지 운영 필요

□ 행정안전부는 최근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부처별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 정보, 통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고,

최근 제정을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90]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각종 자료나 정보를 통합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도 사회연대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통합 통계관리’와 ‘사회연대경제 아카이브 및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에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이는 개별 부처에서 각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벗어나 통합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서,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에는 마을기업의 통합공시, 관련 정책정보 제공, 통계 자료 제공 및 인증·지정 신청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음.

---

9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의안번호 2218552)은 2026년 3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2026년 4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뒤,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마을기업 DB 홈페이지와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비교]

구분	마을기업 DB 홈페이지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근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8.15. 시행예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본회의 계류중)
웹사이트	www.maeulgiup.go.kr	플랫폼 설계중
주요 기능	○ 마을기업 기본 데이터 입력 및 관리 : 기본현황, 사업성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 마을기업 육성사업 소개 : 사업개요, 지정요건, 지원사항 등 ○ 마을기업 관련 정보 제공 : 지정 및 현황, 연도별 매출액, 임금근로자 고용현황 등 통계 ○ 마을기업 지원(커뮤니티 공간) : 건의사항 게시, 답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연관 사업 정보 제공 ○ 각종 연계 : 개별 마을기업 홈페이지 연결, AI 기반 답변 지원, 지역별 마을기업 찾기 기능 등	○ 통합공시·정보제공 : 사회연대경제조직 통합공시, 관련 정책정보 제공 ○ 통합통계 : 실태조사 및 데이터 연계를 통해 통계 자료 제공 ○ 원스톱 창구 : 사회연대경제기업 인증·지정 신청 등 ○ 성과·성장지원 : 지원사업 이력관리, 수혜기업 평가 ○ 시스템통·폐합 : 지자체 사회연대경제센터 누리집 통폐합
관련 예산액	9,000만원 ('25년 예산액 기준)	33억 1,800만원 ('27년 예산 요구액 기준)
현황 및 향후 계획	'26.5.20. 홈페이지 정식 오픈	'26년 플랫폼 설계 '27년~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29년 서비스 오픈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마을기업 DB 홈페이지는 마을기업에 특화되어 운영되고,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은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다루는 서비스로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마을기업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한 유형으로서 마을기업 DB 홈페이지와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이 연계 없이 별도로 구축되는

경우 이용자인 마을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중복성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DB 홈페이지와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의 중복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기능 및 데이터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19.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3131-301)

○ 행정안전부는 내역사업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과 관련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상황과 향후 사업 추진일정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한 후, 사업의 단계에 맞추어 집행가능한 금액만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가. 개 요

□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①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과 ② 지역사회역량강화 및 조사연구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30억 1,1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3,011	-	-	-	3,011	3,011 [1,832]	-	-	1,700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2,966	-	-	-	2,966	2,966 [1,802]	-	-	1,700
지역사회역량강화 및 조사연구	45	-	-	-	45	45 [30]	-	-	-

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필요

□ 내역사업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원도심 침체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저활용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임.

□ 조성된 공간은 지역 공동체, 청년,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주민 공동체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공간으로 활용됨.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을 위하여 전국 5개 시·군·구에 국비 보조금 29억 6,6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전체 실집행률은 60.8% 수준으로 저조함.

□ 또한 지역별로는 실집행률이 8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전남 장성군과 경기 동두천시 두 곳이고 경남 함안군, 광주 동구, 경북 의성군 등 3개 지역에서는 실집행률이 60%에 미치지 못함.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국비 교부액	예산현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합 계	2,966	2,966	1,802	60.8
경기(동두천)	500	500	500	100
전남(장성군)	461	461	400	86.8
경북(의성군)	1,450	1,450	863	59.5
광주(동구)	100	100	7	7.3
경남(함안군)	455	455	32	6.9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내역사업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은 통상 2년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되어 실시설계나 각종 인허가 등 사전 절차 이행과 공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했던 것이 집행률 저조의 원인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나 공사 규모에 따른 소요 기간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공유재산 활용, 건축 심의, 도시계획 등 다양한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사업 초기에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비를 교부하여, 예산이 회계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량 증가, 구조안전 진단문제로 인한 설계용역 기간 증가, 폭염에 따른 공사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었다고 설명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포괄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지나, 중앙부처로서는 국비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가 본래의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상황과 향후 사업 추진일정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한 후, 사업의 단계에 맞추어 집행가능한 금액만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20.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1131-304) 및 자원봉사활성화지원(1141-302)

○ 행정안전부는 내역사업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수준은 유지하되 사고의 유형·정도에 따라 보장범위를 달리하거나 중복 보장 방지, 도덕적 해이 예방 및 사전 교육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자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세부사업 ‘자원봉사활동지원(제주)’ 사업과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내역사업 간 회계 계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이 지역지원계정으로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①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확산, ②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효율화 증진, ③ 자원봉사 진흥정책 및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④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 5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33억 2,100만원 중 13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7,700만원을 이월하고 6,900만원은 불용하였음.

□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 지역에서 자원봉사 보험료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2,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13,321	13,321	-	-	-	13,321	13,175	77	69	18,320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확산	157	157	-	-	-	157	157 [157]	-	-	657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효율화 증진	2,579	2,579	-	-	-	2,579	2,574 [2,565]	-	5	2,618
자원봉사 진흥정책 및 기부금품 모집 제도 운영	869	869	-	-	-	869	728	77	64	300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201	1,201	-	-	-	1,201	1,201 [1,201]	-	-	1,237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8,515	8,515	-	-	-	8,515	8,515 [8,187]	-	-	8,808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제주)	27	27	-	-	-	27	27	-	-	27

나. 보험제도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에 입을 수 있는 손해, 후유장해, 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종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최초 도입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단위의 단체 보험을 체결하여 자원봉사자는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자원봉사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그런데 최근 자원봉사보험은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확대에 따라 보험금 지급건수와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봉사보험의 수혜율[91]이 상승하고 있는데,

보험의 수혜율 증가는 곧 보험사의 손해율[92] 상승을 의미하므로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과 이에 따른 예산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91) 자원봉사보험 수혜율은 자원봉사 예산액(보험 지불액) 대비 실제 수혜액임
92) 자원봉사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함

□ 실제로 자원봉사보험 수령자수는 2021년 447명에서 2025년 844명으로 1.9배, 수령금은 2021년 11억 7,000만원에서 2025년 31억 3,500만원으로 약 2.7배, 수혜율은 2021년 44.3%에서 2023년 130.3%로 약 2.9배 상승하는 등 자원봉사보험 수령자수, 수령금, 수혜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자원봉사보험 통계]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예산집행액[93]	수령자	수령금	1인당 수령금	수혜율(%)
2025년	2,639	844	3,135	3.71	118.8
2024년	2,332	788	2,522	3.20	108.1
2023년	2,377	779	3,097	3.98	130.3
2022년	2,778	452	1,341	2.96	48.2
2021년	2,638	447	1,170	2.61	44.3
평균	2,553	662	2,253	3.29	89.9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에 자원봉사보험 보험사에서는 보험료율의 인상과 보장 축소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안전부는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를 고려하여 보장범위와 보장수준을 매년 조정해오고 있다고 설명함.

93) 행정안전부 예산 기준 예산집행액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 그런데 단순히 보장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낮출 우려가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보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자원봉사보험 관련 예산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가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됨.

□ 한편, 세부 보장내역별로는 구내치료비가 2025년 전체 보험 지급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2년 대비 보험 지급액이 2.4배로 증가하는 등 다른 보장내역에 비하여 가파르게 증가한 측면이 있음.

□ 구내치료비는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그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나 워크숍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2022년부터 최대 1억까지 보장해오고 있음.

[2025년 보험 지급액 상위 5개 담보별 보험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5년		2022년[94]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구내치료비	956	739	396	448
상해후유장해	506	14	286	12
골절치료비	485	242	345	139
상해입원일당 보장	326	241	271	178
상해통원일당 보장	275	621	209	429
전체[95]	3,135	2,043	1,821	1,366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94) 자원봉사보험은 3년간 보험 신청이 가능하여, 해당 자료는 2025년 말 시점에서 연도별 지급액 및 인원수를 나타냄

95) 봉사자 1명이 여러 담보를 통해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전체 인원수는 실제 수령자와 차이가 있음.

□ 자원봉사는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자원봉사의 위험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자원봉사보험 비용 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수준은 유지하되 사고의 유형·정도에 따라 보장범위를 달리하거나 중복보장 방지, 도덕적 해이 예방 및 사전교육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자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제주계정과 통합운영 필요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그 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하 '제주계정'이라 함),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이하 '세종계정'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9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구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지자체 자율편성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④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⑤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부처 직접편성	-	⑥부처 직접편성사업	⑦부처 직접편성사업	⑧부처 직접편성사업

□ 현재 세부사업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은 내역사업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과 제주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나, 내역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계정이 분리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계정이 분리되어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

96)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 2025년 기준 세부사업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내역사업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 2개 사업임.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내역사업별·지역별 회계 계정97)]

구분		제주·세종 외	제주	세종
세부사업	내역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지역지원계정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지역지원계정		

□ 그런데 자원봉사보험의 경우 2016년부터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 단위로 통합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므로 보험료 산정, 계약, 보조금 집행,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역지원계정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국고 보조금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겠음.

□ 실제로 자원봉사보험의 경우 세종 지역은 세종계정이 아닌 지역지원계정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제주·세종 지역 모두 지역지원계정에서 편성되는 등 자원봉사보험에 대하여만 제주계정에 별도로 편성·관리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임.

97)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 이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 연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7년 1월 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이 신설되면서 자원봉사보험 관련 예산은 제주계정으로 이관되었으나,[98]

당시에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 해당 사업이 신규로 도입되면서 제주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온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보험의 효율적 집행과 내역사업 간 회계 계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이 지역지원계정으로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음.

98) 한편, 2014년 1월 28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세종계정이 신설되었으나, 세종 관련 예산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되지 않고 편성되어 왔음.

21.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 내역사업인 ‘온천산업활성화’의 경우 온천제도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2,500백만원의 예산이 편성 목적과 달리 내역변경 없이 연례적으로 균형발전지원국내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의 관서운영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99]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안전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및 활력을 제고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54억 2,800만원 중 50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역발전활성화	5,328	100	-	-	5,428	5,040	80	308	10,777

9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보조요원 인건비	88	-	±1.2	-	88	84	-	5	96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조성	760	-	-	-	760	753	-	7	6,965
온천산업활성화	325	-	-	-	325	325	-	-	325
지역활력제고	3,155	100	-	-	3,255	2,901	80	273	2,612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지원	750	-	±45	-	750	731	-	19	200
인구감소지역 기업 이전활성화 지원	250	-	-	-	250	247	-	.	-

나. 편성 내역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온천산업활성화’ 사업은 「온천법」[100]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과 시책을 마련하여 온천산업을 활성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측시설을 통해 온천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3억 2,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동 내역사업은 온천법령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과 온천자원 관측을 내용으로 하는데, 2025년도 집행내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온천제도 운영을 위하여 2,5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온천산업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내역사업	2025년도 예산 편성근거	2025년도 집행내역
온천산업활성화	○ 325백만원 - 온천제도 운영 : 25백만원 - 온천자원 관측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 300백만원	○ 325백만원 - 온천제도 운영 : 25백만원 - 온천자원 관측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 300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

100) **「온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사무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최근 3년간 온천 관련 법령의 개정 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온천법 시행령」 개정 3건 중 2건은 타법 개정에 따른 부수적인 정비에 불과하여 온천산업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 실적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온천법령 개정 건수]

(단위: 건)

온천법령	2023	2024	2025
「온천법」	1	-	-
「온천법 시행령」	-	1	2
「온천법 시행규칙」	1	-	-
합계	2	1	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동 내역사업은 온천자원 관측 및 온천법령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온천자원 관측시설 설치 및 정보체계 구축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온천제도 운영의 일부 예산이 균형발전지원국의 관서운영경비로 집행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온천산업활성화’ 사업 예산 집행 세부내역]

(단위: 만원)

비목		예산액	온천산업활성화			
			온천산업활성화 집행		균형발전 지원국 관서 운영경비 집행	
			내용	금액 (비율)	내용	금액 (비율)
합계		325		312 (96%)		13 (4%)
운영경비 (25)	일반 수용비	12	법률 자문, 유공 표창, 책자 제작 등	8 (67%)	관서운영 경비	4 (33%)
	임차료	3	-	-		3 (100%)
	국내 여비	6	온천 관련 출장여비	2 (33%)		4 (67%)
	업무 추진비	4	지자체 온천 담당자 워크숍 간담회비	2 (50%)		2 (50%)
	소계	25		12 (48%)		13 (52%)
민간위탁 사업비 (300)		300	온천자원 관측시설 설치 및 정보 체계 구축	300 (100%)	-	-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섬·접경지역 등의 대다수 출장지가 낙후・소외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차량 임차 등의 별도 비용이 다수 발생하였고, 서해5도・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현안 업무 관련 출장으로 인하여 온천제도 운영 중 일부 예산(52%)을 동일 세목의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집행한다는 입장임.

□ 또한, 최근 2년간 보양온천지정기준 개정(’24.10.), 온천법 시행령 개정(’24.11.), 장기 미개발온천 정비를 위한 온천개발계획실적평가

가이드라인 수립('25.1.) 등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자체 온천담당자 워크숍('25.11.)을 통해 수렴한 규제 개선 의견을 토대로 온천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 온천법 제9조의2에 근거한 온천도시의 지정 및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편성된 예산이 부족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101]에 따른 내역변경 등 예산과목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별 예산편성 목적에 반하는 예산 집행에 해당함.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예산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

101) 내역변경(조정)이란 단위사업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내역변경(조정)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 변경(전용・이용・이체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세부사업간 증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전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2.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1232-300)

○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거나 전액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총 21억 3,700만원 상당의 이월 및 반납이 발생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추후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추진 여건 및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02]에 따라 증가하는 빈집의 철거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관 회복 및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00억원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10,000	-	-	-	10,000	10,000	-	-	-

1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필요

□ 동 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철거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가 이를 검토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를 통해 국비와 지방비를 7:3의 비율로 매칭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철거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사업 집행절차		실시주체
기본계획 수립	-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행정안전부
↓		
시·군·구별 사업계획서 작성	- 빈집 정비 수요 모집(정비 동의서 확보 또는 직권 철거 등) - 3등급 빈집 등 우선 고려	시·군·구
↓		
시·군·구별 예산 편성안 검토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빈집현황 등을 고려, 시·군·구별 예산 편성안 마련	시·도
↓		
시·군·구별 예산 편성안 확정 및 사업비 교부	- 시·군·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비 교부	행정안전부
↓		
사업관리 및 성과공유	- 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 - 우수정비 사례 발굴·확산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기간, 소요사업비 및 향후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빈집정비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배정하였음.

[빈집 정비사업 사업계획서 요약]

신 청 기 관	○○시·도 △△시·군·구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그 간 경 과	시·군·구 빈집 정비 실적 및 예산('23, '24년도)
사업 대상지	총 00호 (도시 00호, 농촌 00호, 어촌 00호)
사 업 기 간	(총 사업기간) - (업체선정) - (정비실시)
소요사업비	총 000백만원(국비 00백만, 시·도 00백만, 시·군·구 00백만)
사업비 산출 내 역	해체비 / 폐기물처리비 / 기타
사업 전·후 비 교	사업 전과 후의 주민의 삶 및 지역 경관이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질 것인지 기술
시 행 업 체	업체 선정 계획 및 선정 업체 등 제시
향후 관리계획	빈집 철거 후 나대지 활용·관리 방안 제시

자료: 행정안전부

□ 예컨대, 대전광역시는 당초 사업계획서상 서구 6개동, 대덕구 및 중구 각 1개동에 대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채 보조금 전액을 이월하였고, 전라북도 전주시는 당초 30개동의 빈집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월 또는 반납을 한 금액은 21억 3,700만원에 해당함.

[지방자치단체별 빈집 정비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단위: 개동)

구분		정비동수				이월 여부
		계획		실적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합계		474	1,082	289	895	
부산	서구	2	-	2	-	
	동구	2	-	2	-	
	영도구	3	-	3	-	
	부산진구	12	-	15	-	
	사하구	11	-	12	-	
	합계	30	-	34	-	
대구	중구	5	-	5	-	
	동구	5	-	5	-	
	서구	10	-	10	-	
	남구	4	-	3	-	
	북구	4	-	5	-	
	수성구	4	-	4	-	
	달서구	2	-	2	-	
	달성군	-	6		6	
	합계	34	6	34	6	
인천	옹진군	-	18	-	6	
	강화군	-	18	-	8	
	합계	-	36	-	14	
대전	서구	6	-	-	-	이월
	중구	1	-	-	-	
	대덕구	1	-	-	-	

구분		정비동수				이월 여부
		계획		실적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합계	8	-	-	-	
울산	중구	10	-	11	-	
	남구	8	-	-	-	이월
	동구	12	-	10	-	
	북구	10	-	10	-	
	울주군	-	8	-	32	
	합계	40	8	31	32	
광주	동구	1	-	1	-	
	서구	1	-	1	-	
	남구	16	-	0	-	
	북구	1	-	1	-	
	광산구	1	-	1	-	
	합계	20	-	4	-	
세종		-	20	-	5	
경기	김포시	2	-	2	-	
	동두천시	5	-	6	-	
	양평군	-	1	-	1	
	의정부시	4	-	4	-	
	평택시	7	7	7	6	
	합계	18	8	19	7	
강원	춘천시	11	2	12	1	
	원주시	3	9	2	7	
	강릉시	4	-	4	-	
	동해시	7	2	3	6	
	태백시	10	-	-	-	이월
	삼척시	5	2	5	2	
	홍천군	-	8	-	9	
	영월군	-	12	-	13	
	평창군	-	9	-	9	
	정선군	-	4	-	4	
	철원군	-	3	-	3	
	화천군	-	3	-	3	
	양구군	-	3	-	3	
	인제군	-	3	-	1	
	고성군	-	4	-	4	
	양양군	-	3	-	3	
	합계	40	67	26	68	
충북	청주시	7	4	10	4	

구분		정비동수				이월 여부
		계획		실적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충주시	7	3	7	3	
	제천시	5	-	-	-	이월
	보은군	-	3	-	4	
	옥천군	-	9	-	-	이월
	진천군	-	7	-	8	
	괴산군	-	9	-	8	
	단양군	-	7	-	-	이월
	합계	19	42	17	27	
충남	천안시	6	50	6	62	
	공주시	5	-	5	-	
	보령시	2	11	2	11	
	논산시	1	2	1	2	
	부여군	-	10	-	10	
	태안군	3	1	3	1	
	합계	17	74	17	86	
전북	전주시	15	15	-	-	반납
	군산시	15	5	-	-	이월
	익산시	30	25	-	-	
	정읍시	9	7	9	7	
	남원시	6	9	6	9	
	김제시	5	10	7	11	
	완주군	-	10	-	10	
	진안군	-	20	-	27	
	무주군	-	10	-	11	
	장수군	-	10	-	15	
	임실군	-	15	-	-	이월
	순창군	-	10	-	10	
	고창군	-	21	-	-	이월
	부안군	-	15	-	5	
	합계	80	182	22	105	
전남	목포시	35	-	37	-	
	여수시	14	8	6	1	이월
	나주시	7	21	4	27	
	광양시	1	4	-	6	
	담양군	-	28	-	25	
	곡성군	-	40	-	90	
	고흥군	-	10	-	14	
	보성군	-	10	-	-	

구분		정비동수				이월 여부
		계획		실적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화순군	-	7	-	-	이월
	장흥군	-	39	-	-	
	강진군	-	10	-	10	
	해남군	-	29	-	42	
	영암군	-	3	-	3	
	무안군	-	10	-	15	
	함평군	-	7	-	0	
	영광군	-	10	-	4	
	진도군	-	28	-	29	
	신안군	-	10	-	2	
	합계	57	274	47	268	
경북	포항시	60	50	-	-	이월
	안동시	10	10	-	-	
	구미시	2	10	-	10	
	경산시	3	9	3	9	
	의성군	-	27	-	27	
	성주군	-	20	-	20	
	합계	75	126	3	66	
경남	진주시	7	15	7	15	
	통영시	4	10	4	10	
	사천시	5	3	5	3	
	김해시	-	5	-	5	
	밀양시	4	10	5	8	
	거제시	2	4	2	4	
	의령군	-	8	-	9	
	함안군	-	8	-	8	
	창녕군	-	6	-	6	
	고성군	-	21	-	21	
	남해군	-	22	-	23	
	하동군	-	35	-	-	이월
	산청군	-	22	-	20	
	함양군	-	15	-	15	
	거창군	-	29	-	33	
	합천군	-	4	-	4	
	합계	22	217	23	184	
제주	제주시	12	17	12	17	
	서귀포시	2	5	3	7	
	합계	14	22	12	27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방자치단체별 빈집 정비사업 이월 및 반납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집행 결과	금액
합계			2,137
대전	서구	이월	60
	중구	이월	51
	대덕구	이월	10
울산	남구	이월	80
	동구	이월	100
강원	태백시	이월	100
충북	제천시	이월	50
	옥천군	이월	55
	단양군	이월	35
전북	전주시	반납	219
	군산시	이월	171
	익산시	이월	420
	임실군	이월	74
	고창군	이월	98
전남	여수시	이월	105
	화순군	이월	35
	장흥군	이월	195
	보성군	이월	50
경북	포항시	이월	150
	안동시	이월	150
경남	하동군	이월	8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충청남도 및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외에도 자체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당초 사업계획을 상회하는 빈집 정비를 추진한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전액 이월하거나 반납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수요 및 집행역량을 보다 면밀히 반영한 보조금 배분을 통해 보조금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5회계연도부터 동 사업이 지역지원계정에서 지

역자율계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었고, 공공활용기간 조정 등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사업계획서 심사 시 '절차 추진 증빙자료'만을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사유지 빈집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전액 불용하거나 전액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국고보조금의 이월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03]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고, ①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

10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이월 승인 시 제17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월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⑥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②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및 ③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이월이 가능함.

□ 특히 빈집 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례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보조금 이월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의 이월을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경제실】

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액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은 각각 36.1%, 28.4% 미달하였고, 불교부단체 및 비수도권은 각각 69.4%, 25.9% 초과하는 등 계획 대비 차이를 보였으므로, 각 자치단체 유형별로 국비배분액이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인구감소지역에 국비가 원활하게 계획대로 배분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조원 중 9,999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00,000	-	-	-	1,000,000	999,969	5	26	1,150,000

□ 동 사업은 2018년도에 군산·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해 1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면서 시작되었고, 2019년도에는 884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그 규모가 1조 2,522억원까지 확대되었음.

그 이후에는 2022년 8,050억원, 2023년 3,522억원, 2024년 2,988억원으로 점차 규모가 축소되었다가 2025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000억원이 편성되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6,000억원이 증액편성되어 총 1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2025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각 지역의 유형별(불교부단체[104],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국비지원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국비지원액을 배분하여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등 상대적으로 인구 및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우대하였다는 점임.

104) 재정자립도가 높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지역유형별 국비지원율]

	자치단체 유형[1)]	국비지원율	지방비부담율
2025년 제1회 추경	일 반	2%	5%
	인구감소지역	5%	5%
2025년 제2회 추경	불교부단체	2%	5%
	수도권	5%	5%
	비수도권	8%	5%
	인구감소지역	10%	5%

주1) 각 자치단체 유형에 포함된 지역은 각각 서로 중복되지 않음

1.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당시 행정안전부의 계획임

자료: 행정안전부

나. 지역유형별 국비지원금 배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방안 수립 필요

□ 동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2025년에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지원비율을 수도권 등의 일반지역보다 높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였음.

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점(2025. 6.23.)을 기준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지역유형별 국비지원 실적을 보면, 일반지역에 2,249억 7,200만원(국비지원율: 2%), 인구감소지역에 1,450억 9,300만원(국비지원율: 5%)을 각각 지원하였음.

또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2025. 6.23.)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지역유형별 국비지원 계획을 보면, 불교부단체에 108억 7,700만원(국비지원율: 2%), 수도권에 1,206억 3,500만원(국비지원율: 5%), 비수도권에 3,156억 4,800만원(국비지원율: 8%), 인구감소지역에 1,528억 4,000만원(국비지원율: 10%)을 지원하는 것이었음.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지역유형별 국비배분계획]

(단위: 백만원)

(2025년 6월 23일 기준)	자치단체 유형	상품권 발행지원 규모(조원)	국비		지방비	
			지원액	지원율	부담액	부담율
2025년 제1회 추경집행액[1]	일 반	11.0	224,972	2%	562,430	5%
	인구감소지역	2.7	145,093	5%	145,093	5%
	합 계	13.7	370,065		707,523	
2025년 제2회 추경집행계획[2]	불교부단체	0.5	10,877	2%	27,193	5%
	수도권	2.4	120,635	5%	120,635	5%
	비수도권	4.0	315,648	8%	197,280	5%
	인구감소지역	1.5	152,840	10%	76,420	5%
	합계	8.4	600,000		421,528	

주: 1)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의 국비배분액은 2025년 6월23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당시 자치단체 유형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함
2)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당시 행정안전부의 계획임

자료: 행정안전부

□ 한편,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비지원에 대응하는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자치단체 유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5%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였음.

□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의 국비 집행실적을 보면, 불교부단체는 184억 2,300만, 수도권은 864억 1,400만원, 비수도권은 3,975억원, 인구감소지역은 976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음. 이는 불교부단체와 비수도권은 계획액보다 각각 75억 4,600만원, 818억 5,200만원 초과한 것이고,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계획액보다 각각 342억 2,100만원, 551억 7,700만원 미달한 것임.

이처럼 인구감소지역 지원액이 당초 계획치에 미달하고, 불교부단체지역 지원액은 당초 계획치를 초과한 것은 지역유형별로 국비 배분액을 설정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지역유형별 국비배분실적]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유형	국비지원 계획액(A)	국비지원 실집행액(B)	B-A	(B-A)/A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집행실적 (5~8월)	일반지역	-	250,583	-	-
	인구감소지역	-	149,017	-	-
	합 계	-	399,600	-	-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계획대비 집행실적 (9~12월)	불교부단체	10,877	18,423	7,546	69.4
	수도권	120,635	86,414	△34,221	△28.4
	비수도권	315,648	397,500	81,852	25.9
	인구감소지역	152,840	97,663	△55,177	△36.1
	합 계	600,000	600,000	0	0

주:1)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정부안이 없이 국회심사 단계에서 증액된 것으로 추경예산안 제출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었음.

2) 제2회 추경예산에서 국비지원율·할인율이 인상되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달리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월부터는 1회 추경 집행잔액과 2회 추경의 교부조건을 동일하게 운영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은 국비 보조율의 차등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의 수요 우선 반영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배분계획 수립('25. 6.)과 수요조사 시점('25. 8.)간의 편차로 인한 지방정부의 지방비 매칭여력 및 수요 변동으로 당초 배분계획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입장임.

□ 제2회 추경예산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에는 당초 계획치보다 적은 금액이 배분되고, 불교부단체 및 비수도권에는 당초 계획치보다 많은 금액이 배분된 이유는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수요,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분포 및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특히, 제1회 추경예산으로 상당수의 인구감소지역이 국비지원을 받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제2회 추경예산의 인구감소지역의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재정여력이 높지 않은 인구감소지역 등에게는 발행액의 5%를 지방비로 매칭하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 유형별로 국비 배분액이 당초 계획과 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인구감소지역에 국비가 원활하게 계획대로 배분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4. 지방세정보화 추진 (1333-500)

○ 행정안전부는 위탁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업비가 사업지연으로 인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경우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취지에 맞게 위탁사업자가 사업비를 장기간 관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세정보화 추진’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표준 지방세입정보시스템(Wetax)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예산현액 53억 5,300만원 중 53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105]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방세 정보화 추진	5,353	–	±43[106]	–	5,353	5,342	-	11	5,051

105) 불용사유: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106) 운영비와 국내여비간 전용 및 세목조정 등

□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방세입 부과, 징수, 수납, 체납관리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기존 시스템 노후화 및 기능개선 요구에 따라 2019년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되었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은 ①지방세입 업무 및 인프라를 분석·설계하는 1단계 사업과 ②지방세입 업무 및 인프라를 개발하는 등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사업 및 ③구축된 시스템을 서울시 시스템과 통합·연계하는 3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2026년 7월말 기준 2단계 구축사업은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3단계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임.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구축 과정 (각 단계별 일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1차년도	2차년도	
기간 (예정)	’19.8.~’20.4.	’21.1.29.~’22.1.29.	’21.12.31.~’23.2.18.	‘25.6~’26.12.
사업자	삼성SDS 등	메타넷디지털 컨소시엄		-
주요 내용	지방세입 업무 및 인프라 분석·설계	지방세입 업무 및 인프라 개발	지방세입 업무 테스트, 데이터 이관, 시스템 개통	서울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체계 구축

자료: 행정안전부

나.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금액의 장기보유 지양 필요

□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2단계 구축사업 추진 중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기존의 서울시 지방세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음. 이에 따라 2022년 행정안전부는 3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탁기관인 한국지역개발원(KLID)에 위탁사업비 48억 7,800만원을 교부하였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의 수탁기관 교부현황]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행정안전부가 수탁기관에 교부한 금액	21,767	16,725	4,878	-	4,526	4,616
시스템 구축단계	2단계(1차) 구축비	2단계(2차) 구축비	3단계 구축비	-	운영 유지비	운영 유지비

자료: 행정안전부

□ 당초 행정안전부는 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을 동시에 완료할 계획으로 위탁업체 계약을 체결하였음.

서울시 통합을 위한 3단계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경과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2021년 수탁사업자(KLID)와 위탁협약을 체결(’21. 8.)하고, 발주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의 난이도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회 유찰되었고, 2022년에 수익성 부족을 보완하

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 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였으나 역시 2회 유찰되었음.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간 사업추진 방향에 서로 이견이 있어 협의과정이 지속되었고, 2024년 12월이 되어서야 ‘통합사업 변경 계획(안)’이 마련되고, ‘상호협력서’가 체결되었음.

결국, 2025년 7월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상호간 협의가 완료된 내용을 기초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조정이 이루어져 당초 사업비는 48억 7,800만원에서 33억 1,500만원으로 축소조정되었으며[107], 최종적으로 서울시 통합 3단계 구축 용역계약은 2025년 12월에 체결되고, 2026년부터에 구축사업이 시작되었음.

□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수탁사업자인 KLID는 2022년에 시스템 3단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48억 7,800만원)를 교부받고, 동 사업비를 4년간 이월하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2026년에 실집행한 셈이 되었음.

□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이 가능함. 이 사안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지출원인행위(계약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로 이월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108]

107) 이후 수탁사업자(KLID)는 변경 위탁협약에 따라 차액 15억 6,300만원을 반납(2025년 7월)하였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수탁사업자가 교부받은 사업비를 4개년도(2022~2026년)간 재이월하여 집행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조[109]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임.

□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위탁 사업 관리기준에 근거한 위탁협약에 따라 2022년 KLID에 위탁사업비를 교부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였고, 서울시와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실시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고, 차액(정산이자 포함)을 반납받는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임.

---

108)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109)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사업의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된 사업계획 비교]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사업범위
당초 (2021년)	4,878	대민창구와 내부 행정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통합(서울시 통합)
변경 (2025년)	3,315	서울시 행정시스템은 유지하면서 상호 간 정보 공유하여 위택스 통합 창구 구현(서울시 연계)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서울시와 통합하는 작업은 당초 2021년의 당초계획 시점과 2025년의 사업계획 변경 시점의 통합작업의 규모와 범위가 달라졌으므로, 4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장기간 유찰에 따라 위탁사업자가 보유한 사업비를 점검·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예산집행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탁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업비가 사업지연으로 인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경우 위탁사업자가 사업비를 장기간 관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5.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방규제개혁 추진’ 사업과 ‘지방규제개혁 공론화과정 지원’ 사업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방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관련 예산액 1억 4,300만원 중 7,600만원이 불용되고, 상위 실행계획의 미수립을 이유로 연구용역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러한 예산 집행은 재정 운용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지역경제 우수정책을 발굴·확산하고,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지방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생활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38억 1,900만원 중 36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경제활성화	3,819	3,819	-	-	-	3,819	3,616	-	203	652
정책추진 보조요원	85	85	-	-	-	85	83	-	2	95
지역경제정책 활성화	183	183	-	-	-	183	163	-	20	159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 추진	3,117	3,117	-	-	-	3,117	3,108	-	9	57
지방규제개혁 추진	**137**	**137**	**-**	**-**	**-**	**137**	**93**	**-**	**44**	**87**
지방규제개혁공론화 과정 지원	**297**	**297**	**-**	**-**	**-**	**297**	**170**	**-**	**127**	**254**

※자료: 행정안전부

나. 예산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활성화’의 내역사업으로 ‘지방규제개혁 추진’ 사업과 ‘지방규제개혁 공론화과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방규제개혁 추진’ 사업은 지역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검토·심의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려는 사업이며, ‘지방규제개혁 공론화과정 지원’ 사업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여 규제합리화 과정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려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규제개혁 추진’ 사업의 예산현액 1억 3,700만원 중 9,3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지방규제개혁 공론화과정 지원’ 사업의 예산현액 2억 9,7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음.

[‘지방규제개혁 추진 및 지방규제개혁공론화과정 지원’ 내역사업 개요]

□ **지방규제개혁 추진**

○ **(사업내용)** 지자체의 건의 과제에 대한 현장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검토·심의를 위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

○ **(사업목적)** 지역현장의 규제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 확산, 규제 담당자 규제역량 강화 등 지원

○ **(집행내역)** ’24년1억 3,300만원→ ’25년9,300만원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24년 집행액	2025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지방규제개혁 추진	133	137	93	44

규제개선 토론회,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등 운영비	75	75	62	13
규제개선 토론회 등 임차료	17	18	5	13
규제개혁 체감도 설문조사 용역비	5	5	5	-
규제사례 발굴 및 현지점검 등 여비	30	33	15	18
규제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업무추진	6	6	6	-

□ **지방규제개혁공론화과정 지원**

○ **(사업내용)** 지방규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면서 규제개혁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 과제 발굴 및 정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사업목적)** 주민 참여 확대, 전문 조사기관·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합리화의 성과 제고

○ **(집행내역)** '24년2억 4,400만원→ '25년1억 7,000만원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24년 집행액	2025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지방규제개혁공론화과정 지원	244	297	170	127
지방규제합리화 공론화과정 등 운영비	67	68	68	-
공론화 지원을 위한 행사장소 등 임차료	10	20	-	20
지방규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용역비	99	100	99	1
지방규제혁신 관련 토론회 개최 용역비	18	50	-	50
공론화과정 지원 해외사례 조사	-	6	-	6
전문가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3	3	3	-
지방규제합리화 공론화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연구용역비	48	50	-	50

※ 자료 :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2025회계연도 '지방규제개혁 추진' 사업과 '지방규제개혁 공론화과정 지원' 사업의 예산현액 총액 4억 3,400만원 중 1억 7,100만원의 불용액(불용률 39.4%)이 발생하였음.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110]의 구성 지연에 따른 운영비, 토론회

110) 지방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전문위원회임.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

개최 용역비, 임차료 등 약 1억원이 불용되고, 지방규제합리화 공론화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연구용역이 추진되지 않아 해당 예산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임기 만료('25.4월) 이후 새 정부 출범 및 전문성을 갖춘 위원 위촉 등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동 위원회 재구성('26.2월)이 지연되어 관련 예산 1억원을 불용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25.9월) 및 국조실의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26.4월)에 따른 연구용역 과제 적기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정책연구비(260-01목) 5,000만원을 미집행하였다는 설명임.

[2025회계연도 주요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비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
지방규제혁신 위원회 관련	위원회 운영비	일반수용비 (210-01)	75	62	13	제2기 지방규제개혁 위원회 미구성
	토론회 개최 용역비	일반용역비 (210-14)	50	-	50	
	위원회·토론회 등 개최 임차료	임차료 (210-07)	18	5	13	
	소계		143	67	76	
연구용역 관련	지방규제합리화 연구용역	정책연구비 (260-02)	50	-	50	새 정부 국정과제 미확정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국무조정실 훈령)

제18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를 둔다.

4.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예산 불용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예산 미집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음.

□ 첫째,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행정안전부 훈령)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며[111], 2025회계연도 예산 또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12번 개최하는 전제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는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했어야 함.

□ 특히, 2025년 5월 제1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상 가능한 사안으로[112], 2023년 위원회 구성이 약 5개월 소요된 점 등을 감안하면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어야 했음.

---

111)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12)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민간위원은 지방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최근 3개년('23~'25년)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연도	일자	장소	회차	참석인원
2023 (8회)	5.18.	서울	1차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
	6.8.	서울	2차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5명
	7.13.	서울	3차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3명
	8.17.	서울	4차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4명
	9.14~20.	서면	5차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4명
	10.12.	서울	6차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5명
	11.9.	서울	7차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2명
	12.14.	서울	8차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2명
2024 (11회)	2.16.	서울	9차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
	3.22.	서울	10차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4명
	4.19.	서울	11차	민간위원 6명, 정부위원 5명
	5.31.	서울	12차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5명
	6.28.	전주	13차	민간위원 6명, 정부위원 3명
	7.19.	서울	14차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5명
	8.14.	서울	15차	민간위원 5명, 정부위원 5명
	9.26.	서울	16차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3명
	10.18.	서울	17차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3명
	11.28.	제주	18차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2명
	12.20.	서울	19차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5명
2025 (3회)	2.21.	서울	20차	민간위원 6명, 정부위원 3명
	3.21.	서울	21차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3명
	4.18.	서울	22차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5명

※ 주) 이는 제1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으로,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2026년 2월에 구성됨
자료 : 행정안전부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매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과 10월 2번의 토론회를 실시하며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일부 계획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Ⅳ. 향후 주요일정

○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25.2월~)
○ 지자체 규제혁신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25.3월~)
○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행안부 제출('25.상·하반기)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5.9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중앙부처 소관 규제 해소													
규제 발굴	지자체		정기 건의과제 상반기 제출 (중단·지연 투자사업 과제 포함)					정기 건의과제 하반기 제출 (중단·지연 투자사업 과제 포함)					
	직능단체			간담회·현장방문 등(매월)									
	국민제안					공모 추진							
규제해소		지방규제혁신위원회(매월)											
						토론회					토론회		
▸ 자치법규 내 규제 정비													
계획수립			민생규제, 그림자규제 정비 추진										
이행점검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등(매월)								
성과평가												성과평가	

※ 자료 :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일부 발췌

□ 둘째,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등의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연구용역비를 불용하였다고 하나, 2025년 2월 규제정비 종합계획[113]과 지방규제혁신

113)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구체적인 추진목표 및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계획에 기반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연내 예산을 집행하였어야 함.

□ 특히, 최근 5년간 정책연구비 집행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연구용역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연내 예산 집행을 위해 최소한의 행정 절차와 기간을 고려하여 상반기 내에 용역에 착수해야 했음.

[최근 5개년('21～'25년) 정책연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명
2021년	50	45	5	'21.5.28.	'21.5.28.~9.24.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연구
2022년	50	42	8	'22.6.7.	'22.6.7.~12.6.	규제혁신 건의과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규제발굴 전략수립
2023년	50	45	5	'23.8.10.	'23.8.10.~12.7.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2024년	50	48	2	'24.5.31.	'24.5.31.~11.26.	지방규제혁신 전략 방안
2025년	50	-	50	미집행		

※ 자료 : 행정안전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수립 시기나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국정과제 및 상위 계획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유로 예산 집행을 지연하다가 임의로 불용 처리한 것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편성 취지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즉, 이와 같이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예산을 미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예산을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 향후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와 같은 예산 미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6. 민생회복소비쿠폰(1350-301)

○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은 사업에 대한 다각도 검토 없이 사업을 시급히 추진하는 것에 집중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용·불용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으로 해당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재정 운용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가 현금 지원성 사업을 추진할 때 마다, 관행적으로 과거의 예산 편성 방식을 답습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 전용 및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사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경제성 분석에 치중된 연구용역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교부한 국고보조금이 2026회계연도 내 반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금 반납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2조 1,708억 6,700만원 중 28억 7,400만원을 이·전용한 뒤 12조 1,708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40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민생회복소비쿠폰	-	12,170,867	-	±2,874	-	12,170,867	12,126,645	182	44,040	-
민생회복소비쿠폰	-	12,170,867	-	±2,874	-	12,170,867	12,126,645	182	44,040	-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소득 및 거주 지역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지급하였는데, 1차적으로 차상위계층 이상의 국민들에게 15만원,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에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 40만원을 지급하면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5만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2차적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10만원을 추가지급하였음. 이에 따라 소득·거주지역에 따라 총 지급액은 1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차등화 되었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민생경제 회복 목적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지원형태)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지원율 : 서울75% 그 외90%)

○ **(집행내역) 12조 1,266억 4,500만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2조 769억 3,100만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운영)** 상품권 발행, 시스템 구축 등 497억 1,400만원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택1

○ **(사용기한)** 1·2차 모두 2025.11.30.까지

□ **구체적 지급방식**

○ 1차적으로 **전국민 대상** 지급 **후**, 고소득자 제외 **차등 지급**

- **(1차)** 전국민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 **(2차)** 상위 10% 선별·제외 후 10만원 지급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84개 시·군** 주민 대상 **2만원 추가 지급**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남구, 서구) 등 5개구(58.8만명) 제외

구분	1차지급				2차지급		총 지급액
	수도권	비수도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① 소득 상위 10%	15만원	+3만원	+5만원	+	-	=	15만원
② 소득 상위10%~차상위계층					10만원		25~30만원
③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30만원						40~45만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50~55만원
합계							15~55만원

※ 자료 :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나. 사업계획의 불충분한 검토로 인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집중하여 사업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의 전용 및 불용을 초래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당초 정보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구축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HW와 SW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430-01목) 75억 4,900만원[114], 시스템 개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기 위한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14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115].

□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을 구축[116]하고 폐기한 뒤 재구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자산취득비 중 28억 7,400만원을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으로 전용하여 25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114)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20년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개발하였던 지급 시스템은 사업 종료 후 자체 폐기하였고, 당초 예산 계상 당시 민간 클라우드는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HW 및 SW를 구매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입안하였음.

115) 구체적으로, 이는 새올시스템 AP개발비 2억 8,100만원, 암호와 및 연계 솔루션 예산 4억 8,300만원, DB 구축비용 5억 2,300만원, 유지관리 비용 2억 300만원임.

1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 당시 시스템 구축 비용이 일회용 예산인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 회의록 참조).

[2025회계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지급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 세부내역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874	2,874	2,546	328	민간클라우드 이용비
민간위탁사업비(320-02)	1,490	-	1,490	1,490	-	시스템 구축 위탁 비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산취득비(430-01)	7,549	△2,874	4,705	-	4,705	당초HW·SW 구매 비용 → 최종전용 후 잔액 불용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민간 클라우드는 이용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2025.6.1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민간클라우드(PPP존)가 국가정보원 '상' 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하여 예산 집행 단계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통한 신속한 시스템 구축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다는 설명임.

[2025년도 민간클라우드 이용 관련 주요 추진경과]

추진 일자		추진 내용
2025	06.19.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 민간클라우드 국정원 보안검증 통과로 활용 가능
	06.2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07.0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
		민간클라우드 이용 개시(계약기간 ~'25.12.31.)
	07.0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국무회의 의결)
	07.17.	민간클라우드 이용 계약 체결
	08.07.	예산 전용 후 사용료 납부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유사한 현금 지원성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기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한 뒤 재구축하는 것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점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 정책환경이 변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음.

□ 특히,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이 중앙관서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운영 시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도입·전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으로 보임[117].

□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확정('25.7.5.) 이전 민간클라우드 이용을 개시('25.7.4.)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예산 제출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했다면 예산 전용 및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 예산의 전용은 「국가재정법」[118]에 따라 허용되나, 예산 확정 직후 임의로 집행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나아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예산 집행의 사전 절차를 개시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재정 운용의 민주성을 훼손한 것임.

□ 향후 행정안전부는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에 매몰되기보다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세밀하게 분석

---

117)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p47
□ 중앙관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요구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전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디지털서비스 서비스 이용규모와 향후 변동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요구
*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도입·전환 고려

118) 구체적으로, 예산의 전용은 예산이 정한 각 세항(단위사업)·목 등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세출예산전용권 위임범위" 내에서는 부처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함. 이에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산의 이·전용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체전용권 위임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예산 편성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전용이나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함.

다.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반복 발생 문제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유사한 현금 지원성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과거의 예산 편성 방식을 답습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전용 및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에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2036-500)’ 사업에서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2036-503)’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8억 4,700만원을 전용한 뒤,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이 직접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뒤 폐기하였음.

□ 이후,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추진 시에는 전년도 사용하였던 시스템이 폐기되어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했는데, 지역정보개발원(KLID)에 시스템 개발·구축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였음.

□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전된(될)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신규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의 증설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예산 중 HW 및 시스템 SW

구입 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중앙관서와 협의 후 자체 예산안에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신규 HW에 탑재되는 개발SW를 이관하기 위한 예산, 기타 SW 구입 및 AP개발 예산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HW 및 SW 예산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어야 했음.

□ 그러나, 이러한 변경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예산을 전용하여 보안SW 사용료 납입 비용 등을 집행하고, HW·SW 취득을 위한 예산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재배정한 뒤 집행하여 시스템 개발은 민간인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HW·SW 취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추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였음.

□ 2025년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 또한 기존 정보시스템이 폐기되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 계획대로라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HW·SW 취득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추진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자산취득비 75억 4,900만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함.

□ 그럼에도 행정안전부는 과거의 실제 집행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2021년 예산안 제출 당시와 같은 구조로 자산취득비 및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을 계상하였는데[119], 이후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

119) 한편,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자

지 않고 민간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자산취득비 예산 75억 4,900만원이 불필요해졌고, 이를 일부 전용하여 민간클라우드 사용료로 집행하였음.

□ 즉, 행정안전부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자산취득비를 전용하여 일회성 시스템을 구축·폐기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추진 방식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해 또다시 예산을 전용하고 재배정하였으며, 2025년‘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에도 직전 사업의 예산 편성을 답습하여 유사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행태를 반복하였음.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세부내역	구축방식
	비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자산취득비	3,847	3,810	37	시스템개발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시스템 개발·구축 후 폐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1년)	공공요금및제세	-	32	518	보안SW 사용료 납입	역할 분담 NIRS : HW·SW 취득 KLID : 시스템 구축
	민간위탁사업비	973	973	-	KLID 구축비	
	자산취득비	6,789	5,695	1031[20]	HW·SW 취득비	
민생회복소비쿠폰 (2025년)	공공요금및제세	-	2,546	328	민간클라우드 사용료	당초 역할 분담 NIRS : HW·SW 취득 KLID : 시스템 구축 → 최종 민간클라우드 활용 및 민간위탁(KLID)

산취득비 일부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후 나머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예산을 재배정하였고, 10.9억원의 예산은 불용이 예상되어 타 사업으로 전용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에 2021년 추경예산과 동일한 형태(내역 및 비목)로 11.6% 이상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므로 규모와 편성방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분석」, 2025, pp299-301).

(단위: 백만원)

구분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세부내역	구축방식
	비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민간위탁사업비	1,490	1,490	-	KLID 구축비	
	자산취득비	7,549	-	4,705	민간클라우드 활용으로 불용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사업 특성상 긴급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 그러나, 대규모 현금 지원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것보다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에 집중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이처럼 유사 사업 추진 시 유사한 형태의 예산 편성·집행이 반복되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향후 행정안전부는 과거 집행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환류체계(Feedback System)를 구축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개별 사업 여건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20) 이는 행정안전부 결산서상 금액으로 실제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재배정되어 약 54억원이 집행되었음.

라.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연구용역 예산 편성 필요

□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은 사업 추진 기간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예산이 2025회계연도 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수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5.7.5.확정)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일반연구비(260-01목)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회계연도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1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연구용역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	12,170,867	12,170,867	12,126,645	182	44,040
일반연구비(260-01)	-	200	200	-	182	18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25.6.23.) 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연내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구용역을 위한 데이터 분석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지급이 종료되는 2025년 11월 말 이후에나 가능하여 2025년 11월 20일 체결 후 과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 조치하였다는 설명임.

□ 해당 예산이 이월된 경위를 살펴보면, 2025년 10월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최초 공고가 이루어졌고, 2025년 11월 7일 개찰하여 2025년 11월 20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구용역 기간이 120일로 설정되면서 연도 내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수 없어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연구용역 관련 주요 추진 경과]

추진 일자		추진 내용
2025	07.0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국무회의 의결)
	07.21.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1차 지급 실시
	10.27.	조달청 나라장터 내 공고 게시
	11.07.	입찰 절차 개시
	11.20.	용역계약 체결
	11.30.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 만료
2026	04.24.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제출

※자료: 행정안전부

□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명시이월비,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상적 경비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월이 허용됨.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이월이 가능한 사유]

구분	사유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손실보상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 예산의 경우 2025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이 11월 말에 종료된 이후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2026년 6월에 제출하면서 소비쿠폰 또한 과거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사용기한을 설정할 계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과거 유사 사업의 집행 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연내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임.

[과거 유사 사업의 집행기간]

구분	예산확정일 (A)	신청·지급 개시일 (B)	사용만료일 (C)	소요기간	
				B-A	C-B
긴급재난 지원금 (2020)	2020.04.30.	2020.05.11.	2020.08.31.	만 12일	만 112일

구분		예산확정일 (A)	신청·지급 개시일 (B)	사용만료일 (C)	소요기간	
					B-A	C-B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1)		2021.07.24.	2021.09.06.	2021.12.31.	만 45일	만 11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	1차	2025.07.05.	2025.07.21.	2025.11.30.	만 16일	만 131일
	2차		2025.09.22.		만 80일	만 69일

※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이처럼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했더라면 연내 연구용역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안전부가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액 미집행 및 이월액이 발생하여 예산 집행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음.

□ 향후 행정안전부는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에 매몰되어 불필요한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한 환류체계 마련 필요

□ 행정안전부는 2025회계연도에 동 사업의 연구용역비 예산을 집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예산 2억원 중 1억 8,2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2026회계연도에 전액 집행하였음. 구체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연구원은 2026.4.24.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는 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집중되었는데, 13.52조원 지급으로 약 5.86조원의 순매출이 증대되고 연 매출액 30억 이하 가맹점에서 100만원 대비 35~45만원의 추가 소비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득기준이 낮을수록 높은 추가 소비 효과가 나타나며 음식점, 종합소매 등 생활밀착형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높게 나타났음. 아울러, 소비쿠폰 지급 이후 산업생산·소비자심리지수 등 거시경제지표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물가 수준을 크게 자극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연구용역 결과 정리]

구분	주요 결론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및 **경기 정상화** 효과 - **(순소비 창출효과)** 100만원 집행 시 연 매출액 30억 이하 가맹점에서 35~45만원 추가 소비 효과 발생 - **(순매출 증대)** 13.52조원 지급으로 5.86조원의 순매출 증대 - **(경기정상화)** 집행기간(7~11월) 중 매출 회복액 5.86조원의 정상화율은 106.4~234.5%로 추정 ○ **소비자 지출 행태** 및 **계층별 특성** - **(업종별 효과)** 순소비 증가분의 49.6% 음식점·종합소매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집중 - **(지역별 효과)** 중견 규모의 생활밀착형 상권 발달 지역·주거 밀집 지역에서 매출 증대 효과 높음 - **(계층별 효과)** 소득기준이 낮을수록 높은 추가 소비 효과 → 중위소득 이상 25.5%, 중위소득 미만 53.2%, 취약계층 72.6% ○ **거시경제** 파급 및 **물가** 영향 - **(거시경제)** 생산·소비자심리지수 등 지표 3개월간 유의미한 상승 - **(물가영향)** 소비 증가에 따른 유의미한 소비자 물가 상승 없음
정책 설계의 적절성	○ **소비기한** 및 **사용처 설정**의 효과 - 즉각적인 소비 및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유도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으로 소비를 집중 ○ **정책 목적** - 단기 소득 보전을 넘어, 선제적 재정 개입으로 과거 충격이 영구적 손실을 초래하는 이력효과(Hysteresis) 예방 - 단, 재정 지출로 인한 소득 재분배에 따른 추가 부작용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편익 함께 고려 필요

※ 자료 : 장우현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6.04.24. 참조

□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현금 지원성 사업이 실시될 때마다 지급 대상(보편·선별)의 적정성, 선별기준에 따른 형평성, 소득 분위 선별

방식의 적합성, 국비·지방비 부담률 등에 대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만 집중한 연구용역만 수행하고 있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현금 지원성 사업에 대한 국회의 지적사항]

<table>
<tr><th>구분</th><th>행정안전위원회</th><th>예산결산특별위원회</th><th>국회 예산정책처</th></tr>
<tr><td rowspan="5">긴급재난 지원금 (2020)</td><td colspan="3">**선별지급**의 **형평성** 문제 : 전국민 지급 대비 높은 행정·사회적 비용 소요</td></tr>
<tr><td colspan="3">**선별기준**의 합리성 : 소득 상위 70%의 적정성 및 건강보험료 기준의 한계</td></tr>
<tr><td colspan="2">**지급 수단**(상품권·선불카드 등)의 적절성 : 현금지급 대비 효과성, 지급수단별 정책 효과</td><td rowspan="3"></td></tr>
<tr><td>**사용처 제한**의 적절성</td><td>정부·지자체 **중복 지원** 문제</td></tr>
<tr><td></td><td>국가·**지방** 간 **재원 분담**</td></tr>
<tr><td rowspan="5">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1)</td><td colspan="3">**선별지급**의 **형평성** 문제 : 전국민 지급 대비 높은 행정·사회적 비용 소요</td></tr>
<tr><td colspan="3">**선별기준**의 합리성 : 소득 상위 70%의 적정성 및 건강보험료 기준의 한계</td></tr>
<tr><td colspan="3">**지급 수단**(상품권·선불카드 등) 및 **사용처**의 적절성 : 현금지급 대비 효과성, 지급수단별 정책 효과 고려 필요</td></tr>
<tr><td colspan="3">국가·**지방** 간 **재원 분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고려 필요</td></tr>
<tr><td colspan="2">'20년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의 효과성 분석 필요</td><td>지급기준(개인·가구) 적정성</td></tr>
<tr><td rowspan="5">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td><td>**선별지급**의 **형평성** 문제</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선별기준**의 합리성 : 소득 상위 70%의 적정성 및 건강보험료 기준의 한계</td></tr>
<tr><td colspan="3">**지급 수단**(상품권·선불카드 등) 및 **사용처**의 적절성 : 현금지급 대비 효과성, 지급수단별 정책 효과 고려 필요</td></tr>
<tr><td colspan="3">국가·**지방** 간 **재원 분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고려 필요</td></tr>
<tr><td colspan="2">정책목표 달성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td><td>적정 **사용기한** 설정 필요</td></tr>
</table>

주) 역대 지적사항 중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항만 발췌하였음
※ 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참조

□ 2026년 완료된 연구용역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미시적·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121], 그간 예산 심의와 집행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지급 기준의 적정성, 지방재정 부담 등의 핵심 현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과거 유사 사업의 성과분석 현황]

구분	예산액	집행액	수행기관	연구결과	성과분석 내용
긴급재난 지원금 (2020)	150	147	한국개발연구원 (KDI)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 효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1)	150	147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	200	182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재정 지출의 경제적 효과

※ 자료 : 행정안전부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된 단일 년도 사업이나, 과거 이와 유사한 성격의 현금 지원성 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2020년 제2회 추경)'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021년 제2회 추경)'가 시행된 적 있으므로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계속 사업의 성격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음.

121) 본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차등 지급 및 쿠폰 설계의 적합성, 선별에 대한 정책적 오해 해소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개략적인 검토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경제적 효과 분석에 치중됨

□ 또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도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명목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실시하였음.

[유사 현금 지원성 사업과의 비교]

구분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25년 제2회 추경)	고유가 피해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20년 제2회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1년 제2회 추경)		
지급대상	**전체 가구** (2,171만 가구)	소득하위 **88% 가구** (1,994.3만 가구)	**전 국민** (5,060만명)	소득하위 **70%** (3,256만명)
지급단가	가구원 수 비례 **차등**지급 ※ 40~100만원	1인당 **25만원** ※ 저소득층 추가 지급	1인당 **15~55만원** ※ 소득·지역 기준 차등지급	1인당 **10~60만원** ※ 소득·지역 기준 차등지급
지급시기	'20년 5월	'21년 9~10월	(1차) '25년 7월 (2차) '25년 9월	**미정**
사용기한	'20년 8월말 (최대 **4개월** 미만)	'21년 12월말 (최대 **4개월** 미만)	'25년 11월말 (**1~4개월** 미만)	'26년 8월말 (최대 **4개월** 미만)
지급단위	**세대주** 지급	**개인** 지급	**개인** 지급	**개인** 지급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택1 (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취약가구 현금 지급)			
재정소요	14.3조원	11.0조원	13.9조원	6.1조원
국비	12.2조원	8.6조원	12.2조원	4.8조원
지방비	2.1조원	2.4조원	1.8조원	1.3조원

※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Ⅱ」, 2020.12., 한국개발연구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22.6.,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유사 사업의 예산 심사 및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쟁점들이 동 사업의 심사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행정안전부가 그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과 환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성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시사함.

□ 이처럼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한 환류 없이 상태에서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경제적 효과 분석에 집중된 연구용역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안 심의 때마다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어 정책적 진전없는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되어 예산 심의 및 집행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음.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실시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경우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당초 2억원이던 연구용역 예산이 5억원으로 증액된 만큼, 행정안전부는 해당 예산을 통해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그간 유사 사업의 집행 실적,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를 비롯한 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계(Feedback System)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정산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노력 필요

□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은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75%의 보조율,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90%의 보조율이 설정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2조 1,605억 2,2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비목으로 편성하여 그중 12조 1,215억 4,900만원을 교부하고(교부율 99.7%) 389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음[122)123)].

□ 그런데, 동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2026년 7월 30일 기준 아직 국고보조금에 대한 수납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3개월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후 이를 심사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124)].

---

122) 개별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금 지급 및 집행 현황은 후단의 참고자료 참조

123) 한편,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교부액 중 실집행액은 11조 8,411억 6,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9억 9,400만원임

124) **「보조금법」**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

이후,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집행잔액·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야 함[125].

□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예산처공고)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받도록 하고 있음[126].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정산 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30일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고, 실적보고서 중 정정할 부분 등을 심사하여 2026년 7월 중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여 2026년 12월 중순까지 정산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5) **「보조금법」**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반납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예산에 계상되어야함. 이에 해당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므로 추후 수납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과거 긴급재난지원금(2020년)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021년) 사업 또한 법정기한(2021.12.31. 및 2022.12.31.)까지 국고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역시 반납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유사 현금 지원성 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 현황]

사업명	정산보고서 제출일	정산고지서 발급일	반납 완료일	정산기한 준수 지자체 수	
				준수	미준수
긴급재난지원금	2021.3.31.	2021.11.23.	(대전) 2021.11.23. (서울) 2022.11.30.	12	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2.3.30.	2022.8.2.	(제주) 2022.09.20. (서울) 2024.01.05.	12	5
민생회복 소비쿠폰	'26.3.30.	2026.7월말 예정	-	-	

주1) 반납 완료일의 경우 가장 빠르게 수납이 완료된 지자체와 늦게 완료된 지자체임
주2)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산기한은 2021.12.3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정산기한은 2022.12.31. 이었음
※ 자료 : 행정안전부

□ 향후 행정안전부는 정산 고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반영 과정에서 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차질 없이 전액 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교부액 및 실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서울특별시	1,698,890	1,648,897	49,994
부산광역시	852,291	835,259	17,033
대구광역시	616,910	605,743	11,167
인천광역시	716,619	701,262	15,357
광주광역시	367,959	355,432	12,527
대전광역시	371,376	363,671	7,704
울산광역시	277,223	272,451	4,772
세종특별자치시	97,310	95,424	1,886
경기도	3,081,333	3,006,614	74,719
강원특별자치도	403,614	394,767	8,848
충청북도	419,202	410,437	8,765
충청남도	563,508	550,323	13,185
전북특별자치도	470,778	460,230	10,547
전라남도	483,027	474,523	8,504
경상북도	678,213	663,238	14,975
경상남도	851,007	834,434	16,573
제주특별자치도	172,289	168,461	3,829
합계	12,121,549	11,841,165	280,384

※ 자료 : 행정안전부

참고 **지방자치단체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세부)**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명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합계		12,121,549	11,841,165	280,384
서울특별시	소계	1,698,890	1,648,897	49,994
서울특별시	본청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24,473	23,318	1,155
서울특별시	중구	21,641	20,714	926
서울특별시	용산구	34,656	33,068	1,588
서울특별시	성동구	48,203	46,630	1,573
서울특별시	광진구	61,271	59,537	1,73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3,960	62,182	1,778
서울특별시	중랑구	74,704	73,149	1,554
서울특별시	성북구	78,343	76,380	1,964
서울특별시	강북구	56,487	55,131	1,357
서울특별시	도봉구	58,225	57,076	1,150
서울특별시	노원구	93,723	91,707	2,016
서울특별시	은평구	87,633	85,627	2,0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4,881	53,169	1,713
서울특별시	마포구	63,026	61,007	2,019
서울특별시	양천구	77,110	75,180	1,930
서울특별시	강서구	106,136	102,254	3,882
서울특별시	구로구	74,226	72,423	1,804
서울특별시	금천구	44,842	43,797	1,0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7,727	65,754	1,973
서울특별시	동작구	67,113	65,155	1,958
서울특별시	관악구	91,469	88,937	2,532
서울특별시	서초구	62,385	59,534	2,850
서울특별시	강남구	86,300	81,942	4,358
서울특별시	송파구	109,958	106,689	3,270
서울특별시	강동구	90,400	88,539	1,860
부산광역시	소계	852,291	835,259	17,033
부산광역시	본청	1,790	628	1,162
부산광역시	중구	10,342	10,049	292
부산광역시	서구	27,637	26,972	666

자치단체명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부산광역시	동구	23,540	22,983	557
부산광역시	영도구	28,584	27,959	6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95,486	93,790	1,697
부산광역시	동래구	69,801	68,669	1,132
부산광역시	남구	64,270	63,036	1,233
부산광역시	북구	70,762	69,615	1,14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94,343	92,307	2,036
부산광역시	사하구	78,224	76,922	1,302
부산광역시	금정구	54,082	53,074	1,007
부산광역시	강서구	36,462	35,869	593
부산광역시	연제구	54,427	53,546	882
부산광역시	수영구	43,583	42,668	915
부산광역시	사상구	52,808	51,794	1,014
부산광역시	기장군	46,151	45,378	773
대구광역시	소계	616,910	605,743	11,167
대구광역시	본청	937	745	191
대구광역시	중구	25,328	24,830	497
대구광역시	동구	90,013	88,335	1,678
대구광역시	서구	44,597	43,751	847
대구광역시	남구	37,636	36,924	712
대구광역시	북구	107,500	105,685	1,815
대구광역시	수성구	101,264	99,188	2,076
대구광역시	달서구	135,990	133,894	2,095
대구광역시	달성군	67,302	66,188	1,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6,343	6,202	141
인천광역시	소계	716,619	701,262	15,357
인천광역시	본청	43	-	43
인천광역시	중구	40,260	39,212	1,048
인천광역시	동구	13,710	13,439	27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00,671	98,535	2,136
인천광역시	연수구	88,208	86,273	1,935
인천광역시	남동구	115,667	113,183	2,484
인천광역시	부평구	118,291	115,825	2,465
인천광역시	계양구	65,982	64,754	1,228
인천광역시	서구	148,941	145,997	2,944
인천광역시	강화군	19,384	18,793	592
인천광역시	옹진군	5,463	5,253	210

자치단체명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광주광역시	소계	367,959	355,432	12,527
광주광역시	본청	-	-	-
광주광역시	동구	27,196	26,508	688
광주광역시	서구	71,836	70,471	1,365
광주광역시	남구	54,353	53,270	1,083
광주광역시	북구	112,006	104,197	7,809
광주광역시	광산구	102,569	100,986	1,583
대전광역시	소계	371,376	363,671	7,704
대전광역시	본청	32	32	-
대전광역시	동구	59,316	58,011	1,305
대전광역시	중구	59,136	57,739	1,397
대전광역시	서구	117,741	115,660	2,081
대전광역시	유성구	90,673	88,686	1,986
대전광역시	대덕구	44,479	43,544	935
울산광역시	소계	277,223	272,451	4,772
울산광역시	본청	-	-	-
울산광역시	중구	52,355	51,457	898
울산광역시	남구	76,048	74,671	1,377
울산광역시	동구	38,575	37,894	680
울산광역시	북구	54,170	53,444	726
울산광역시	울주군	56,075	54,985	1,09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97,310	95,424	1,886
경기도	소계	3,081,333	3,006,614	74,719
경기도	본청	-	-	-
경기도	수원시	262,682	256,652	6,030
경기도	성남시	192,982	187,250	5,732
경기도	의정부시	108,165	105,862	2,304
경기도	안양시	123,892	121,344	2,548
경기도	부천시	176,974	173,270	3,703
경기도	광명시	63,217	62,145	1,072
경기도	평택시	137,198	133,255	3,943
경기도	동두천시	21,517	21,015	503
경기도	안산시	147,266	144,163	3,103
경기도	고양시	236,037	230,174	5,863
경기도	과천시	16,146	15,595	551
경기도	구리시	42,212	41,209	1,004

자치단체명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경기도	남양주시	165,844	162,015	3,829
경기도	오산시	57,043	55,671	1,372
경기도	시흥시	120,970	118,246	2,724
경기도	군포시	57,595	56,386	1,209
경기도	의왕시	33,506	32,833	673
경기도	하남시	71,371	69,493	1,877
경기도	용인시	232,075	225,397	6,678
경기도	파주시	119,974	117,596	2,378
경기도	이천시	49,499	48,108	1,391
경기도	안성시	45,400	44,071	1,329
경기도	김포시	109,143	106,749	2,394
경기도	화성시	214,011	209,350	4,662
경기도	광주시	89,647	87,258	2,389
경기도	양주시	68,880	67,278	1,601
경기도	포천시	33,703	32,598	1,105
경기도	여주시	26,713	25,846	867
경기도	연천군	11,678	11,339	339
경기도	가평군	17,446	16,960	486
경기도	양평군	28,547	27,484	1,064
강원특별자치도	소계	403,614	394,767	8,848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74,441	73,167	1,27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94,040	92,233	1,80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54,301	53,289	1,01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2,985	22,443	54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10,767	10,484	28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1,193	20,667	52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17,465	16,968	49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18,403	17,940	46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12,655	12,321	33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10,216	9,978	23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10,937	10,575	36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9,414	9,123	29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11,261	11,016	24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6,355	6,091	26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5,799	5,706	94

자치단체명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8,090	7,936	15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7,588	7,351	23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7,707	7,481	226
충청북도	소계	419,202	410,437	8,765
충청북도	본청	-	-	-
충청북도	청주시	218,685	214,583	4,102
충청북도	충주시	54,414	52,939	1,475
충청북도	제천시	36,603	36,071	532
충청북도	보은군	8,677	8,395	282
충청북도	옥천군	13,822	13,568	254
충청북도	영동군	12,232	11,914	318
충청북도	증평군	9,857	9,620	237
충청북도	진천군	22,425	21,907	518
충청북도	괴산군	10,177	9,909	268
충청북도	음성군	24,665	24,051	614
충청북도	단양군	7,645	7,481	164
충청남도	소계	563,508	550,323	13,185
충청남도	본청	-	-	-
충청남도	천안시	168,192	164,826	3,366
충청남도	공주시	28,318	27,498	820
충청남도	보령시	26,277	25,613	664
충청남도	아산시	91,777	90,046	1,731
충청남도	서산시	44,259	43,205	1,054
충청남도	논산시	30,993	30,104	889
충청남도	계룡시	11,770	11,477	293
충청남도	당진시	44,203	43,031	1,172
충청남도	금산군	14,035	13,636	400
충청남도	부여군	16,938	16,444	494
충청남도	서천군	13,671	13,270	401
충청남도	청양군	8,242	7,968	274
충청남도	홍성군	26,158	25,463	694
충청남도	예산군	22,034	21,573	462
충청남도	태안군	16,640	16,169	471
전북특별자치도	소계	470,778	460,230	10,547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165,059	162,243	2,816

자치단체명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68,691	67,180	1,51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72,294	70,857	1,43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9,425	28,773	65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1,819	21,358	46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3,953	23,465	48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6,700	25,190	1,51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6,936	6,754	18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6,547	6,365	18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5,875	5,700	17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7,432	7,239	19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7,710	7,529	18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14,625	14,260	36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13,712	13,318	394
전라남도	소계	483,027	474,523	8,504
전라남도	본청	-	-	-
전라남도	목포시	56,314	55,241	1,073
전라남도	여수시	68,506	67,443	1,064
전라남도	순천시	70,795	69,888	906
전라남도	나주시	30,957	30,342	615
전라남도	광양시	39,606	38,882	724
전라남도	담양군	12,479	12,329	150
전라남도	곡성군	7,625	7,463	161
전라남도	구례군	6,850	6,577	273
전라남도	고흥군	17,458	17,177	281
전라남도	보성군	10,645	10,536	109
전라남도	화순군	17,100	16,518	582
전라남도	장흥군	9,957	9,738	220
전라남도	강진군	9,270	9,201	69
전라남도	해남군	18,050	17,775	275
전라남도	영암군	14,474	14,182	292
전라남도	무안군	24,439	24,321	118
전라남도	함평군	8,518	8,389	129
전라남도	영광군	15,055	14,665	390
전라남도	장성군	12,122	11,930	191
전라남도	완도군	13,274	12,918	356
전라남도	진도군	8,364	8,159	205

자치단체명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전라남도	신안군	11,169	10,847	322
경상북도	소계	678,213	663,238	14,975
경상북도	본청	-	-	-
경상북도	포항시	128,285	125,619	2,667
경상북도	경주시	63,836	62,353	1,483
경상북도	김천시	35,654	34,737	917
경상북도	안동시	43,794	43,024	770
경상북도	구미시	103,385	101,560	1,825
경상북도	영주시	28,077	27,537	540
경상북도	영천시	27,970	27,284	686
경상북도	상주시	25,856	25,140	716
경상북도	문경시	18,623	18,198	426
경상북도	경산시	69,894	68,523	1,371
경상북도	의성군	13,916	13,551	365
경상북도	청송군	6,748	6,560	187
경상북도	영양군	4,428	4,355	72
경상북도	영덕군	9,705	9,438	268
경상북도	청도군	11,440	11,088	352
경상북도	고령군	8,652	8,440	212
경상북도	성주군	11,639	11,341	298
경상북도	칠곡군	28,144	27,369	775
경상북도	예천군	14,313	14,065	248
경상북도	봉화군	8,154	7,995	159
경상북도	울진군	13,178	12,673	505
경상북도	울릉군	2,522	2,390	132
경상남도	소계	851,007	834,434	16,573
경상남도	본청	-	-	-
경상남도	창원시	256,764	252,047	4,717
경상남도	진주시	87,705	85,954	1,752
경상남도	통영시	31,869	31,103	766
경상남도	사천시	28,496	27,855	641
경상남도	김해시	139,237	136,740	2,497
경상남도	밀양시	28,420	27,801	618
경상남도	거제시	60,209	59,187	1,022
경상남도	양산시	94,262	92,854	1,408
경상남도	의령군	7,215	7,072	143

자치단체명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경상남도	함안군	16,501	16,046	455
경상남도	창녕군	15,923	15,618	305
경상남도	고성군	13,688	13,430	258
경상남도	남해군	11,286	11,050	237
경상남도	하동군	11,574	11,268	305
경상남도	산청군	9,428	9,093	334
경상남도	함양군	10,293	9,989	304
경상남도	거창군	16,825	16,489	336
경상남도	합천군	11,312	10,837	474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172,289	168,461	3,829

※ 자료 : 행정안전부

2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131-303)

○ 행정안전부는 향후 다년도 사업 종료시 단계적인 일몰 계획을 예산 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사업 종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연구용역의 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고용창출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4,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98억 9,700만원 중 168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853	19,853	44	-	-	19,897	16,832	-	3,065	-

나. 단계적 종료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종료 필요

□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 내 일자리와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은 지원방식에 따라 ① 미래 신산업, 지역뉴딜, 지역특화 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지역혁신형, ② 신규 창업과 창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기반대응형, ③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청년혁신활동가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에 기여하도록 하는 지역포용형, ④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정착지원형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다년도 사업으로 운영됨.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유형]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지역혁신형</th><th>상생기반
대응형</th><th>지역포용형</th><th>지역정착지원형</th></tr>
<tr><td colspan="2">대상</td><td colspan="4">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거주 원칙</td></tr>
<tr><td colspan="2">취창업
분야</td><td>지역경제구조 변화
대응, 미래
신산업·지역뉴딜
지역특화·혁신 연계
직무 분야 일자리</td><td>창업 청년
지원</td><td>사회적경제 연계
청년혁신활동가 육성
+ 지역사회 안전망
기여 분야</td><td>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단체</td></tr>
<tr><td colspan="2">기간</td><td>최대 3년</td><td>최대 3년</td><td>1년 이내</td><td>최대 3년</td></tr>
<tr><td colspan="2">내용</td><td>취업 지원(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정착 시 인센티브</td><td>신규창업 및
창업청년
성장 지원</td><td>취업 지원(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등)</td><td>취업 지원(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정착 시 인센티브</td></tr>
<tr><td colspan="2">금액</td><td>인건비 2,400만원
기타지원비 300만원</td><td>창업지원비
1,500만원
기타지원비
150만원</td><td>인건비(풀) 2,250만원
인건비(파트) 1,125만원
기타지원비 200만원</td><td>인건비 2,400만원
기타지원비 300만원</td></tr>
<tr><td colspan="2">국비
보조율</td><td>전국 50%
서울 40%
※ 기업부담분 20%</td><td>전국 50%</td><td>전국 40%
※ 기업부담분 10%</td><td>전국 50%
서울 30%
※ 기업부담분 20%</td></tr>
<tr><td rowspan="2">경감
범위</td><td>임금</td><td>기업부담분 중
10%까지 지방비 부담
조정 可</td><td rowspan="2">-</td><td>기업부담분 전액
지방비 부담 可</td><td>기업부담분 전액을
지방비 부담 조정 可</td></tr>
<tr><td>4대
보험</td><td>임금 부담 비율 외
별도 부담 필수</td><td>임금 부담 비율 외
별도 부담 필수</td><td>지방비 부담으로 기업
추가 지원 가능</td></tr>
</table>

※ 자료 : 「2024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 해당 사업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결과 실집행률 부진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성과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2025년부터 2년간 높은 수준으로 감축하여 2026년말 종료하도록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었고,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2026년 예산에는 국비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아 2025년 사업이 종료되었음.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일부 사업 유형의 경우 최대 3년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2024년 대체채용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2026년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신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2024년 대체채용을 통해 참여한 청년과 기업은 2026년까지 계속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취업 또는 창업을 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2025년에 종료되면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예산액 중 일부는 2026년도로 이월되었음.

[최근 3년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편성액		198,558	75,211	19,545
집행액		198,558	75,211	16,750
	실집행액	151,870	53,170	10,698
	이월액	37,047	17,699	5,004
	불용액	9,674	4,342	1,047

※ 자료 : 행정안전부

□ 이는 2026년도에 지출될 국비 예산액을 2025년도 세입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27]에 반하는 것임.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국회의 예산안·결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26년으로 이월된 예산의 경우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예산 집행의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2024년~2025년 간 예산을 감축한 뒤 2026년에 사업이 종료되도록 제시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다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연도별 예산 소요액을 산정하여 예산 당국과 사업의 일몰계획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다년도 사업 종료시 단계적인 일몰 계획을 예산 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

---

127)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 사업종료에 따른 연구비 불용 부적정

□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종료하면서 2025년 편성된 일반연구비 1억 2,900만원 중 1억 2,757만원을 불용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연구비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신규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2024년 말 발주된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에 대한 잔금 4,425만원(2024년 이월액)과 해당 연구용역 수수료 143만원을 지출하였음.

□ 그런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은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을 수정·보완하거나 향후 신규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음.

□ 특히 최근 청년 고용시장은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경기팽창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고 청년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소위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지방에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규 정책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또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기존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높지 않고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 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있어 사업 종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는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을 인정함.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종료 예정에 따라 2024년 성과분석 용역 당시 청년일자리 관련 신규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 분석방안 및 신규사업 모델(안)을 포함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한 측면이 있겠음.

□ 다만, 2024년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에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었다면, 2025년도 예산에는 관련 연구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종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연구용역의 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정부청사관리본부】

28. 인건비(청사)(7002-104)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방호직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으로 인해 현재 7·8급의 현원이 정원보다 과도하고, 9급 정원이 현원보다 많아 정·현원의 괴리가 크며, 이로 인해 2025회계연도 33억원의 예산을 이용 및 내역변경하는 등 반복적인 예산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 및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인건비(청사)' 사업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조직 운영을 위한 공무원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767억 7,000만원 중 764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인건비(청사)	73,568	73,568	-	3,202	-	76,770	76,422	-	348	80,765
인건비(청사)	73,568	73,568	-	3,202	-	76,770	76,422	-	348	80,765

※자료: 행정안전부

나.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 공무원 정원 및 예산 현실화 필요

□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청사관리본부 7·8급의 정원 대비 현원이 과도한 현상이 지속되어 반복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청사)' 사업의 비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수(110-01목) 비목은 예산액이 450억 7,100만원이었으나 33억원을 이·전용하여 예산현액이 483억 7,1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그중 482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타직보수(110-02목)의 경우 예산액 281억 3,300만원 중 9,800만원을 이·전용하여 예산현액이 280억 3,5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그중 279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9,3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연가보상비(110-05목)는 예산현액 3억 6,300만원 중 2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인건비(청사) 사업 비목별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인건비(청사)	73,568	73,568	-	3,202	-	76,770	76,422	-	348	80,765
보수(110-01)	**45,071**	**45,071**	**-**	**3,300**	**-**	**48,371**	**48,238**	**-**	**133**	**49,816**
기타직보수(110-02)	28,133	28,133	-	△98	-	28,035	27,943	-	93	30,554
연가보상비(110-05)	363	363	-	-	-	363	241	-	122	395

※자료: 행정안전부

□ 특히, 행정안전부는 2025회계연도 11월 이후 공무원 정·현원 직급 차이에 따른 보수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8억 3,500만원), 이북5도위원회(1억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1억 9,000만원), 대통령기록관(4억) 등의 인건비에서 총 15억 7,000만원을 내역변경하고,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사업의 고용부담금(110-03목) 예산에서 17억 3,000만원을 이용하여 총 33억원을 증액하여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인건비(청사) 내역사업으로의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11.12.)	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 (7002-102)	110-01	800	인건비(청사) (7002-104)	110-01	공무원 정현원 직급차이에 따른 보수 부족재원 확보
		110-05	20			
	인건비(이북) (7002-106)	110-01	95			
		110-02	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인건비 (7002-107)	110-01	180			
		110-05	10			
	인건비 (대통령기록관) (7002-102)	110-01	159			
		110-02	286			
		110-05	15			
이용 (2025.11.20.)	청사시설 관리및위탁 (2231-302)	110-03	1,730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재 청사본부의 방호직 공무원의 경우 지속적인 근속승진이 이루어져 7급 및 8급은 정원 대비 과다하고 9급은 정원 대비 현저히 불균형하여 연말에 예산변경을 통해 불가피하게 인건비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하였다는 설명임.

□ 구체적으로, 2025회계연도 청사관리본부 9급 공무원의 결원은 229명(결원율 74%)인데, 7급과 8급의 경우 현원이 정원대비 각각 108명, 96명 더 많음.

[최근 3개년('23~'25년) 청사관리본부 직급별 정·현원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정원(A)	현원(B)	결원(C=A-B)	결원율(C/A)
2025	고위공무원	5	4	1	20
	3~5급	86	92	△6	△7
	6급	118	117	1	1
	7급	128	236	**△108**	△84
	8급	72	168	**△96**	△133
	9급	311	82	**229**	**74**
	계	720	699	21	3
2024	고위공무원	5	3	2	40
	3~5급	86	87	△1	△1
	6급	118	121	△3	△3
	7급	128	225	**△97**	△76
	8급	72	181	**△109**	△151
	9급	311	98	**213**	**68**
	계	720	715	5	1
2023	고위공무원	5	5	-	0
	3~5급	86	81	5	6
	6급	119	134	△15	△13
	7급	125	201	**△76**	△61
	8급	72	167	**△95**	△132
	9급	312	104	**208**	67
	계	719	692	27	3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이러한 정·현원 간 차이 문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2024회계연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동 세부사업 내에서 연말('24.12.16.) 17억 1,0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고, 2025회계연도에는 총 33억원의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여 정·현원 간 차이가 본격화된 2024년 이후 행정안전부의 예산조정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3~2025년 인건비(청사) 사업 보수 비목 예산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조정액(A)	예산현액(B)	A/B
인건비(청사) (110-01목, 보수)	2023	46,104	△122	45,982	△0.3
	2024	44,714	1,710	46,424	3.7
	2025	45,071	3,300	48,371	6.8

주) '예산조정'은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등을 모두 포함한 조정금액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 특히, 2025회계연도에는 15억 7,000만원을 내역변경하는 것 외에 17억 3,000만원을 이용하였는데,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원칙적으로 예산의 이용을 금지하되,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128].

128) 「국가재정법」

□ 인건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인건비 부족액 집행을 위한 예산의 이용은 「국가재정법」에 반하지 않으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을 행정편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129]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예산의 조정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근속승진은 「공무원임용령」[130]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인사이동으로서 예산안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근속승진자가 발생한다는 점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이므로, 근속승진을 이유로 예산을 이용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30)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근속승진 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기간은 제31조제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방호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꾸준히 근속승진이 이루어져 정원과 현원이 괴리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나,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건비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은 2025년 대비 증액되어 이·전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 2026년도 ‘인건비(청사)’ 사업의 보수(110-01목) 비목 예산액은 2025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10.5%, 집행액 대비 약 3.2% 증액된 498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또한 현원을 반영한 예산은 아니며 7·8급 방호직 공무원이 꾸준히 근속승진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향후 행정안전부는 유관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정원과 이에 따른 인건비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연례적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9.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2431-303)

○ 터파기 공사 중 연약지반 보강, 공동수급체 법정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의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지연 없이 잔여 과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을 위한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제주4·3평화공원 내 희생자·유족 숙원사업 추진, 4·3전국민 바로알리기,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17억 9,200만원 중 116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9,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11,792	11,792	-	-	-	11,792	11,696	-	96	10,813

자료: 행정안전부

나.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의 내역사업인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부지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4·3트라우마치유센터 및 국제평화문화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신규등록되어 추진되고 있음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8 (7년)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 산 53-5번지 일원(제주4·3평화공원) ○ 사업내용 : 4·3트라우마치유센터 및 국제평화문화센터 구축 ○ 총사업비 : 286억원(국비 249억원, 지방비 37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동 사업은 당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9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될 계획이었고, 2024년의 경우 정부제출 예산안에 필요예산보다 적은 65억 4,000만원만 반영되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34억 6,000만원이 증액되기도 하였음.

□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 100억원에 2023년도 이월금액 26억 2,5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26억 2,500만원 중 60억 9,400만원만 집행되고, 65억 3,1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본예산 59억 8,0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액 65억 3,100만

원을 더한 125억 1,100만원 중 36억 2,600만원만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9.0%에 그치고 있음.

[2024~2025년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백만원, %)

구분	부처(행정안전부)		사업시행주체(제주특별자치도)						
연도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4	10,000	10,000	10,000	2,625	12,625	6,094	6,531	-	48.3
2025	5,980	5,980	5,980	6,531	12,511	3,626	8,885	-	29.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이와 같은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4년의 경우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및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사비가 이월되었고,

2025년에는 2월부터 5월까지 터파기 공사 중 단단한 암반층 출현 및 연약지반 보강 필요성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공정이 약 3개월간 지연되었고,[131] 2025년 9월 건축 시공사 공동수급체의 법정희생절차 개시로 공사가 일시중단된 후 2026년 2월 재개될 때까지 약 6개월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여 편성예산이 미집행되었다고 설명하였음.

131)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면공사를 위한 준비작업 중 예상치 못한 암석이나 연약지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거·보강하기 위한 추가작업이 필요해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5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공사 지연 내역]

공사 지연 기간	내역
2025.2.~2025.5.	토공사 중 암발생 및 연약지반 보강으로 공정 지연
2025.9.~2026.2.	건축 시공사 공동수급체의 법정회생절차 개시로 공사 일시중지 후 재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법정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공동수급체 지분율 변경 내역]

공종	업체명	대표	지분율(%)			비고
			당초	변경	잔여지분	
건축공사업	주식회사 D건설	김○○	51	51	51	대표사
건축공사업	H종합건설(주)	박○○	49	14.429	0	탈퇴
건축공사업	주식회사 H종합건설	이○○	0	34.571	49	신규

주: H종합건설이 법정회생절차에 돌입하며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으나, 그 전까지 공사용역에 참여하여 14.429%의 지분율이 인정되었고, 탈퇴 후 잔여지분은 없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사업기간 연장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총사업비 조정 중인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당초 2025년 완료 예정이던 사업이 2028년 상반기로 완료 시점이 늦춰졌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실집행 부진도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특히 공사 중 암반층 출현 등으로 인해 3개월의 공정지연이 이루어진 것은 예측 및 사전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나, 국가계약을 수주한 공사업체가 이후 법정회생절차에 돌입할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계약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해당 공사용역 적격심사결과 개요]

연번	대표회사	수행능력평가					입찰가격(배점:30.0)	자재인력(배점:14.0)	하도급(배점:12.0)	영업기간감점	합계	적격여부
		시공경험(배점:14.0)	기술능력(배점15.0)	경영상태(배점:15.0)	신인도(배점:±2.0)	계(배점:44.0)						
1	D건설	14.0	14.8251	14.1792	1.238	44.0	23.4	12.6	12.0	0.0	92.0	적격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해당 공사용역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 현황]

구분	반영비율	주식회사 D건설	H종합건설(주)
재무비율합산점수	0.3	34.3	22.7
신용등급평점	0.7	35(기업신용평가, BBB-)	35(기업신용평가, A-)
업체별최종점수	1	34.79	31.31

주: 재무비율합산점수는 각 업체별 부채비율, 순이익율, 현금흐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합계점수로, D건설에 비해 H건설의 점수가 낮았으나, 신용등급평점은 두 업체 모두 만점(35점)을 받았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따른 개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상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평가를 받았으며, 그 이후 공사업체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법정회생 등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항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계약 후 시공사의 공정 지연, 현장 운영 차질 등 위험 징후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 감리단, 시공사 간 점검 회의를 통해 공정 만회대책 수립, 잔여공사 추진방안 검토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임.

□ 다만, 현재 적격심사 기준이 국가계약을 수주한 지 1년 만에 법정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시공사를 배제하지 못했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보완 가능성에 대한 점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잔여 과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현재 적격심사 기준의 보완가능성에 대한 점검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30. 제주4·3 피해보상(보상금 등)(2431-306)

○ 제주4·3사건 피해보상금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및 타 사업으로의 과다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예산 편성 및 보상금 지급 업무 처리 활성화를 통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제주4·3 피해보상(보상금 등)'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명예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2,418억 7,700만원 중 418억 2,9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였고, 예산현액 2,000억 4,800만원 중 1,945억 8,300만원을 집행하여 54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제주4·3 피해보상 (보상금 등)	241,877	241,877	-	△41,829	-	200,048	194,583	-	5,465	200,015

자료: 행정안전부

나. 보상금 지급속도 제고 및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연례적인 집행부진 방지 필요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16조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132] 이에 근거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 및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13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3(지연 이자) ① 제16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위원회가 결정한 순서로 접수함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보상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신청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미지급 시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주4·3사건 보상금 사업 개요]

○ 보상금 지급 대상자: 제주4·3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주4·3사건 희생자 15,088명 ○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2022.6.1.~2026.12.31.): 6차로 나누어 신청 - 신청접수: 12,446명(보상금 신청대상 15,088명의 82.5%, 2025.12.31.기준) ○ 보상금 지급 결정: 8,782명 / 7,369억원(2025.12.31.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그런데, 2023년 100억원에 이어 2024년과 2025년 각각 288억원, 418억원의 보상금 예산이 미집행되어 타 사업으로 이·전용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2023~2025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023년	193,554	-	△10,000	183,554	183,548	-	6
	○ (이용) 6.27~7.27 호우,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부족에 따른 이용						
2024년	226,198	-	△28,800	197,398	197,398	-	-
	○ (이용) 7.8~7.19, 9.19~9.21 호우피해복구비 부족에 따른 이용						
2025년	241,877	-	△41,829	200,048	194,583	-	5,465
	○ (이용) 8.22, 11.19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부족재원 마련 ○ (이용) 11.20 기관 운영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2023년과 2024년 호우피해 복구비 부족에 따라 보상금 예산 중 일부금액의 이용이 이루어졌고, 2025년에도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미집행 금액을 이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였다는 것은 곧 편성취지에 입각한 예산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예산의 미집행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보상금 예산산출내역을 보면 보상금 최대 지급액인 9,000만원을 기준으로 연내 지급 대상자의 수를 산출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에는 지급계획 2,150명 대비 2,039명, 2024년에는 지급계획 2,496명 대비 2,178명, 2025년에는 지급계획 2,605명 대비 2,083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실제 지급인원이 계획인원보다 적어 예산 미집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2023~2025년도 보상금 예산산출내역 및 지급인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구 분				비고
	보상금 예산산출내역		집행내역		
	금액	산출근거	지급인원	집행액	
2023년	193,554	보상금 90백만원 × **2,150명** + 지연이자 90백만원 × 0.012 × 1/12 × 600명	**2,039명**	183,548	
2024년	226,198	보상금 90백만원 × **2,496명** + 지연이자 90백만원 × 0.012 × 7/12 × 2,500명	**2,178명**	197,398	
2025년	241,877	보상금 90백만원 × **2,605명** + 지연이자 90백만원 × 0.035 × 13/12 × 2,176명	**2,083명**	194,583	

주: 0.012, 0.035는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시중은행이자율을, 1/12, 7/12, 13/12는 지급 지연이 예상되는 개월수를 나타낸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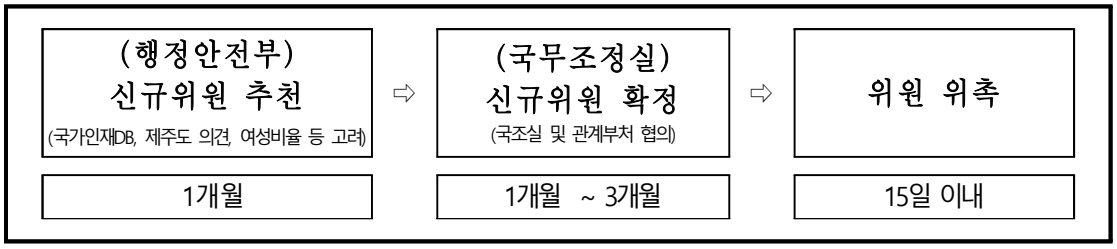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는 보상금 지급속도 신속성 제고를 위한 지급심의 인력을 보강하고, 지급결정 후 보상금 청구권자에게 우편발송을 실시(2024

년·2025년 각각 4회)하여 신속한 청구를 독려하는 등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동년 7월 제주4·3위원회 민간위원 17명 중 11명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신임위원 위촉이 2025년 11월에 이루어져 그 기간 중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고, 이에 보상금 심의 절차가 지연되어 보상금 미지급이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2025년 6월초부터 민간위원 추천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대통령 선거 실시와 신임총리 임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부서 간 사전 협의에 시일이 소요되어 위촉이 늦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민간위원 임기 만료 이후 위촉 프로세스]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다만, 위원회 구성 문제로 집행지연이 발생한 2025년 이전인 2023~2024년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미집행이 발생하였고, 해당 금액이 타 사업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 편성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의 장애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고, 미집행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이 반복되는 경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배 문제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 행정안전부는 향후 예산집행 시 보상금 지급 업무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적정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연례적인 예산의 불용 및 미집행 금액의 과도한 이·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31.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2432-300)

○ 2027년 제출한 신규 성과지표가 잘 정착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전년도 실적과 효율적 예산 투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민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을 지원하고,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 유해를 봉환하여 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76억 9,400만원 중 70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5,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7,694	7,694	-	±11	-	7,694	7,035	-	659	8,619

자료: 행정안전부

나.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을 통한 성과 기반 업무 수행 필요

□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38억 2,700만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28억 8,500만원,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을 위한 9억 8,200만원 등으로 구성됨.

□ 이와 같은 예산집행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부산 남구에 위치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연간 방문객 수와 유해봉환 관련 유전자검사 인원수를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하고 있음.

□ 그런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방문객 수가 10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2025년에는 15만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하였으나, 성과목표는 2022년과 2023년에는 4만명, 2024년에는 5만명, 2025년과 2026년은 8만명으로 실적보다 성과목표가 낮게 설정되어 있음.

[2022~2026년도 관련 성과목표·실적 및 달성도 현황]

(단위: 명,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5목표치 산출근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방문객 수	목표	40,000	40,000	50,000	80,000	80,000	최근 3년간 실적을 고려하여 '24년 대비 50% 이상 상향설정
	실적	113,315	114,826	144,419	157,019	-	
	달성도	283	287	288	196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성과목표제도 도입을 통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몇 년간 차년도 성과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온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고 보임.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6년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려 하였으나, 연초에 작성된 성과계획서에 이미 80,000명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제출된 상황으로, 이와 일치시키기 위해 조정을 보류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져온바, 성과계획서 작성 시점이 결산자료 등의 제출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목표 설정으로 보임.

□ 또한 해당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방문객 수’라는 현행 성과지표는 사업 담당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부뿐 아니라 외부 요인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133] 사업목표의 효과성 등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133) 단적으로 코로나19 등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이 시행될 경우 사업부서의 효과적 업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객 수가 감소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관람객 수, 교육참가자 수, 유물등록 및 공개 건수, 홍보채널(sns) 이웃추가 수 등 계량지표와 전시 고도화를 위한 노력, 유물수집·이용 체계화를 위한 노력 등 비계량 지표 선정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피해자·유족 위로 및 국민 통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027년 성과지표를 ‘강제동원 문화행사참석자 만족도(80점)’로 설정하여 기존 지표를 대체할 예정이며, 2027년 성과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신규 성과지표 관련 2027년 성과계획서 반영 내역]

(단위: 점)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지표명	가중치	구분	’23	’24	’25	’26	’27		
강제동원 문화행사참석자 만족도	0.5	목표	-	-	-	신규	80	강제동원 문화행사 참석자 대상 5점 척도 환산	문화행사 참석자 설문조사
		실적	-	-	-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같은 만족도 조사는 문화·기억사업에서 피해자·유족 위로 및 국민 통합 효과를 측정하기 적합한 성과지표로 보이나, 앞서 검토한 것처럼 예산집행의 효율성, 궁극적 목표 달성 여부 파악 등과 연계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성과지표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관람객 수 지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함께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취지로 보이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 성과지표의 추가 도입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의 목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가 잘 정착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전년도 실적과 효율적 예산 투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민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32.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2435-300)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사업의 경우 자료증빙의 어려움, 타지역 거주자에 대한 조사기간 과다소요 등으로 보상금의 지급 지연과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보상금 지급 및 심의 업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유사 보상금 지급 사업의 예산편성 시 연도별 지급 가능 금액을 면밀히 추계하여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5·18 기록보존소 확충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수정과 총사업비 협의 진행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하였고, 총사업비도 기존보다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향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철저한 예비조사를 통해 예기치 못한 계획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은 2·28민주운동 및 부산민주항쟁 등의 기념사업회 지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관련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민주화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308억 6,400만원 중 112억 4,000만원을 타사업으로 이·전용하였고, 예산현액 196억 2,400만원 중 175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민주화운동기념 사업지원	30,864	30,864	-	△11,240	-	19,624	17,516	-	2,108	27,763
기념사업회 및 재단지원	3,642	3,642	-	-	-	3,642	3,642	-	-	4,935
민주화운동지원 사업	21,496	21,496	-	△9,540	-	11,956	9,876	-	2,080	11,979
민주주의기념관 건립	1,728	1,728	-	△1,700	-	28	-	-	28	5,569
민주화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3,998	3,998	-	-	-	3,998	3,998	-	-	5,28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보상금 집행부진 개선을 통한 과도한 이·전용 방지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주화운동지원사업’은 민주화운동의 민주정신 계승과 가치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은 5·18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178억 6,900만원,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사업비 23억 2,700만원, MZ세대 공감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비용 13억원 등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 편성근거]

(단위:백만원)

세사업 명	편성 근거
민주화운동 지원사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17,869 -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2,327 - MZ세대 공감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1,30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이 중 보상금 지급 예산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제8차 보상 신청·접수가 이루어졌고,[134] 해당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2024년 37억 8,400만원, 2025년 170억 9,000만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되었음.

13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 그런데, 2025년 편성예산 170억 9,000만원 중 78억 4,000만원이 타 사업으로 이·전용되었으며, 예산현액 92억 5,000만원 중 74억 2,000만원만 집행되고 18억 2,9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4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37억 8,400만원의 보상금 예산이 편성된 2024년의 경우에도 15억 9,800만원이 타사업으로 이·전용되고 21억 8,500만원만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57.7%의 집행률을 기록하였는데, 2025년에는 집행률이 더 낮아진 것임.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액 (A)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손실보상금 310-01)	2024	3,784	△1,598	2,186	2,185	57.7	-	1
	2025	17,090	△7,840	9,250	7,420	43.4	-	1,829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여 2025년 전체 보상 완료를 목표로 대상자를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45년이 지나 자료 증빙이 어렵고, 신청자의 80%가 광주시가 아닌 타지역에서 거주하여 조사기간이 과다소요되었으며, 지급결정금액에 대한 재심신청[135] 및 소송제기 등의 어려움으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에 2025년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

135)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기준 심의대상 1,151명의 30%인 344명이 재심을 신청하였다고 밝혔음.

였고, 2026년 보상금 예산으로 76억 9,4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집행지연이 발생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보상금 예산을 재배정받아 실제 집행하는 광주시와의 업무협의 등을 통해 집행을 독려하고, 심사가 늦어진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며, 2026년과 2027년 각각 위원회 및 재심 심의 완료를 통해 보상금 지급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사건 발생 후 40여 년의 시간이 도과하여 자료 증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지급결정금액에 대한 재심신청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집행상 어려움을 고려한 면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던 것으로 보임.

□ 편성예산의 미집행과 타 사업으로의 과도한 이·전용이 반복될 경우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배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보상금 지급 및 심의 업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추가적인 사업지연 및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유사 보상금 지급 사업의 예산편성 시 연도별 지급 가능 금액을 면밀히 추계하여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사업 차질 방지 노력 필요

□ ‘민주화운동지원사업’ 내역사업에 포함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사업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한 보존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136] 2025년 국비 예산 23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5년 5월 옛 광주가톨릭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현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보존서고는 2022년 기준으로 89%가 채워진 상황으로, 지속적인 기록물 수집 및 기증으로 추가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태였고,[137] 이에 옛 국군통합병원 건물(서구 상무대로 1028)의 리모델링을 통한 보존시설 확충사업이 계획되어 2023년부터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음.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8(6년)
○ 보조유형 : 자본보조
○ 총사업비 : 419.1억원(국비 143.7억원, 지방비 275.4억원)
- 2025년도 예산(국고: 2,327백만원/지방비: 900백만원)
- 2025년도 결산(국고: 569백만원/지방비: 567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런데, 2024년 편성예산 4억 5,000만원이 전액 타사업으로 이·전용되었고, 2025년에도 편성예산 23억 2,700만원 중 타사업으로 17

136) 자치단체 자본보조(세목 330-03)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보조금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
137) CNB뉴스, “광주광역시, 5·18 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설 대폭 확충한다”, 2022.1.15.

억원이 이·전용되었으며, 예산현액 6억 2,700만원 중 5억 6,900만원만 집행되는 등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2024~2025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024	450	△450	-	-	-	-
	2025	2,327	△1,700	627	569	-	58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그 결과 2023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25년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을 완료하겠다는 당초의 사업계획도 2028년 완료 목표로 지연되었음.

□ 이와 같은 집행부진과 사업지연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기록물 보존센터로 활용하려 했던 옛 국군광주병원건물이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아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임이 확인되어 해당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있음.[138)]

□ 이에 대체부지(서구 상무누리로 78)를 확보하고 이곳에 기록물 보존센터 건물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며(2024.8.),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 총사업비도 당초 392억원에서 419.1억원으로 증가하였음.

138)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확인하바에 따르면 D등급 판정은 2020년 9월에 내려졌으나, 2022년 7월까지 해당 건물의 사용 관련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었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6월 부지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광주광역시의 방침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4년 10월 사업부지 변경협의 후 2025년 설계공모 추진 및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이후 조달청 적정성 검토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 과정을 거쳐 2026년 10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당초 현재 보존소 용량이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에 조속한 보존장소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나,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수정과 총사업비 협의 진행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하였고, 총사업비도 기존보다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향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철저한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예기치 못한 계획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안전예방정책실】

33. 재난안전사업평가(2631-304)

○ 내역사업 ‘재난안전시스템 연구’는 총 18개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이후에 7개 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1억 6,500만원의 이월액을 발생시켰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연구용역 과제의 발주 및 계약 시기를 감안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수행 계획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안전사업평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을 관리하여 재난안전분야 국가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14억 6,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6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15억 3,200만원 중 83.0%인 12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난안전사업평가	1,466	1,466	66	±53	-	1,532	1,272	165	95	1,265
재난안전사업평가 등 용역	250	250	-	-	-	250	243	-	7	300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116	116	-	±3	-	116	116	-	-	116
재난안전시스템 연구	900	900	66	±50	-	966	733	165	68	649
국가안전관리계획 분석·평가 용역	200	200	-	-	-	200	180	-	20	200

나. 연구용역 과제 수행 계획 내실화를 통한 이월 방지 필요

□ 내역사업 ‘재난안전시스템 연구’는 국정과제 및 재난안전분야 주요 전략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9억 6,600만원 중 7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총 18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개의 연구용역 과제가 연내 용역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해당 과제들에 집행된 예산에서 이월이 발생하였음.

[2025년 재난안전시스템 연구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용역과제]

(단위: 백만원)

연번	과제명	예산액	집행액	입찰공고일	계약일	용역완료일	용역수행기관	이월액
1	베트남 ODA사업(재난안전분야)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100	94	’25.01.24.	’25.02.17.	’25.06.16.	대림대학교 산학연구단	-
2	보행자 방호용 말뚝 시설지침 연구용역	50	50	수의계약	’25.04.02.	’25.07.31.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
3	어린이 안전의복 개발 및 보급 활성화 방안 연구	45	45	’25.07.08.	’25.07.08.	’26.01.02.	주식회사 지속가능웰빙랩	-
4	기업재난관리분야 정책 방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50	50	’25.04.30.	’25.06.10.	’25.12.07.	㈜부린	-
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 해설서 제작	40	40	’25.04.21.	’25.06.19	’25.12.13.	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	-
6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70	67	’25.04.04.	’25.05.09.	’25.10.28.	한국재난안전 산업진흥협회	-

(단위: 백만원)

연번	과제명	예산액	집행액	입찰공고일	계약일	용역완료일	용역수행기관	이월액
7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45	45	'25.05.27.	'25.06.30.	'25.12.26.	(사)한국화재보험협회	-
8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등 연구	50	48	'25.07.23.	'25.08.26.	'26.01.22.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14
9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법령체계 정비 연구	30	30	'25.08.06.	'25.08.29.	'25.11.27.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
10	승강기 안전문화 정착 및 승강기 산업 기술인력 역량강화방안 연구용역	60	57	'25.10.31.	'25.11.27.	'26.04.25.	한국산업관계연구원	11
11	기능연속성계획 교육·훈련 가이드 개발 연구	24	23	'25.08.25.	'25.10.20.	'26.02.11.	주식회사 안전환경연구소	7
12	재난감시계측장비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60	59	'25.10.13.	'25.11.13.	'26.02.09.	㈜부린	18
13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소요량 산출 연구	48	47	'25.09.16.	'25.11.19.	'26.02.15.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4
14	방재전문인력 수행 실적 및 경력 관리방안	40	40	'25.08.21.	'25.09.17.	'25.12.15.	한국방재협회	-
15	안전영향분석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25	-	'25.10.20.	'25.12.30.	'26.03.30.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5
16	(가칭)주민대피기본법 제정안 마련 연구 용역	59	-	'25.11.03.	'25.11.30.	'26.04.29.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59
17	방재기준 관련제도 통폐합 운영방안 연구용역	35	18	'25.09.23.	'25.11.04.	'26.01.28.	주식회사 협성이앤시	17
18	취약계층 분포에 따른 무더위쉼터 지정·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20	20	'25.09.18.	'25.10.01.	'25.12.29.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자료 : 행정안전부)

※ : 연내 미완료되어 이월액이 발생한 연구용역 과제

□ 이월액이 발생한 연구용역 과제 8건을 발주의 첫 단계인 입찰공고일과 실제 계약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6건의 과제가 9월 이후에 입찰공고 되었고, 총 7건의 과제가 10월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졌음.

□ 과업 지시의 내용 및 연구의 성격, 계약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같은 연도에 수행되어 연내 연구가 완료된 다른 과

제들의 경우에도 통상 입찰공고일부터 용역완료일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이월이 발생한 연구용역 과제들의 경우 발주 및 계약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동 내역사업은 국가안전시스템개편, 기후위기대책, 중점과제라는 3가지 주제 하에서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2025년 8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난안전 분야의 세부사업을 위한 신규 연구용역 과제들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예산 편성근거에 총 12~14개 과제의 수행을 예정했으나, 중점과제에 속하는 연구용역 과제를 추가하면서 총 18개의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하게 되었음.

[2025년 재난안전시스템 연구 사업 예산 편성근거]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예산	연구용역 과제 수(계획)	연구용역 과제 수(실제)
국가안전시스템개편	300	5	4
기후위기대책	200	4	4
중점과제 추진	400	3~5	10
합 계	**900**	**12~14**	**18**

(자료 : 행정안전부)

□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추가된 연구용역 과제들이 대부분 4분기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용역 과제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발주시기 관리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연구용역 과제의 발주 및 계약 시기를 감안하여 연구용역 과제의 연내 완료 및 예산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수행 계획을 내실화하여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4. 국민안전의식선진화(2632-301)

○ 행정안전부는 내역사업 ‘안전교육 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발굴하여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 등록하고 있는데, 등록한 콘텐츠의 92%에 해당하는 161개 콘텐츠의 조회 수가 500회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 등록된 안전교육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바,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고도화하거나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안전교육 콘텐츠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 결과 확산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민안전의식선진화’ 사업은 범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안전문화 행사 및 안전정책 홍보 등을 추진하여 국민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를 확산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30억 3,200만원 중 약 98.1%인 29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민안전의식선진화	3,032	3,032	-	-	-	3,032	2,975	-	57	2,741
범국민 안전의식 조사	152	152	-	-	-	152	146	-	6	104
안전교육 체계 및 인프라 구축	900	900	-	-	-	900	858	-	42	796
범국민 안전교육 추진	785	785	-	-	-	785	785	-	-	737
범국민 안전문화 행사	225	225	-	-	-	225	268	-	△43	203
범국민 안전문화 홍보	970	970	-	-	-	970	918	-	52	901

나. 사업 결과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 내역사업 ‘안전교육 체계 및 인프라 구축’은 안전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9억원 중 8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내역사업 ‘안전교육 체계 및 인프라 구축’ 세부 집행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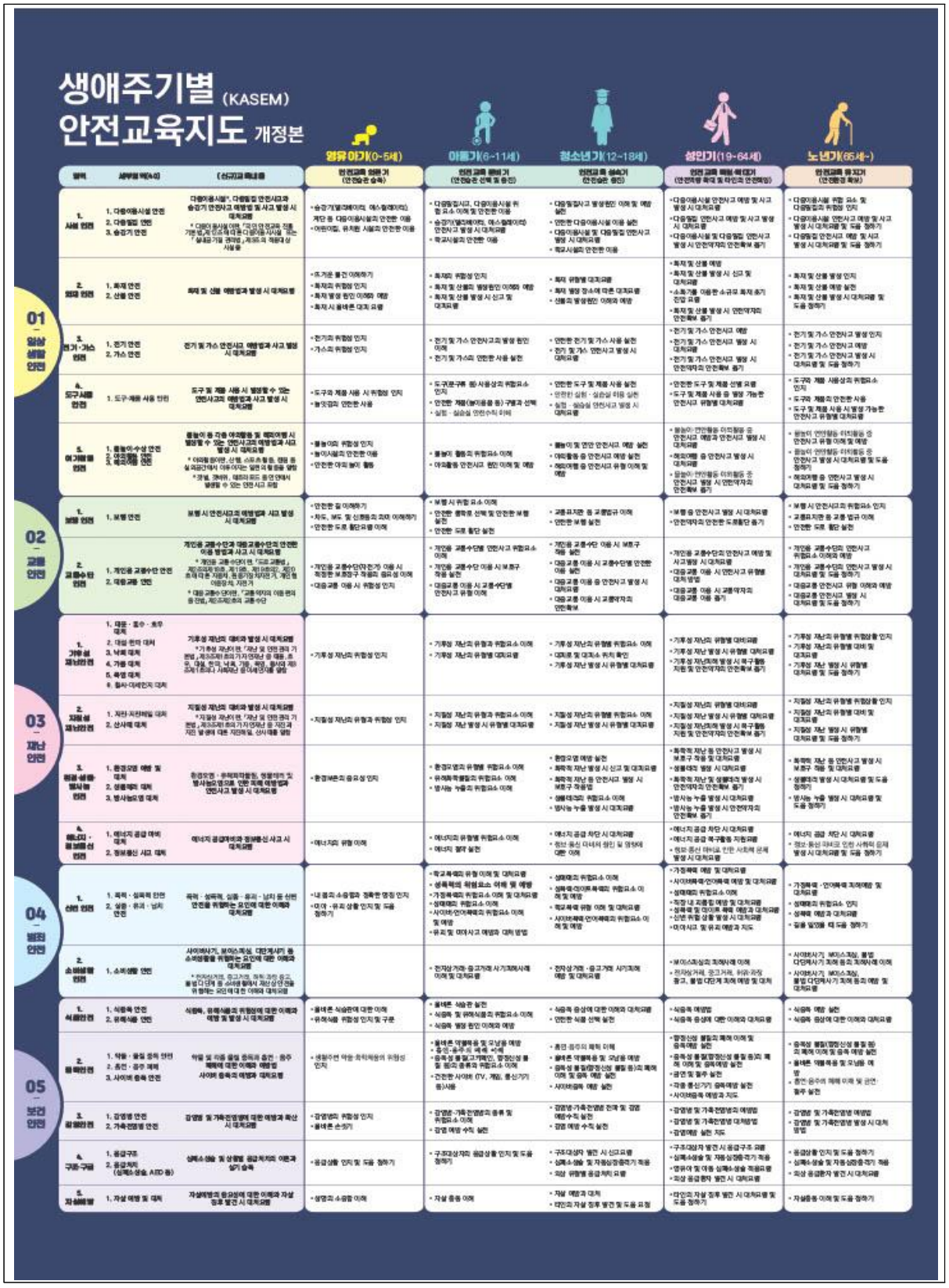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550**	**528**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100	92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200	188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50	50
합 계	900	858

□ 행정안전부(당시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민의 안전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139](KASEM; Korean Age-specifics Safety Education Map)를 개발하였고, 동 내역사업을 통해 각 생애주기에 맞는 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제작)하여 국민 스스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능력 함양을 위해 보급하고 있음.

139) 생애주기 분류 :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안전교육 범주 : 일상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참고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KASEM)]



(자료 : 행정안전부)

□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동 내역사업을 통해 개발한 안전교육 콘텐츠는 총 319건이며, 특히 2025년에는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및 산사태·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관한 콘텐츠 개발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생애주기별·분야별 안전교육콘텐츠 개발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장애인
계	**319**	71	38	25	128	40	17
일상생활안전	127	29	18	7	48	15	10
교통안전	49	8	7	1	18	12	3
재난안전	57	10	4	3	31	7	2
범죄안전	19	3	3	5	7	-	1
보건안전	67	21	6	9	24	6	1

(자료 : 행정안전부)

* 2025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개발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누적 현황

** 콘텐츠가 2개 이상 생애주기에 해당할 경우, 중복제외하고 1개 생애주기로 산정

□ 행정안전부는 동 내역사업을 통해 개발한 안전교육 콘텐츠와 다른 기관에서 개발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발굴하여 모두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2025년 개발 또는 발굴하여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 등록한 콘텐츠는 175건으로 파악됨.

[연도별·유형별 안전교육 콘텐츠 등록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동영상	교재	PPT	홍보자료
계	1,693	1,143	132	160	258
2021년	295	243	17	8	27
2022년	337	230	24	12	71
2023년	431	151	66	88	126
2024년	455	441	5	0	9
2025년	175	78	20	52	25

(자료 : 행정안전부)

□ 그런데, 2025년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 등록한 콘텐츠의 92%에 해당하는 161건의 조회 수가 500회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 등록된 안전교육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2025년 등록된 안전교육 콘텐츠 조회 수 현황]

(단위: 건)

조회 수	계	1~500회 미만	500~1,000회 미만	1,000~1,500회 미만	1,500회 이상
건수	175	161	8	3	3
비율	100	92.0	4.6	1.7	1.7

(자료 :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 등록·공개하는 것을 최종 산출물로 계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조한 국민의 이용도와 접근성은 사업 결과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민안전의식 제고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교육 컨텐츠 이용과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고도화하거나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안전교육 콘텐츠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 결과 확산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140].

140)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민안전교육플랫폼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동 사업의 결과 확산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35. 승강기안전관리개선(2632-306)

○ 내역사업 ‘승강기 안전이용 홍보’는 편성된 예산 2억 4,000만원 중 1,000만원만 집행하고 95.8%인 2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승강기안전관리개선’ 사업은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을 보호하고,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58억 7,200만원 중 93.3%인 54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승강기안전관리개선	5,872	5,872	-	-	-	5,872	5,481	270	121	6,330
승강기 사고조사	4,218	4,218	-	-	-	4,218	4,172	-	46	4,256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합동조사	389	389	-	-	-	389	385	-	4	871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구축·운영	429	429	-	-	-	429	422	-	7	464
승강기 안전교육	120	120	-	-	-	120	120	-	-	120
승강기 안전이용 홍보	240	240	-	-	-	240	4	230	6	240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	32	32	-	-	-	32	32	-	-	32
승강기 안전주간 행사	24	24	-	-	-	24	24	-	-	24
승강기 안전 국제회의 참석	33	33	-	△20	-	13	6	-	7	33
기타운영비	40	40	-	+20	-	60	55	-	5	40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100	100	-	-	-	100	100	-	-	100
승강기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247	247	-	-	-	247	161	40	46	-
승강기 산업진흥 기본계획 연구용역	-	-	-	-	-	-	-	-	-	150

나. 사업 추진 일정의 조속한 확정을 통한 집행 개선 필요

□ 내역사업 ‘승강기 안전이용 홍보’는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 이용자의 올바른 승강기 안전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이용 방법을 홍보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승강기 안전이용 관련 홍보 영상을 제작하면, 행정안전부와 공단이 해당 영상의 송출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하여 지상파·종편 방송사 등에서 해당 영상을 송출하는 절차로 집행됨.

[승강기 안전이용 홍보 사업 추진 절차]

광고영상 제작	송출 계획 수립	계약 체결	광고 송출	사업 정산
공단	행정안전부 공단	행정안전부, 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행정안전부, 공단

(자료 : 행정안전부)

□ 2021-2024년 홍보 영상 송출 현황을 보면 동 사업은 위와 같은 추진 절차 하에서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승강기 안전이용 홍보 영상을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계약을 통해 송출하였음.

[2021-2024년 승강기 안전이용 홍보 영상 송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계약 대상	계약(송출) 기간	과업 내용
2021	90	90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6.1. ~ 6.11. 2021.9.13. ~ 9.24.	승강기(엘리베이터) 안전이용 공익광고 송출
2022	90	90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5.9. ~ 5.20. 2022.11.1. ~ 11.11.	승강기(엘리베이터) 안전이용 공익광고 송출
2023	90	90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5.15. ~ 5.24. 2023.11.3. ~ 11.13.	승강기(엘리베이터) 안전이용 공익광고 송출
2024	240	240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5.15. ~ 5.31. 2024.10.1. ~ 12.12.	승강기(엘리베이터) 안전이용 공익광고 송출

(자료 : 행정안전부)

□ 그런데 2025년 동 사업은 상반기 홍보영상 송출 계약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 홍보영상 송출도 계약 기간을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9일로 설정함에 따라, 송출이 완료된 시점인 2026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2025년 예산액 2억 4,000만원의 약 95.8%인 2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5년 승강기 안전이용 홍보 사업 추진 경과]

추진절차	시행주체	일정
① 승강기 안전이용 공익 광고 영상 기획·제작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2025년 9월 ~ 12월
⇩		
② 광고 송출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행정안전부	2025년 12월 2주 * 계약 체결일 : 2025.12.11.
⇩		
③ 공익광고 송출	한국언론 진흥재단	2025년 12월 3주 ~ 1월 3주 * 실제 송출 기간 : 2025.12.15.~2026.1.19.
⇩		
④ 정산 및 광고료 지급	행정안전부	2026년 1월 말 * 지출 요청일 : 2026.1.27.

(자료 : 행정안전부)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4년까지는 승강기 중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관련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는데, 기존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홍보 영상 외에 추가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공익광고 영상 제작이 필요하게 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추가적인 영상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업이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홍보영상 송출을 계획하고 집행하였다는 점, 2025년 상반기 송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5년 동 사업의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계획 수립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동 내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영상의 내용, 송출 시점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 : 승강기 설치 현황(2025.12.31. 기준)]

(단위: 대)

승강기 종류						전년대비 증가대수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소형화물용	휠체어리프트	합계	
793,290	39,164	41,935	6,736	4,803	**885,928**	19,259

(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자연재난실】

36. 지진대비인프라 구축(2731-307)

○ 내역사업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는 2025년 보조사업자인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 실집행률이 57.9%로 저조한데, 현재 사업 구조 하에서는 국민의 시설물 지진 안전성 확인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진방재 교육 및 홍보, 지진방재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지진방재 국제교류, 시설물 지진 안전성 확보,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55억 1,100만원 중 92.8%인 51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5,511	5,511	-	-	-	5,511	5,115 [4,248]	-	396	4,660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진방재 교육 및 홍보	1,250	1,250	-	-	-	1,250	1,217	-	33	1,220
지진방재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95	95	-	-	-	95	95	-	-	95
지진방재 국제교류	24	24	-	-	-	24	23	-	1	24
시설물 지진안전성 확보	1,550	1,550	-	-	-	1,550	1,413	-	137	1,250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2,592	2,592	-	-	-	2,592	2,367 [1,500]	-	225	2,071

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내역사업 중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은 민간건축물 소유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25억 9,200만원 중 23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141] 하여,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시설물의 지진 안전성을 진단·평가하고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의 검증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추진 배경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여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가치 향상 도모

14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기준·등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 대상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공공 · 민간, 기존 · 신규시설물 모두 포함
인증 절차/비용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시행한 이후 인증기관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여 인증 추진 
인증 실적 (2025년 말 기준)	누적 477건 (공공시설 155건·민간시설 322건, 2019년 이후)

(자료 :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으려는 민간건축물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내진성능평가비와 인증 수수료의 6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30~40%의 지방비를 매칭하여 민간건축물 소유주의 실제 자부담 비율을 0~10%로 낮추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 구조]

구분	국비	지방비	민간건축물 소유주 자부담
내진성능평가비 인증수수료	60%	30~40%	0~10%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2025년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0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전체 실집행률도 57.9%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실정임.

[2025년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건)

사업시행 주체	예산 집행 현황					부담률 현황			지원 실적			
	교부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국비	지방비	자부담	내진성능평가	인증수수료	인증완료	지원 신청 철회/취소
서울	128	104	-	24	44.4	60	30	10	6	3	1	3
부산	222	222	-	-	100.0	60	40	-	11	-	-	11
대구	65	25	-	40	38.5	60	40	-	2	1	0	1
인천	122	97	-	25	79.5	60	40	-	6	5	5	2
광주	-	-	-	-	0	60	30	10	-	-	-	-
대전	-	-	-	-	0	60	40	-	-	-	-	-
울산	145	83	-	62	57.2	60	30	10	5	-	-	5
세종	16	16	-	-	88.9	60	40	-	1	1	1	-
경기	234	86	142	6	27.3	60	30	10	5	2	2	3
강원	18	-	-	18	0	60	30	10	-	-	-	-
충북	94	47	-	47	50	60	30	10	3	1	1	2
충남	136	107	-	29	78.7	60	30	10	10	7	6	3
전북	47	18	23	6	38.3	60	30	10	1	-	-	1
전남	24	17	-	7	70.8	60	30	10	1	-	-	1
경북	878	472	24	382	53.8	60	40	-	40	5	5	35
경남	220	191	-	29	86.8	60	40 (30)	- (10)	11	2	2	9
제주	18	15	-	3	83.3	60	30	10	1	1	-	-
합계	2,367	1,500	207	660	57.9				103	28	23	76

(자료: 행정안전부)

※ : 실집행률 70% 미만 지방자치단체

※ 지원 신청 철회/취소 건은 내진성능평가비 또는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하였다가 지원을 철회하거나 취소된 건수를 의미함.

※ 경남의 경우 내진성능평가비에 지방비 40%를 부담(자부담률 0%)하나, 인증수수료 지원에는 지방비 30%를 부담(자부담률 10%)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난 이유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사업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확보한 사업 수요의 경우에도 민간건축물 소유주의 내진성능평가 신청 철회 등으로 내진성능평가 이후의 인증 심사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특히, 동 사업의 대상이 되는 민간건축주를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142]의 소유주와 비의무대상 건축물의 소유주로 구분할 때, 법정 의무로 인해 동 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으려는 유인이 높은 의무대상 건축물 소유주에 비해서, 법정 의무가 아님에도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다시 그 평가 결과를 기초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비의무대상 건축물 소유주의 지원 신청 유인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실제로 2022~2025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위한 내진성능평가비 또는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 및 실제 지원 현황을 의무대상 건축물 소유주와 비의무대상 건축물 소유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비의무대상 건축물 소유주의 신청 철회 또는 내진성능평가

142)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건축시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건축시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88년	6층이상 100,000㎡이상	'15년	3층이상 500㎡이상
'95년	6층이상 10,000㎡이상	'17년 2월	2층이상 또는 500㎡이상
'05년	3층이상 1,000㎡이상	'17년 12월	2층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 주택

및 인증심사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지원 신청 대비 실제 지원 건수의 격차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남.

[2022~2025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신청 및 실제 지원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
의무대상 건축물 소유주				
내진성능평가비(신청/지원)	26/26	26/26	35/35	44/44
인증수수료(신청/지원)	30/27	26/22	36/32	42/13
비의무대상 건축물 소유주				
내진성능평가비(신청/지원)	26/26	25/25	52/52	59/59
인증수수료(신청/지원)	21/11	25/18	52/15	60/15

(자료: 행정안전부)

※ 신청 건수와 지원 건수의 차이는 신청을 철회/취소하거나 내진성능평가/인증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에 기인함.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인증을 지원할 수는 있어도 내진성능 보완이 필요한 건축물 소유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로서 내진성능평가만을 지원받고 자발적으로 위험 건축물의 내진성능 제고에는 기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사업 구조 하에서는 사업의 목적인 국민 입장에서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기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143].

143)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취득

세 감면, 재산세 일부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임.

※ 참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2. 26., 2018. 12. 24.>

③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 12. 31.>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 12. 31.>

37.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2733-310)

○ 내역사업 ‘시스템 구축 지원’은 2025년 총 67개소의 하상도로 진입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를 보조하는 내용인데, 집중호우가 나타나는 7~8월 이전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사업 개소는 18개소에 불과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시기 이전에 각 사업 개소별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은 하천변에 인접한 하상도로에 출입차단기와 경보시설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60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음.

[2025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6,000	6,000	-	-	-	6,000	6,000 [4,596]	-	-	6,000
시스템 구축 지원	6,000	6,000	-	-	-	6,000	6,000 [4,596]	-	-	6,000

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내역사업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 사업으로, 2025년 사업 개소를 60개로 설정하여 1개소 당 시스템 구축 단가를 2억원으로 산정하고, 총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2025년 국비교부액 60억원 중 46억원이 실집행되고, 11억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원이 불용됨.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예산 세부산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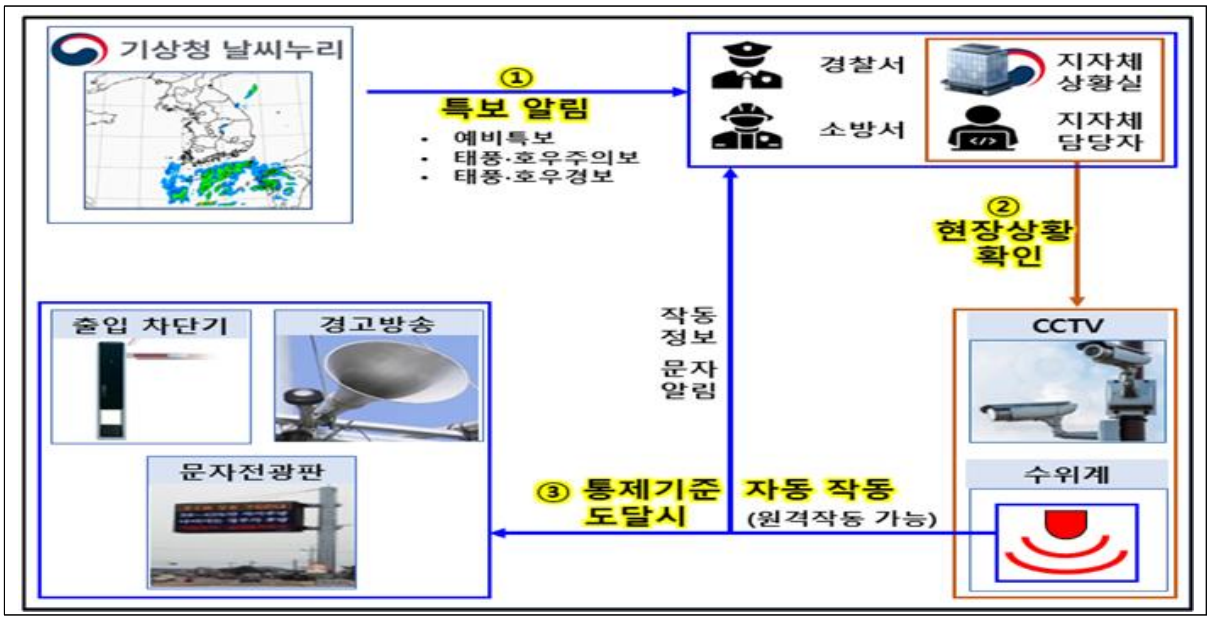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6,000백만원 - 6,000백만원 = 200백만원 × 60개소 × 50%(국고보조율)

(자료 :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은 하천 수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등과 연계하고 위험수위까지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인접한 하상도로[144]의 차단기가 작동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전광판과 경보방송으로 침수 위험 및 통제 상황 등을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144) 하상도로란 하천에 인접한 도로를 통칭하며, 세월교, 잠수교 등 물에 잠기는 교량을 포함하는 개념임.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시스템 개념도]



(자료 : 행정안전부)

□ 자동차단시설 시스템 구축의 절차 및 각 절차의 소요 기간을 보면, 우선 현장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는데 약 30일이 소요되고, 차단기·CCTV 등 물적 자원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과정과 통합관제 서버에 시스템을 연계하고 보안성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 각각 약 30~60일이 소요되어, 준공에 이르기까지 약 3~5개월 정도 소요됨.

[자동차단시설 시스템 구축 절차 및 소요 기간]

현장 실시설계 용역	→	차단기, CCTV, 수위계, 전광판 등 구매·설치	→	통합관제 서버연계 국정원 보안성 검토 준공
30일		30~60일		30~60일

(자료 : 행정안전부)

□ 그런데, 2025년 자동차단시설 시스템 구축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집중호우가 나타나는 7~8월 이전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사업개소 수는 전체 사업개소 대비 약 27%인 18개에 불과함.

[2025년 월별 자동차단시설 시스템 구축 현황]

(단위: 개소)

사업시행주체	합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6년
합계	**67**	**3**	**15**	**6**	**3**	**8**	**1**	**5**	**11**	**15**
대구	2	-	-	-	-	-	-	-	2	-
광주	1	-	-	-	-	-	-	-	-	1
대전	7	-	-	-	-	-	-	-	2	5
울산	3	-	-	-	-	3	-	-	-	-
세종	1	-	-	-	1	-	-	-	-	-
경기	1	-	-	-	-	-	-	1	-	-
강원	6	-	4	-	1	1	-	-	-	-
충북	8	-	-	-	1	2	-	1	3	1
충남	5	-	1	-	-	-	-	2	-	2
전북	10	1	4	-	-	1	-	-	2	2
전남	3	-	1	1	-	-	-	-	1	-
경북	9	1	3	-	-	-	1	1	1	2
경남	11	1	2	5	-	1	-	-	-	2

(자료: 행정안전부)

※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계획한 사업개소 수는 60개이나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7개소에 추가 국비 지원하여 2025년 국비가 교부된 총 사업개소 수는 67개임.

□ 동 사업이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상도로의 침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점과, 단년도 사업으로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3~5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에 구축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자동차단시설 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하여 인명 피해 예방이라는 사업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145].

145)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수시·정기점검과 실집행부진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예산 확보 또는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운 사업대상지는 제외하여 집중호우 발생 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재난복구지원국】

38. 재난대책비(보조)(2734-300)

○ 내역사업 ‘재난대책비 지원’은 당해연도 발생한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약 537억원, 2025년 약 479억원 규모의 이·전용을 통해 부족 재원을 확보하는 등 대규모 이·전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당해연도 발생한 재난에 대한 국비 지원은 당해연도의 본예산 또는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이·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2025년 실집행률이 68.4%로 나타났는데, 재해복구사업의 절대공기 확보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3회계연도에 걸쳐 재이월되거나 대규모 공사와 무관한 재난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이 이월되는 등 피해 복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원 유형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대책비(보조)’ 사업은 재난 피해 발생 시 인명 또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및 도로·소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조 1,072억 7,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5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난대책비 (보조)	360,020	1,020,020	-	47,948	39,306	1,107,274	1,107,274	-	-	1,010,040
재난대책비 지원	359,960	1,019,960	-	47,948	39,306	1,107,214	1,107,214 [756,849]	-	-	1,009,940
재난대책비 운영	60	60	-	-	-	60	60	-	-	100

나. 대규모 이·전용 등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 방식 재검토 필요

□ 내역사업 ‘재난대책비 지원’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국가에서 보조(보조율 50～70%)하는 내용으로, 2025년 예산현액 1조 1,072억 1,400만원을 전액 교부 집행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재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정부지원을 위해 동 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2025년 본예산에는 전년도 발생한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비 2,430억 6,300만원, 당해연도 재난대책비 1,168억 9,000만원을 반영한 3,59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 재난대책비를 초과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6,6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여, 총 1조 1,072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 재난대책비 지원 세부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재난명	사업내용	집행액	비고
	합 계		**1,107,214**	
추경 배정 (5.7.) 이전	**소 계**		**243,063**	
	’24.7.8.~19. 호우	재해복구사업비	237,599	자연재난
	’24.11.26.~28. 대설	재해복구사업비	3,712	
	이태원 참사 부상자 간병비	생활안정지원금	17	사회재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생활안정지원금	1,735	

추경 배정 (5.7.) 이후	소 계		864,151	
	'25년 경북·경남·울산 산불	생활안정지원금	106,731	사회재난
		피해수습지원	346,792	
	'25.7.16.~20. 호우	재난지원금	185,495	자연재난
		재해복구사업비	177,118	
	'25.8.3.~14. 호우	재난지원금	26,687	
		재해복구사업비	4,319	
	'25.9.6.~7. 호우	재난지원금	16,275	
		재해복구사업비	734	

(자료: 행정안전부)

□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및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 479억 4,800만원 규모의 이용을 통해 부족액을 충당하였는데, 2024년에도 537억 2,300만원의 대규모 이·전용을 통해 부족 재원을 확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회계연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대규모 이·전용이 발생하였음.

[2024년 및 2025년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			
구분	세부사업명	금액	이·전용 등 사유
이용 (24.11.16.)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290	7.8.~19. 호우, 9.19.~21.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재원 확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3,300	
	제주4.3피해보상	28,8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803	
	민방위교육훈련시설 장비확충	4,000	
이·전용 (24.12.27.)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362	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재원 확보
	지자체경쟁력지원	505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112	
	한국섬진흥원 지원	500	
	지방세정보화추진	183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660	
	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39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567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신축(정보화)	341	
	국경일등정부행사	143	

(단위: 백만원)

<2024년>			
구분	세부사업명	금액	이·전용 등 사유
	정부포상	250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709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1,100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 지원 및 운영	399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 지원 및 운영(보상금)	121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2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8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1,591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136	
	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	700	
	인건비(기록)	968	
	인건비(청사)	450	
	인건비(국가정보자원관리원)	60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인건비	425	
	인건비(대통령기록관)	500	
	중앙안전상황실운영	118	
	재난안전산업활성화	119	
	승강기안전관리개선	120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641	
	지진대비인프라구축	800	
합계		53,723	
<2025년>			
구분	세부사업명	금액	이·전용 등 사유
이용 (2025.8.22.)	제주4.3피해 보상(보상금등)	24,128	7.16.~20.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재원 확보
이용 (2025.11.19.)	제주4.3피해 보상(보상금등)	9,201	7.16.~20. 호우, 9.6.~7.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재원 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10,4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	4,219	
합계		47,948	

(자료: 행정안전부)

□ 이러한 대규모의 이·전용 등 예산 변경은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되는 다른 사업들의 정책적 목적 달성 및 전반적인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재난지원금 및 소규모 재해복구사업비를 계상하여 동 사업의 예산 및 이·전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당해연도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비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책비의 당해연도 편성 규모와 가용 재원의 차이에 따라 대규모의 이·전용이 반복되어 시의 적절한 예산 집행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의 발생 시에도 2025년에 발생한 재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가용 재원은 본예산 대비 약 34%인 1,223억 6,200만원에 불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600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음.

[2025년 및 2026년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 예산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본예산	359,960	■'24년 호우 피해 복구비 등 지원 : 237,598 ■'25년 피해복구비 등 지원 : 122,362	본예산	1,009,940	■'25년 호우 피해 복구비 등 지원 : 810,000 ■'26년 피해복구비 등 지원 : 199,940
추경	660,000	■'25년 산불 피해 등 복구비 지원 : 660,000			

(자료 : 행정안전부)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당해연도 발생한 재난에 대한 국비 지원은 당해연도의 본예산 또는 예비비[146] 등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이·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147].

---

146)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25. 10. 1., 2026. 2. 10.>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다. 재난 피해 복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내역사업 ‘재난대책비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148],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사유시설의 경우 재난지원금(자연재난) 또는 생활안정지원금(사회재난)을, 공공시설의 경우 재해복구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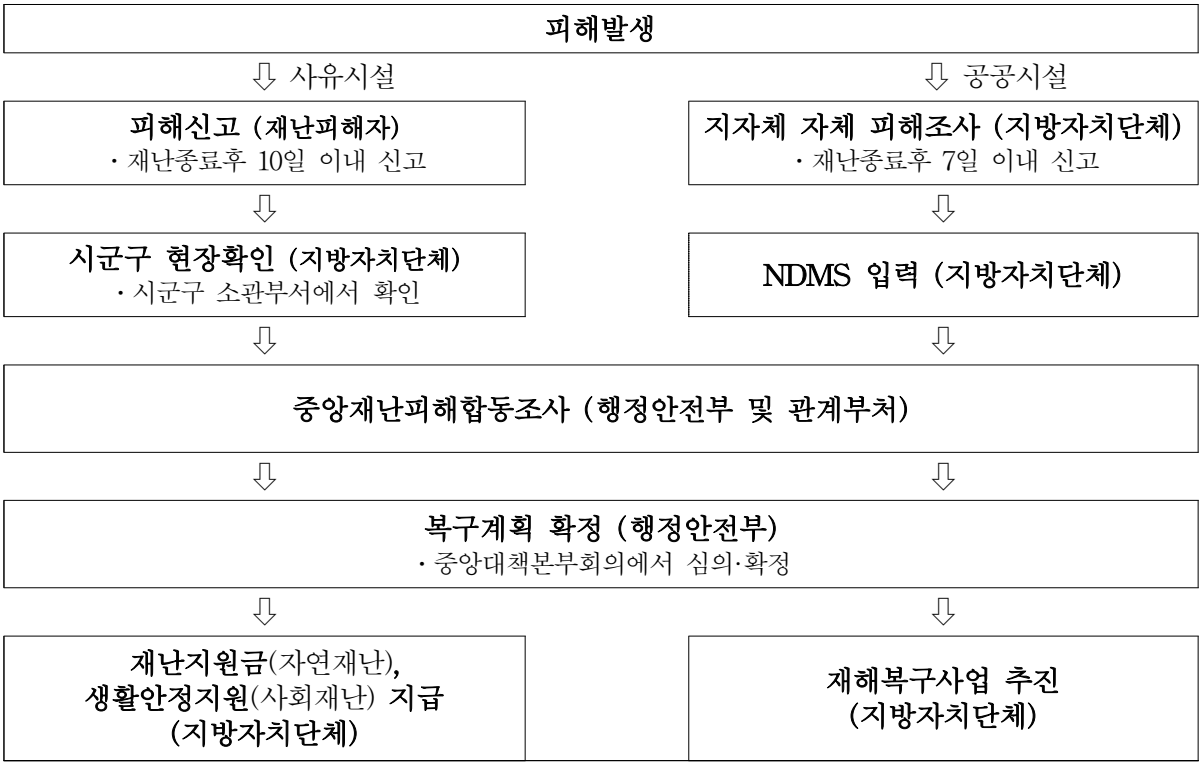
---

147)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난은 발생 시기와 피해 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재 일정 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추가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제47조에 따라 이·전용,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재원을 적기에 충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1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 집행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 2021~2025년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25년에는 전체 교부액이 1조원을 상회하는 금액임에도 전체 교부액 중 68.4%가 실집행되고, 3,191억 9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2021~2025년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년	842,468	-	354,373	487,147	948	42.1
2022년	632,117	-	203,806	422,995	5,316	32.2
2023년	168,418	-	140,524	22,120	5,774	83.4
2024년	653,723	-	361,614	280,594	11,515	55.3
2025년	1,107,214	-	756,849	319,109	31,256	68.4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태풍·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이 주로 하반기에 발생하여 보조금 교부 자체가 늦게 이루어지고,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복구사업비의 경우 대규모 공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설계, 계약, 보상, 시공 등 공사를 추진하는데 일정한 공사 추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실제로, 2025년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재해복구사업비에 대한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해복구사업비에 전체 교부액의 약 48%인 5,319억 4,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재해복구사업비의 실집행률이 45.3%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전체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도 낮게 집계되었음.

[2025년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 유형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재난지원금(자연재난)	228,456	-	209,541	7,987	10,928	91.7
생활안정지원금(사회재난)	346,809	-	306,109	39,603	1,097	88.3
재해복구사업	531,949	-	241,199	271,519	19,231	45.3
합계	**1,107,214**	**-**	**756,849**	**319,109**	**31,256**	**68.4**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대규모 공사의 절대공기 확보의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재해복구사업비에 대한 교부액 중 일부는 연례적으로 3회계연도에 걸쳐 재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21년의 경우에는 다음연도(2022년) 이월액 4,871억 4,700만원 중 약 50.2%에 해당하는 2,444억 7,800만원이 그 다음연도(2023년)로 재이월된 바 있음.

[2021～2024년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 이월/재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2021년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21년	842,468	-	354,373	487,147	948	42.1
2022년 (이월)	-	**487,147**	237,257	**244,478**	5,412	48.7
2023년 (재이월)	-	244,478	222,631	-	21,847	91.1
2022년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22년	632,117	-	203,806	422,995	5,316	32.2
2023년 (이월)	-	**422,995**	203,445	**208,826**	10,724	48.1
2024년 (재이월)	-	208,826	198,584	-	10,242	95.1
2023년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23년	168,418	-	140,524	22,120	5,774	83.4
2024년 (이월)	-	**22,120**	17,560	**2,413**	2,147	79.4
2025년 (재이월)	-	2,413	2,299	-	114	95.3
2024년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24년	653,723	-	361,614	280,594	11,515	55.3
2025년 (이월)	-	**280,594**	169,105	**107,950**	3,539	60.3
2026년 (재이월)		107,950	집계중	-	-	0.0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2025년의 경우 이월액이 발생한 사업을 재난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공사와 무관한 재난지원금이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서도 542억 7,1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 재난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해당 유형의 지원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할 것임.

[2025년 재난대책비 중 2026년 지원 유형별 이월액]

(단위: 백만원)

구분	재난명	사업내용	이월액
합 계			319,109
자연재난	소 계		272,825
	'24.7.8.~19. 호우	재해복구사업비	136,897
	'24.11.26.~28. 대설	재해복구사업비	164
	'25.7.16.~20. 호우	**재난지원금**	**4,914**
		재해복구사업비	122,724
	'25.8.3.~14. 호우	**재난지원금**	**2,269**
		재해복구사업비	4,319
	'25.9.6.~7. 호우	**재난지원금**	**804**
		재해복구사업비	734
사회재난	소 계		46,284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수습지원**	**164**
	'25.3.21.~30. 경북·경남·울산 산불	**생활안정지원 지급**	**39,603**
		피해수습지원	**6,517**

(자료: 행정안전부)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동 사업의 지원 유형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149].

149)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실집행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위 목적으로 교부된 재난대책비의 집행 지연을 최소화하기

【비상대비정책국】

39.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2634-304)

○ 내역사업 ‘민방위시설장비확충’ 중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2025년 실집행률이 39.6%에 불과하는 등 매년 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 지연 요소들을 파악하고, 집행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사업은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대피시설 및 필요 장비 확충,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67억 3,600만원 중 99%인 66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6,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6,736	6,736	-	-	-	6,736	6,671 [5,537]	-	65	10,592
민방위교육훈련	2,050	2,050	-	-	-	2,050	2,021 [1,826]	-	29	2,048
민방위시설장비확충	3,834	3,834	-	-	-	3,834	3,834 [2,895]	-	-	3,856
민방위경보시설운영	852	852	-	-	-	852	816	-	36	852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	-	-	-	-	-	-	-	-	-	3,836

위해 집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설명함.

나. 연례적 실집행부진 개선을 위한 사업 구조 재설계 필요

□ 내역사업 '민방위시설장비확충'은 ①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②비상급수시설 확충, ③화생방 방독면 보급, ④화생방 방독면 성능검사, ⑤민방위 경보사각지역 해소 등 전시, 국가적 재난 등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임.

[내역사업 민방위시설장비확충 세부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교부액) (A)	실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합 계		3,834	653.6	4,487.6	3,834	2,894.56	1,506.4	86.74	64.5
일반용역비 (210-14)	화생방 방독면 성능검사	16	-	16	16	15.96	-	0.04	99.8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1,860	619	2,479	1,860	981	1,488	10	39.6
	비상급수시설 확충	97.5	34.6	132.1	97.5	110	18.4	3.8	83.3
	화생방 방독면 보급	1,184.5	-	1,184.5	1,184.5	1,170.6	-	13.9	98.8
	민방위 경보사각지역 해소	676	-	676	676	617	-	59	91.3

(자료: 행정안전부)

□ 이 중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국지도발 등 적의 침공에 대비하여 지하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대피시설 신규 구축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보조율 50%)으

로, 2025년 예산 18억 6,000만원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으나, 실집행률은 39.6% 수준에 그침.

□ 동 사업의 실집행부진은 2021년 이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2021년과 2023년 실집행률이 7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2022년, 2024년에도 실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음.

[2021~2025년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대상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5개소 (인천3, 경기2) ※ 4개소 (인천 3, 강원 1)	1,600	962	2,562	1,954	460	148	76.3
2022	3개소 (인천3) ※ 3개소 (인천 3)	960	460	1,420	493	925	2	34.7
2023	3개소 (인천1, 경기1, 강원1) ※ 3개소 (인천 3)	960	925	1,885	1,369	496	20	72.6
2024	2개소 (인천1, 경기1) ※ 4개소 (인천 2, 경기 1, 강원 1)	640	496	1,136	504	619	13	44.3
2025	4개소 (인천2, 경기1, 강원1) ※ 2개소 (인천 1, 경기 1)	1,860	619	2,479	981	1,488	10	39.6

(자료: 행정안전부)

※ : 이전연도로부터 이월이 발생한 사업개소

□ 2025년의 예산 집행 현황을 6개 사업대상지역별(전년도 이월 사업대상지역 2개 포함)로 살펴보면,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사업대상지역 1개(강화군 양갑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대상지역이 미준공되었으며, 2025년 전체 실집행률은 39.6%임.

[2025년 사업대상지역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대상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사유
인천	강화군 지산1리	465	-	465	30	6.4	① 실시설계 지연(9개월 소요) - BF예비인증 심사 지연(4.30.~11.17.)으로 순연
	강화군 이강2리	465	-	465	173	37.2	① 실시설계 지연(8개월 소요) - BF예비인증 심사 지연(4.21.~9.5.)으로 순연
	강화군 양갑리 ※ 이월준공	-	299	299	289	99.7	
경기	김포시 고양리	465	-	465	24	5.1	① 실시설계 지연(5개월 소요) - BF예비인증 심사 지연(7.17.~10.28.)으로 순연 ② 폐건물 해체 및 농지전용허가 취득 지연 -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기존 폐건물 석면조사 실시, 건축물 해체 신고
	연천군 고문리 ※ 이월	-	320	320	0	0.0	① 사업대상지 변경 2회에 따른 지연(옥계 3리→백의1리→고문리) - 마을 주민 동의 미확보에 따라 대체 사업대상지 발굴 및 주민 설명에 상당 기간 소요, 최종 사업대상지 2024년 10월에 확정 ② 실시설계 지연(7개월 소요) - BF예비인증 심사 지연(1.8.~5.30.)으로 순연 ③ 추경 예산 편성 - 설계 결과 추정공사비 증가로 추경 편성 ④ 군관리계획 변경(3개월 소요) - 사업부지(주차장)의 용도폐지 필요로 변경 용역 실시
강원	철원군 내대리	465	-	465	465	100.0	① 사업계획 재검토 - 다수인 민원 접수에 따른 사업계획(건축물 유형* 변경) 재검토 실시 * 지하건축물 → 지상건축물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 사업이 건축사업으로 단년도에 부지를 매입(2~3개월)하고, 실시설계 계약 입찰 및 설계(3~4개월), BF인증[150] 절차(3~6개월), 건축공사 입찰 및 시공(5~6개월), 준공검사(1개월) 등 물리적으로 1년 내에 완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사업대상지역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약 3개월)이 길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 2026년 6월 말 기준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전연도로부터 이월된 사업대상지역 5개를 포함한 총 9개 사업대상지역의 실집행률은 22.7%에 불과하여 여전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2026년 6월 말 기준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집행내역
인천(2개소) ※ 이월(2개소)	465	727	1,192	256	21.5	실시설계 및 공사비 선금
경기(1개소) ※ 이월(2개소)	232.5	761	993.5	274	27.6	실시설계 및 공사비 선금, 철거공사비, 관급자재구입비 및 BF 인증 등 기타용역비
강원(1개소) ※ 이월(1개소)	232.5	-	232.5	20	8.6	용역비 집행
계(9개소)	930	1,488	2,418	550	22.7	

(자료: 행정안전부)

※ 이월사업 중 당해연도(2025년) 집행액 제외(인천 203백만원, 경기 24백만원, 강원 465백만원)

150) BF(Barrier Free) 인증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2024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평가하여 인증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집행 절차를 개선하거나 사업 구조를 단년도 사업에서 2개년 사업으로 재설계하는 등 집행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고 실집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151].

151) 행정안전부는 연례적 실집행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2027년부터 현행 단년도 사업 구조를 2개년 사업 구조(1년차 :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2년차: 구축)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대피시설 소요 전수조사와 확충 소요 재산정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함.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40.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2635-302)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100억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했으나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의 실집행률은 14.9%에 불과하였으므로, 2026년 본예산에 동 사업 예산이 120억원 편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실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신속한 복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산불로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의 이재민 주거안정 등 종합적·체계적 마을단위 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00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음.

[2025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	10,000	-	-	-	10,000	10,000 [1,490]	-	-	12,000

나.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통한 신속한 복구 필요

□ 2025년 3월(3.21.~30.)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2025년 5월 중앙재난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피해액을 1조 81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사유시설 4,954억 원, 공공시설 1조 3,85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152].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피해물량	피해액
총 계			-	1,081,786
사유시설 계			-	**517,473**
주택	전파(동)		3,592	338,663
	반파(동)		256	11,589
	세입자(세대)		358	-
	주거불가능(세대)		572	-
농·어업시설(건)			6,106	60,848
임·축산시설(건)			641	20,525
농기계(대)			17,158	34,900
농작물 / 산림작물(ha)			3,419	45,014
가축(마리) / 꿀벌(군) / 곤충(kg)			22,061 / 24,509 / 8,265	4,673
수산물(마리)			274,365	1,088
어망어구 / 어선(건)			30	173
공공시설 계			-	**564,313**
산림청	산림(ha)	국유림	**11,218**	41,588
		사유림	**92,658**	352,739

152)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5.5.2.),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피해물량	피해액
	산림시설(건)	324	15,218
행안부	도로(건)	57	13,526
	공공건물 등(건)	86	3,520
	마을기반시설(건)	17	7,269
환경부	환경기초시설(건)	6	2,095
	상수도 등(건)	68	26,815
유산청	국가유산(건)	29	45,058
국방부	군사시설(건)	4	663
국토부	국도(건)	15	6,566
농식품부	수리시설(건)	103	3,433
문체부	문화·체육시설(건)	37	34,193
복지부	복지시설 등(건)	16	10,806
산업부	에너지시설(건)	5	472
해수부	해양시설(건)	2	353

(자료 : 행정안전부)

※ 2025.5.2. 중앙재난대책본부 심의·의결 기준

□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은 이러한 정부의 복구지원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00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인 2025년 6월 행정안전부는 당시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약 415억원 규모의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동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함.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 개요]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추진 배경</td><td>이재민 주거안정 등 종합적·체계적인 마을단위 복구 필요</td></tr>
<tr><td>사업기간 / 총사업비</td><td>2025년 ~ 2027년(3개년) / 415억원
<table>
<tr><th>연 도</th><th>예 산</th><th>사업내용</th></tr>
<tr><td>2025</td><td>125억원</td><td>실시설계 착수</td></tr>
<tr><td>2026</td><td>150억원</td><td>실시설계 완료, 공사 착공</td></tr>
<tr><td>2027</td><td>140억원</td><td>공사 준공</td></tr>
</table></td></tr>
<tr><td>주요 내용</td><td>중·소규모 산불피해 지역에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복구, 공동체 회복시설(커뮤너티 등) 등 지원</td></tr>
<tr><td>대상 지역</td><td>총 5개 지구
* 경북 안동(중마·추목), 경북 영덕(대곡·수암), 경북 의성(구계1)</td></tr>
<tr><td>지원 내용</td><td>마을 기반 조성(도로, 상·하수도, 인접 사면 정비 등),
재난예경보 시설, 마을 소화전 설치, 공원 조성 등</td></tr>
<tr><td>지원 조건</td><td>자치단체 자본보조 80%</td></tr>
</table>

(자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규모, 사업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총 5개 사업지구를 확정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100억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함.

[2025년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 추진 경과]

연월	추진 내용
’25.5.	5개 사업지구 사업신청서 제출
’25.6.	총사업비 415억 1,500만원 확정
’25.7.	국고보조금 100억원 전액 교부
’25.10.~12.	실시설계착수(의성 10월, 영덕 11월, 안동 12월)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2025년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5개 지구에서 총 14억 9,0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4.9%에 불과한 실정이고, 대부분 11월 이후 실시설계용역 선금 지급 명목으로 집행되었음.

[2025년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시군	합계	11월	12월	내 용
합계	**1,490**	292	1,198	
안동	438	-	438	· 12.22. (추목) 실시설계용역 선금 지급 · 12.26. (중마) 실시설계용역 선금 지급
영덕	744	-	744	· 12. 5. 실시설계용역 선금 지급
의성	308	292	16	· 11.18. 실시설계용역 선금 지급 · 12. 3. 지반조사 및 사면 안정성검토 용역 준공금 지급

(자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비 및 공사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절차 소요 기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나라장터 마비로 인한 설계용역 계약 지연, 토지소유자 보상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각 지구별로 사업 지연 요소가 발생한 데 실집행부진의 배경이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2026년 5월 말 기준으로 동 사업의 2025년으로부터 이월된 예산 85억 1,000만원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액의 약 2.2%인 1억 8,800만원만 실집행되었고, 여전히 나라장터 마비로 인한 설계용역 계약 지연을 제외한 다른 사업 지연 요소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2026년 5월 말 기준 이월 예산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시군	이월액	집행액			내 용
		계	3월	5월	
총계	**8,510**	**188**	28	160	
안동	3,862	-	-	-	
영덕	3,256	160	-	160	부지정리·토공 선금 지급
의성	1,392	28	28	-	시설결정용역 선금 지급

(자료 : 행정안전부)

□ 2026년 동 사업에 본예산 12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실집행부진이 반복되고 당초 목표로 했던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이재민 등의 조속한 생활 안정 도모에도 차질이 우려됨.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지구별로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속한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